

2012

공통교재

회계실무

지방행정연수원 | 시 · 도 공무원교육원

2012 공통교재

회계실무

2012 공통교재

회계실무

지방행정연수원 | 시 · 도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 시 · 도 공무원교육원

2012 공통교재

회계실무

지방행정연수원 | 시·도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윤리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목차

제 1 부 지 출 분 야

제 I 장 회계제도 일반	3
1. 회계의 의의	3
2. 회계의 종류	4
3.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6
4.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방재정법 제91조, 재무회계규칙 제3조)	11
5. 통합지출관(지방재정법 제90조)	16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16
제 II 장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23
1. 세출예산의 집행흐름도	23
2. 예산의 집행품의	24
3. 재정사항 합의(재무회계규칙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26
4. 예산집행의 제한(재무회계규칙 제24조)	27
5. 지출원인행위	30
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 업무처리 흐름도	33
7. 예산집행 실명제도 운영	34
제 III 장 지 출	39
1. 지출의 개념	39
2. 지출의 절차	39
3.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52
4. 계약체결을 통한 원인행위 시 회계공무원 확인사항	118

제Ⅳ장 지출의 특례	122
1. 지출특례의 개념	122
2. 지출특례의 내용	123
제Ⅴ장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및 소멸시효	148
1.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148
2. 소멸시효	150
제Ⅵ장 결 산	156
1. 결산의 의의	156
2. 결산보고서	157
3. 결산의 준비	160
4. 출납사무의 완결	162
5. 결산잉여금의 처리	163
6. 결산검사	164
7.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166
8. 보고 및 고시	166
9. 결산결과의 공시	167
제Ⅶ장 회계장부 관리 및 계산증명	170
1. 회계장부	170
2. 계산증명	172
제Ⅷ장 공유재산 관리	174
1. 공유재산의 일반관리	174
2.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178
3.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181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191

제 2 부 계 약 분 야

제 I 장	계약의 의의와 특징	231
1.	계약의 의의	231
2.	계약의 집행기관	236
3.	계약체결 금지	238
4.	계약의 대행 (법제8조)	240
제 II 장	자치단체 계약의 종류	243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구분]	243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243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244
3.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261
제 III 장	입찰 및 계약의 절차	276
1.	업무 흐름도	276
2.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도(적격심사인 경우)	277
3.	입찰절차별 세부내용	278
제 IV 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	288
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법 제32조)	288
2.	행안부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영 제110조 및 제123조)	289
제 V 장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290
1.	일반경쟁계약	290
2.	제한경쟁계약	291
3.	지명경쟁계약	298
4.	수의계약	302

제Ⅵ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318
1. 추정가격	318
2. 예정가격	320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324
4.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325
5. 감정가격·견적가격·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326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328
제Ⅶ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343
1. 적격심사제도	343
2. 입찰가격 평가방법	354
3. 시공실적 평가방법	355
4. 경영상태 평가방법	378
5. 기타 심사항목 평가방법	387
제Ⅷ장 계약체결이행 및 대가지급	417
1. 계약의 체결	417
2. 계약문서	417
3.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422
4. 하자보수보증제도	437
5. 계약의 이행 지체 및 해지·해제	441
6. 부정당업자 제재	442
제Ⅸ장 계약금액 조정	446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46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457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459

제 X 장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및 국제입찰	462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462
2.	국제입찰	467
부 록		474
1.	계약업무관련 법원의 명령	474
2.	계약 Case by Case	490

제 I 부

지 출 분 야

제 I 장 회계제도 일반

학습목표

- 회계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 및 예산의 개념과 비교해 본다.
-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를 구분하고,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직무 및 책임의 한계를 이해한다.
-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내용, 대리자 및 분임자의 임명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절차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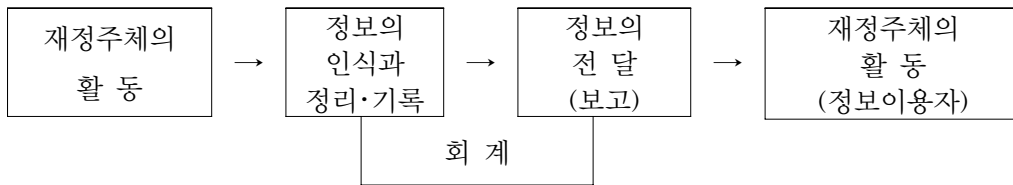
학습내용

1. 회계의 의의

가. 회계의 개념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이다.

- **재정(Finance)** : 경제 주체로서의 종합적인 경제활동
- **예산(Budget)** :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의 재정적 계획
- **회계(Accounting)** : 계수로서 연속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작용



나. 회계의 특성

- **엄정성** : 회계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명확화
- **정확성** : 지출서류에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수정액 등으로 고침) 등의 제한
 - ※ 정정하는 경우 정정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 **공정성** : 계약 등의 업무처리 시 입찰 등을 통한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 **통일성** : 원칙적으로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2. 회계의 종류

가.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구 분	내 용	관 련 법 규
현금회계	현금의 출납, 보관을 관리하는 회계 (회계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지방계약법령, 지방재정법령, 관련개별법령,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물품회계	현금·공유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및 각종 물품을 출납·관리하는 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물품관리조례
재산회계	부동산 등 재산을 출납·관리하는 회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채권회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관리하는 회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나. 목적에 의한 분류

- 1)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기능수행을 위하여 공적 일반활동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
- 2) 특별회계: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회계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가) 기타특별회계

-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회계
예)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관광개발사업 및 의료보험 특별회계 등

나) 공기업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이며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됨
예) 상·하수도직영기업, 지하철 공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등

질의회신

〈질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근거를 두지 않고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차이점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설치사유	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활동	· 특정사업의 운영 · 자금보유 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특정목적에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조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 제공이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유상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운용계획 확정·집행	자치단체가 예산편성권을 가지며, 의회가 심의·확정함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일반회계와 동일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예산에 비해 더 보장되어 있음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지 않음. 다만, 수입대체 경비는 초과지출시 해당 수입금에 대하여만 지출함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음

3.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예산 편성시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예산의 집행도 당해 연도의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함

※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결산잉여금이월, 지난 회계연도 지출, 앞당겨 지출 등

질의회신

- 〈질의〉 소규모 공사계약을 12. 30일자로 하고 공사기간은 30일로 다음연도 1월 28일까지 준공토록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중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해에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 〈답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원인행위가 확정된 금액은 회계연도 이후에는 당해 예산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은 불가능하므로 증액되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증액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라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할 것임

- 회계연도 : 1. 1 ~ 12. 31까지 (지방재정법 제6조)
- 출납폐쇄기한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 (지방재정법 제8조)
- 출납정리기한 : 3. 10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 세출에 대한 지출은 사실상 2월 말로 종료되나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출납정리기한 경과 후 10일까지(3.10) 금고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출납정리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한이 공휴일인 때에는 출납정리에 관한 사무는 기한 전일까지 처리해야 함.

※ 예를 들면 2월 말 다음날부터 11일 차 되는 날이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수납을 완료해야 함

1)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

-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수시수입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 수시수입으로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계약한 날이 속한 연도

2)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

- 지방채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 모든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 사용료·보관료·전기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 공사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나.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15조)

-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 예외 : 수입대체경비(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수입대체경비 부문 참조)

- 자치단체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경비로서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음

※ 수입대체경비 :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경비, 보건소의 진료비,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경비

다. 기부 ·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기부금, 보조금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③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
 - ①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의정회 관련 대법원 판례

의정회는 (舊)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나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부·보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조례안 제3조제2항을 의결대상으로 한 재의결은 (舊)지방재정법 제14조(현재 지방재정법 제17조)와 (舊)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반되어 위법임

질의회신

- 〈질의〉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특정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 시행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아 사회단체보조금(307-03)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자치단체조례 등에 의하여 교부결정토록 되었으며
 - 귀 단체의 경우처럼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위탁 시행할 경우에는 행사운영비(201-03) 또는 민간위탁금(307-05)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 출자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의 타 단체에 대한 출자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제한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자할 수 있음

〈 출자를 할 수 있는 경우 〉

-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 ③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예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마. 지급명령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71조)

- 자치단체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 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음
 - 정당한 채주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 다만, 지출원은 출납원 및 금고에 대한 자금의 교부는 가능

바. 회계기관의 분립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75조)

○ 회계기관의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토록 하여 회계관리의 엄정성과 직무상의 비위를 방지

- 수입 : 징수관(분임 포함), 수입금출납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음.
- 지출 : 경리관(분임 포함),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각각 겸직할 수 없음.

※ 예외 :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 관서에 대하여는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겸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관서에서는 세입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및 100조)

질의회신

〈질의〉 ○ ○도에서 회계과장이 휴가를 간 경우 지출원에 해당하는 경리계장이 회계과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분임경리관의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회계기관의 분립은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를 분리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임경리관의 직무를 지출원이 대행할 수 없음. 따라서 다른 공무원이 분임경리관을 대행하든지 아니면 경리계장이 분임경리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는 지출원의 직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수행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방재정법 제91조, 재무회계규칙 제3조)

가. 임명 또는 위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

나. 관직지정 예시

1) 광역시

관 직 명	본 청	지 방 의 회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징 수 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또는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회계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	
경 리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또는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회계업무담당국장	
분 임 경 리 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기획관리실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또는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회계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총괄채무관리관	예산담당관			
채 무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또는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회계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관리실장			
지 출 원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경리업무담당사무관	경리지출업무담당자	
수 입 금 지 출 원	세외수입업무 담당사무관	총무업무담당사무관	세입업무담당자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 담당자
일상경비지출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	총무업무담당사무관, 의사업무담당사무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경리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 담당자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경리·지출회계업무 담당주사	경리지출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주사

2) 도

관 직 명	본 청	지 방 의 회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징 수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회계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정과장,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	관서의 장
경 리 관	자치행정국장, 회계부서에 국장 직제가 없는 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회계업무담당국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분 임 경 리 관	회계부서에 국장 직제가 있는 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자치행정국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세입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총괄채무관리관	예산담당관			
채 무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관리실장			
지 출 원	경리담당사무관	경리담당사무관	경리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담당사무관,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사무관	세외수입 담당사무관	세입업무담당	세입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담당사무관	의사담당사무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보조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담당(경리업무담당 이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우 경리주무자)

3) 기초자치단체 市

관 직 명	본 청	지 방 의 회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정 수 관	부시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는 세입업무 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분 임 정 수 관	세정과장, 세외수입 업무담당 각 실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	
경 리 관	부시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는 회계업무 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분 임 경 리 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부시장, 국장 직제가 있는 때는 세입업무 담당국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총 괄 채 무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채 무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지 출 원	경리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경리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 및 징수 업무담당, 세외수입 업무 주관 각 담당	의정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사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사무업무담당			사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4) 기초자치단체 郡

관 직 명	본 청	지 방 의 회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징 수 관	부군수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재무과장, 세외수입 업무담당 각 실·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	
경 리 관	부군수	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분 임 경 리 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부군수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총 괄 채 무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채 무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지 출 원	경리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경리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담당, 세외수입업무 주관 각 담당	의정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질의회신

〈질의〉 분임경리관의 장기출장 시 일상경비출납원(또는 지출원)을 분임경리관으로 임명하고 차석담당(5급) 또는 주무(담당차석)담당자를 출납원 또는 지출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회계관직자의 출장 등 일시적으로 유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임명해야 함. 다만, 직무대리자가 공석 중이거나 다른 회계관직을 담당하고 있어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적임자를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을 것임.

5. 통합지출관(지방재정법 제90조)

가. 의 의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복식부기의 통합재무제표 산출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지출관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 있음

나. 통합지출관의 임무

- 재무보고서의 작성
- 지출원 및 출납원이 지출 의뢰한 자금의 통합지출
- 자치단체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 ※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음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가. 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 의 의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함.

2) 변상책임의 주체 : 회계사무 집행자,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성립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변상의 요건이 성립함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 했을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것

라)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것

마)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을 것

질의회신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품을 하는 공무원도 고의·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공동의 변상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

4) 변상책임의 유형

가) **단독변상** : 회계관계직원 1인만이 책임을 짐

나) **공동변상** :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 책임을 지고,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할하여 책임을 짐.

다) **연대변상** : 회계관계직원들의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요구하여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 당해 상급자는 그 명령을 집행한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변상 책임을 짐.

〈 예 외 〉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의 연대책임이 아닌 단독 책임을 짐

나.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절차

1) 변상책임의 판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원이 변상판정하기 전이라도 변상을 명할 수 있음.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유무와 그 범위는 감사원의 판정에 의하여 확정

2) 변상책임의 구제

- 변상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음
- 감사원의 재심의 불복 시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

3) 변상책임의 소멸 : 변상완료에 의하여 소멸

〈 대법원판례 2001. 2. 23, 99두5498 〉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자치단체의 장이 변상책임을 가짐

다. 회계책임

1) 징계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이 법령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위반을 한 경우
- 징계는 신분상 조치이므로 변상책임과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여 병과 가능

2) 형사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이 형사법규 위반 시 형사책임도 짐.
- 변상책임, 징계책임과는 목적과 기능, 책임의 성립기초가 다르므로 병과 가능

3) 외부적인 효력

-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외부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재정보증

1) 근 거

-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자 포함)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2) 재정보증 대상

- 지방재정법 제91조 내지 제93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보조자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회계사무에 준하여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예시 : 보상업무 담당자)

3) 재정보증 설정

-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정
- 재정보증 방법 : 보증보험 형태
- 보증기간 : 1년(매년 갱신), 직위포괄계약 때는 3년
- 보험료 지급 :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도 : 1천만원 이상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4)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사유발생 때는 보험회사 통지 및 징수
-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직원에게 변상요구

〈 감사원 변상판정 사례 〉

-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횡령(1999년도 감판 제11호)
 -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판매수량을 속여 쓰레기봉투 판매대장을 정리한 후 봉투 판매대금의 일부를 시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사용한 수입금출납원 보조자는 변상책임이 있다.
- 유류 판매대금 횡령(2000년도 감판 제5호)
 - 실제 매출한 유류량 보다 금액을 늘려서 판매일보에 기록하고 그 차액을 횡령한 회계책임자의 보조자는 변상책임이 있다.
-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부당지급(2000년도 감판 제10호)
 -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소유자에게 주거비 등이 지급되게 한 경리관의 보조자들은 변상책임이 있다.
- 농경지 복구비 편취(1999년도 감판 제13호)
 - 피해가 없는 농경지를 유실된 것으로 허위 조사·보고하고 임의개설한 농지소유자 명의계좌에 복구비를 입금한 후 개인용으로 인출·사용한 분임경리관 보조자는 변상책임이 있다.

학습정리

- 회계는 **엄정**하고 **정확**해야하며 **공정**하고 **통일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 회계는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분류되며 특별회계는 다시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분류되며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다.
- 회계는 당해년도의 사업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며 1회계연도 (1.1~12.31)단위로 집행을 정리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야하는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예산집행을 제한하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법령의 근거 없이 **출자를 제한하는 원칙**,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채주 외에는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지출 및 지급의 제한**, 회계관직에서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을 분리하여 회계관직공무원을 지정하는 **회계기관 독립의 원칙**이 있다.

- 회계관직은 집행을 결정하는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으로 구분되고 집행을 담당하는 관직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으로 구분된다.
- 회계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지며 이외에 징계책임, 형사책임은 별도로 지게 된다.
-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면 1년 단위(직위포괄계약 시는 3년)로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함.

용어사전

● 채 권

타인으로부터 앞으로 재화 또는 노무를 받을 권리로서 물권에 이르는 수단을 말한다. 즉, 물권은 생활자료로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채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이 물자를 급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채권은 물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대종을 이룬다.

● 출 자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 등의 일부로서 금전·기타재산·신용 또는 노무를 법인이나 조합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역년제이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도 역년제 회계연도를 채택하고 있

으며, 미국은 매년 10월 1일에서 다음해 9월 30일까지, 일본, 영국, 인도 등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

●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89조 내지 제96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4조 내지 제139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조 내지 제7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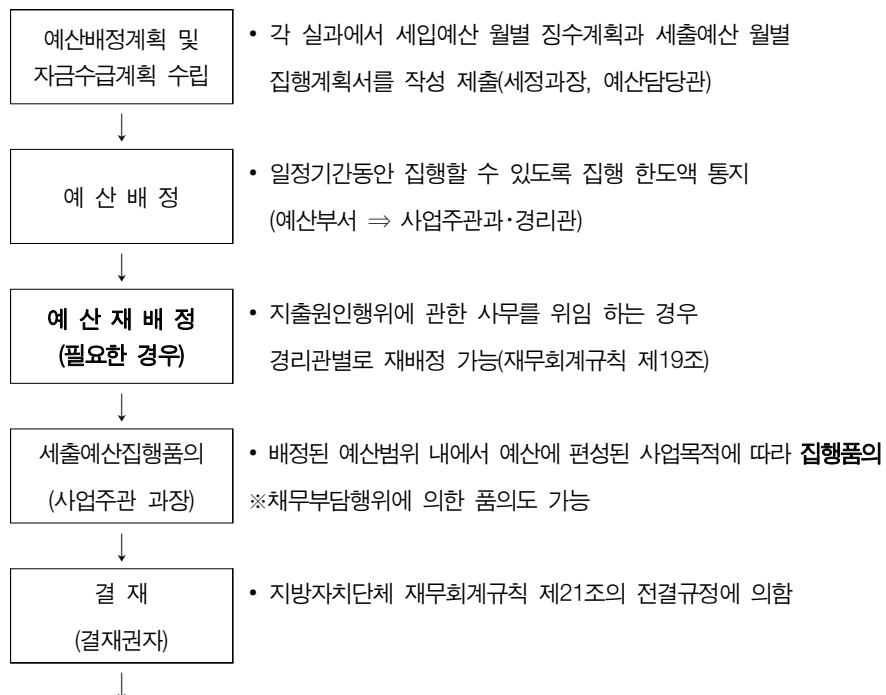
제 II 장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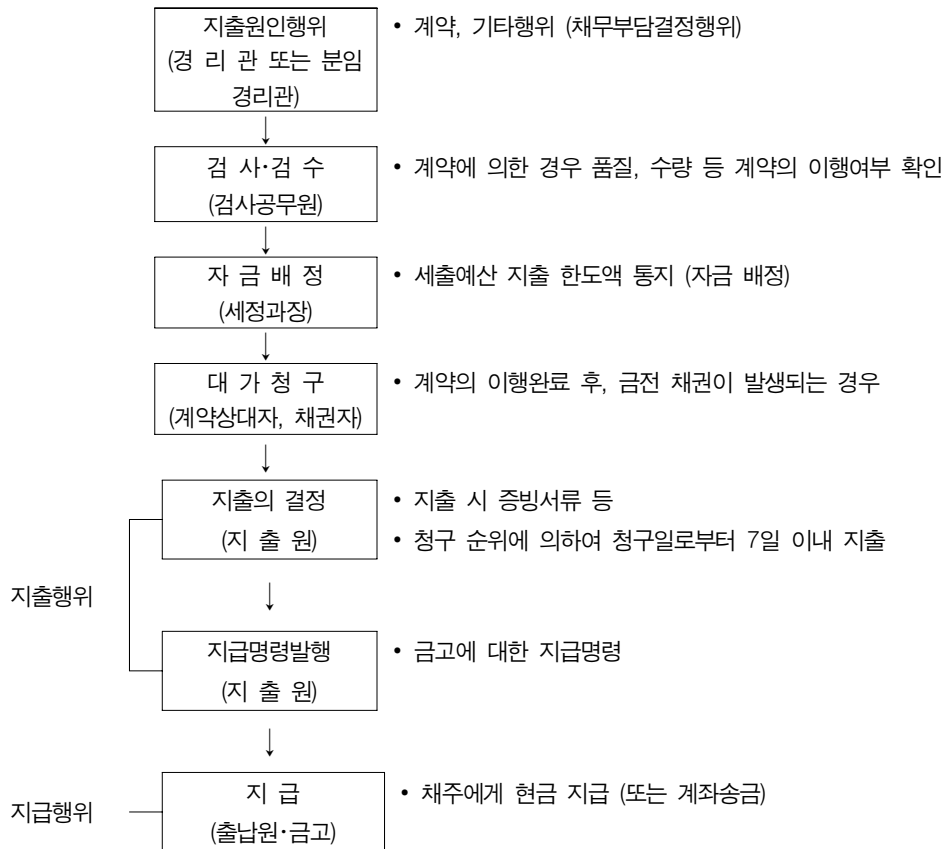
학습목표

- 예산집행품의 절차 및 방법을 이해한다.
- 예산배정 및 재배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 지출원인행위의 개념과 원인행위 때 검토해야 할 사항, 제한 사항을 학습한다.
-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의 개념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1. 세출예산의 집행 흐름도





2. 예산의 집행품의

가. 의 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니다.

나. 집행품의 방법

- 집행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됨

〈집행품의 전결〉 -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추정금액 기준)

구 분	부단채장			국 장			과 장
	공사	용역·물품	기타	공사	용역·물품	기타	1 건당
시·도	10억 원~30억 원이하	5억 원~10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10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2억 원 미만	5천만원 이하
일반구가 있는 시	5억원이하	3억원이하	2억원이하	3억원이하	2억원이하	1억원이하	5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국이 있는 시	4억원이하	2억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1억원이하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시·군·구	2억원이하	1억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 위 한도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한도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함

- 품의종류 : 공사집행(수선),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보조금 교부 등
- 품의서의 작성 요령
 - 제목은 집행목적에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
 - 집행의 목적, 집행액, 집행내역(복잡한 경우 별지로 작성)
 - 교부처(또는 지급처), 예산과목(세목까지 정확히 기재)
 - 집행의 내용에 따라 사업·예산·세입·회계부서의 협조

다. 품의서 작성시 검토사항

- 집행의 내용이 예산편성의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액의 범위 이내인지 예산은 배정되었는지 여부
(※ 자금배정은 예산지출시 검토할 사항)
- 집행예정금액이 법령·지침 등에서 근거한 기준액과 부합되는지 여부
- 자금의 지급(교부)처는 정당한지 여부(정당한 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Tip

질의회신

-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지급시 보수로 보아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수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보수”라 함은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의 합을 의미합니다(지방공무원보수규정)
따라서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품의를 생략할 수 없음

※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재무회계규칙 제21조제5항)

- 직무수행 경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인건비, 여비

질의회신

- 〈질의〉 예산집행품의를 하기 위하여는 내부결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 〈답변〉 예산집행품의서에 대한 법정서식은 없으며, 품의 내용에 따라서 내부결재 방식 또는 품의 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며, 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가급적 별지를 사용하여 품의 내용이 정확하게 명기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재정사항 합의(재무회계규칙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가. 회계부서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 물품제조·구매 (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나. 예산부서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

-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시·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이외에 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4. 예산집행의 제한(재무회계규칙 제24조)

- 예산이 배정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집행 제한**
 -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 다만, 비상재해 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 가능
 -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군구의 경우 시·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예 시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제 목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출

000업무를 원활히 추진한 시·구·군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 격려코자 급식을 제공하고 청구에 의거 지출코자 합니다.

1. 소요금액 : 금680,000원(금육십팔만원)
2. 산출기초 : 20,000원 × 34명 = 680,000원
3.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1. 00. 00(수) 18:00
 - 장 소 : 00식당(00구 000(길)로 소재)
 - 참석대상 : 34명
 - 시 : 10명(0000국장 외 9명)
 - 구·군 : 24명(구·군별 3명 - 선거담당, 선거·주민전산담당자)
4. 지출방법 :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BC카드사)
5. 지출과목 : ○ , ○ , ○ , 업무추진비(204). 끝.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예 시 : 복사기 구입 집행품의

(복사기) 구입요구서

예산과목 :

품 명	수 량	규 격	단 위	추정단가	추정금액	비고
복사기	1대	○ ○	대	15,000천원	15,000천원	
	이	하	빈	칸		

상기 물품을 까지 에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 ○ ○ 과

결재	계	팀장	과장	국장

5. 지출원인행위

가. 개념

-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함.
- 지출원인행위의 주종은 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외에도 인건비, 경상경비 지출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출연금 교부결정 등이 있음.

나. 지출원인행위 검토사항

- 예산집행품의는 제대로 되었는가(특히 예산배정 범위 내인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상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품의결재가 이루어 졌는지 등)
- 법령, 조례, 규칙, 지침, 예규 등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인가
- 회계의 일반원칙은 준수되는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아닌가
- 예산과목은 임의로 전용되지 않았는가

다. 지출원인행위 시 확인사항

- 지출원인행위 제한사항 저촉 여부
- 계약에 의할 경우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정당 여부
 - 계약보증금 납부, 정부수입인지 소화여부 등 확인
- 지출원인행위는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집행내용은 예산편성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라. 지출원인행위기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기관이나, 경리관은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예) 시도의 경우 10억 이하의 공사나 5억원 이하의 용역 및 물품제조는 분임경리관에게 계약을 위임하고 있음

마.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지방재정법 제50조)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미리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명시이월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쳐서 기간을 정하여 계약(지출원인행위) 가능
 - ※ 통상적으로 마무리 추정 시 명시이월 승인절차를 거침
 -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바. 지출원인행위의 종류

1)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

-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일정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기 위한 채무 확정행위를 말함
 - ※ 계약과 관련된 법령 :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2) 계약에 의하지 않는 지출원인행위

- 계약에 의하지 않는 지출원인행위란 수당 지급, 인건비 지급, 보조금 지급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경상비 집행행위가 해당됨

사.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는 지출원인행위

- 회계연도 종료(12.31)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비로서 계약기간이 출납폐쇄기한(2월말) 이전에 완료될 수 있는 경우(공사·제조·물건구입 등의 준공 또는 납품의 완료)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기한으로 계약체결 가능**
- ※ 출납폐쇄기한까지 계약이 완료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비 또는 명시이월비, 계속비 이월비로 조치하여야 함

아. 지출원인행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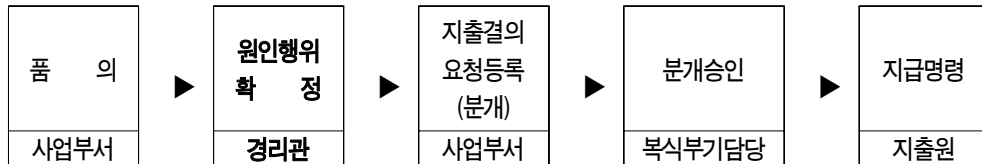
구 분	정 리 시 기	지출원인행위 금액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 급여류 • 수당류 •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출연금 • 제 세 • 기 타	• 지출결정 시 • 지출결정 시 • 지출결정 시(교부결정 시) • 출자 또는 출연결정 시 • 납부결정 시(신고시) • 지출결정 시	• 당해기간분 급여액 •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 출자·출연결정액 • 납부세액 •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 용자금 • 공사비 • 기타	• 납부결정 시 • 용자결정 시 • 계약체결 시 • 계약체결 시(청구받은 때)	• 납부결정액 • 용자를 요하는 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3. 기타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특별판공비 • 기타	• 전출결정 시 • 납부결정 시 • 지출결정 시(계약체결시) • 지출결정 시	• 전출을 요하는 금액 • 납부를 요하는 금액 •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금액) •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조달의뢰 • 공 사 • 물 품	• 조달청에서 - 계약체결 통보 시 - 대금청구서 접수 시	• 계약체결금액 • 대금청구금액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가능 경비(법5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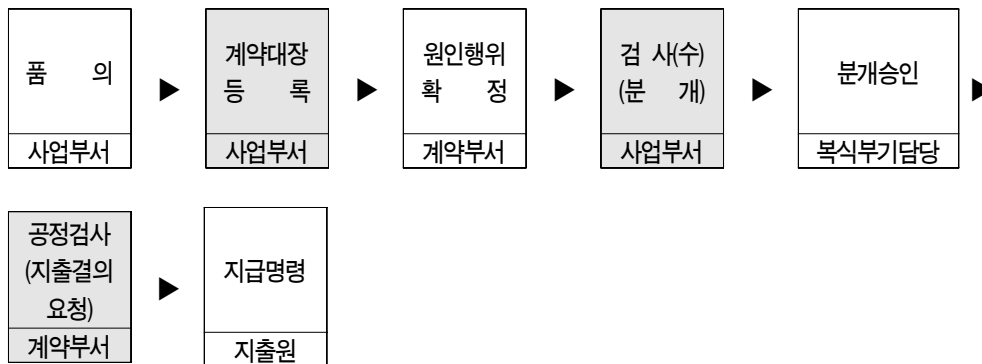
- 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부대경비
- ② 입찰공고를 한 경비로 입찰참가자격 대상공사, 협상계약대상 공사, 대형공사 대상공사
- ③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운영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비(100분의5)
- ④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재해복구 보상비,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 계약이 된 경우

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 업무처리 흐름도

(일반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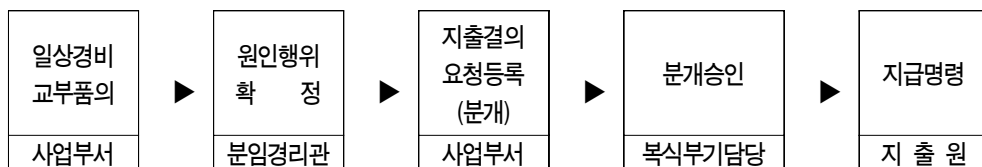


(계약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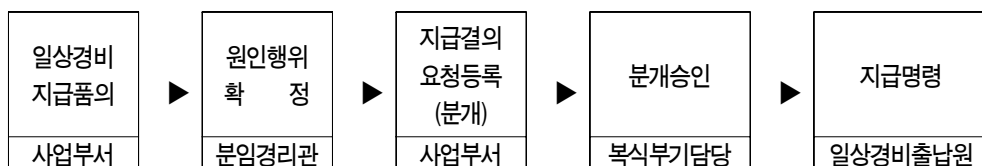


(일상경비)

○ 일상경비 교부요청



○ 일상경비 지급



〈재정부서의 재정사항 합의 범위〉

구 분	경리관		분임경리관(과장)		비 고
	공사·토지매입	제조, 구매, 용역	공사·토지매입	제조, 구매, 용역	
시·도	10억원 초과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시·군·구	1억원 초과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합의범위	• 공사·용역계약(2백만원 이상) • 물품제조구매(2백만원 이상) •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건당 50만원 이상) •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 경비, 보조금,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7. 예산집행 실명제도 운영

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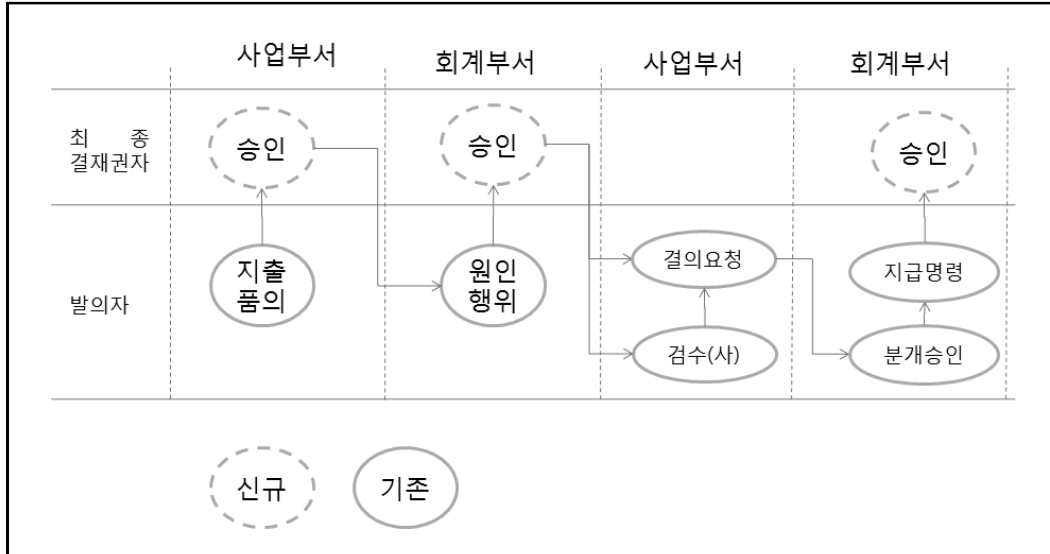
- 예산편성 부서 집행품의 ⇒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및 지급 순 단계 참여자 실명이 기재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 작성
- 사업부서의 예산집행 결정부터 최종 세출예산 집행까지 참여한 담당자·결재자 전원의 정보가 하나의 카드에 기재되어 관리

나. 기대효과

-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집행정보를 자동적으로 통합하여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집행의 전 단계에서 상호 확인 가능
- 회계담당자 1인 결재 및 사업부서의 부정지출 방지
사례) 공무원이 14분 만에 22억원 횡령, 사회복지과 복지급여 횡령

다. 주요내용

- e-호조상 사업부서·회계부서 예산집행 참여자는 반드시 실명결재



《집행품의단계》 : 사업부서

- 사업부서의 품의기안자·결재자 본인 실명으로 승인

《원인행위단계》 : 회계부서

- 기안자·결재자(경리관)까지 본인 실명으로 결재

《지출 및 지급결의단계》 : 회계부서

- 기안자·결재자(지출원)까지 본인 실명으로 결재

예산집행 실명제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의 회계책임 상호검증

□ 주요내용

-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의 상호 견제 강화
 - 예산집행실명관리카드에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집행내역이 등록되도록 하고
각 결재 단계에 관련된 집행된 내역을 비교·확인하도록 함
 - 집행품의 내역 : 제목, 산출내역, 품의금액
 - 원인행위 내역 : 거래처 내역(사업자번호, 예금주)
 - 지급명령 내역 : 채주, 입금유형, 지급일시, 계좌번호 등
- 예산집행의 내부 통제 강화
 - 예산집행실명관리카드는 전 부서 조회 가능하도록 e-호조 상 공개
 - ※ 현재는 회계부서 및 관련부서만 조회 가능
- 사업담당자의 회계공무원 책임을 「재무회계규칙」에 명시
 - 사업부서 담당자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변상 책임이 있음을 각 지자체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사업담당자로서 예산집행품의 기안자 및 결재자 등 관련자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고의·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함

《근 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
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학습정리

- 예산 집행 품의는 예산편성 내용과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일종의 서면상 의사표현으로서 품의내용이 예산의 범위 내인지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되는지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지 등을 검토해야 함.
- 직책급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급여, 여비, 복리후생비는 예산 집행의 품의를 하지 않으며 200만원 이상 공사·용역이나 물품구입,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경비 등은 예산집행품의 시 회계부서와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예산이 편성된 경우라도 상급관청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원 지원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할 수 없음
- 지출원인행위 시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법령지침 등의 준수여부, 정당한 채주인지 여부, 회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아닌지 여부, 예산의 범위 내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
- 명시이월비는 회계연도를 걸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며 명시이월비가 아닌 단일 예산이라도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기한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 지출원인행위부는 일반적으로 지출을 결정하는 날자가 지출원인 행위 일자로 해야 하나 조달 의뢰하는 경우 공사·용역은 조달계약일자를 물품조달은 대금고지서 청구일자를 원인행위 일자로 함

용어사전

● 예산의 이월(移越)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회에 한하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명시이월은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50조>

● 지출원인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지출부담행위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의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지출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때문에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67조>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67조 내지 제76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내지 제27조

제 Ⅲ 장 지 출

학습목표

- 지출의 개념을 지출원인행위와 구분하여 이해한다.
- 지출결의서(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포함) 작성요령을 알아본다.
- 지급명령의 종류와 작성요령을 이해하고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지출원(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학습내용

1. 지출의 개념

가. 광의의 지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결정(집행품의) 행위와 경리관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함

나. 협의의 지출

지출원이 지출의 결정과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

2. 지출의 절차

가. 지출결의서(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포함)의 작성요령

-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 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 품의서, 계약서 등임

세 출 예 산 서(○○○도)

회계연도 : 2012년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문화예술~체육청소년과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예술과	60,902,454	57,693,114	3,209,340
문화예술진흥	60,604,334	57,337,554	3,266,780
지방문화창달	11,220,740	5,282,700	5,938,040
농어촌도서관 건립지원	1,752,840	1,047,000	705,840
308 자치단체등이전	402,840	0	402,84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2,840	0	402,84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05,680,000원*50% =	402,840		
	[국402,84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50,000	1,047,000	303,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50,000	1,047,000	303,000
○ 농어촌도서관 건립 =	750,000		
	[균750,000]		
○ 농어촌도서관 건립 =	600,000		
	[균600,000]		

(일 반) 지 출 결 의 서

증제 ①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분임경리관)	년도 ⑤ 회계		취급자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②		세 출 과 목		⑦		
③ 발 의	· · ·	인	조 직	⑥	⑧ 발 의	· · ·	인
④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정 책		⑨ 지출부기재	· · ·	인
계 약	· · ·	인	단 위		⑩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	· · ·	인	세 부		⑪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⑬		
채 주	주 소 ⑫ 상 호 성 명 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⑭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⑮							

〈작성요령〉

(앞면)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금 액	지 출 명 세
	적 요

(뒷면)

〈준수사항〉

- 구 분 : 지출결의서
- 용도(목명) ·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 물건비 중 업무추진비, 조달구입대금, 공고료, 각종사용료,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 이전경비 중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등
 - 자본지출 중 시설비(계약서 작성 시) 등
- 첨부서류 : 해당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①품의서 ②청구서 ③영수증 ④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날 인 자
① 증 제 호	원인행위부 일자 순에 따른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란	재무회계규칙 5조의 위임 규정	해당자
③ 발 의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품의일자 ※예산집행품의가 생략되는 경우 발의일자는 삭제 가능	취급자
④ 원인행위부기재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결정일자 (원인행위부 등재일)	취급자
⑤ 연도, 회계	세출연도 및 목적에 의한 회계분류	
⑥ 세출과목	지출 해당 세출과목 기재	
⑦ 결재란	회계실무자 및 회계관직자	취급자, 지출원, 일상경비
⑧ 발의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지급기한의 도래 등)	취급자
⑨ 지출부 기재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지출부 및 지급내역부 등재일)	취급자
⑩ 지급명령발행부기재	지급명령부 발행부 및 현금출납부 등재일	취급자
⑪ 지급명령번호 제 호	지급명령발행부 및 현금출납부의 일련번호	
⑫ 채주	채주의 주소, 상호, 성명 기재	
⑬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⑭ 영수	계좌입금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⑮ 취급자 인	추산부(보조장부)의 해당목에 기록	

구입(물품·기타) 지 출 결 의 서

증 제 ①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분임경리관)		년도 ⑤ 회계	취급자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②			세출과목	⑦		
발 ③ 의	. . .	인	조 직	⑥	⑧ 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④ 재	. . .	인	정 책		⑨ 지출부기재	. . .	인
주 ⑤ 문	. . .	인	단 위		⑩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납 ⑥ 부	. . .	인	세 부		⑪ 지 급 명 령 번호	제 호	
검 ⑦ 수	. . .	인	편성목				
물품출납부 기 ⑧ 재	. . .	인	통계목				
금 원(금 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①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⑨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⑬		
위 금액을 청구함. ⑫				위 금액을 영수함. ⑭			
년 월 일 성 명 인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인⑮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앞면)

구 입 물 품 명 세 서 ㉔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㉕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 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뒷 면)

〈준수사항〉

- 구분 : 구입과지출결의서
- 용도(목명)
 - ┌ 물건비 중 인쇄비, 제작비, 물품구입비 등
 - └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 등
- 첨부서류 : 해당 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 작성요령
 - ①~⑮ 지출결의서 작성요령과 동일
 - (⑫청구란은 납품을 완료하고 채주가 대금을 청구한 날 및 채주성명, 날인)

구 분	적 요	날 인 자	비고
㉠주 문	납품업체를 결정하여 물품을 주문한 날	취 급 자	
㉡납 품	납품업체가 계약서에 의거 물품을 납품한 날 (납품 받은 날)	취 급 자	
㉢검 수	구입물품을 검수(영수)한 날	(분 임) 물품출납원	
㉣물 품출납부 기 재	물품출납원장 및 운용카드 등록일	취 급 자	
㉤적 요	구입물품의 내용요지		
㉥승 낙 란	계약(승낙)체결일자 및 인적사항 기재 날인	납품업자	
㉦물 품 명 세	구입한 물품을 양식에 의거 기재		
㉧승 낙 사 항	계약서에 의거 납품지정일 기재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증제 ①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⑥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②			세출과목	⑦		
③ 발 의	. . .	인	조 직	⑤	⑧ 발 의	. . .	인
④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정 책		⑨ 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				
			세 부		⑩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				
			통계목		⑪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개산금에 대한정산	개산액⑫	₩ 년 월 일			정 산 액	₩⑬	
금 원(금 원) ⑭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출장자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⑮ ⑯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⑰						
주관과	용무	⑱			출장지	⑲	
취급자 인⑳							

(앞면)

여비지급명세서

여 행 자			출장 목적	월일	출 장 지			운 입			일/야	식비 (원)	숙박료 (원)	현 지 교통비 (원)	기타 (원)	계 (원)	청구액 및 수령액	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	직급	성명			출발	경유	도착	종별 (등급)	거리	요금								
								()										
								()										
								()										
								()										
								()										
								()										
								()										
								()										
								()										
								()										
								()										
								()										
								()										
								()										
								()										

※ 기타는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뒷면)

〈준수사항〉

- 구 분 : 여비지출결의서
- 용 도 : 국·내외 출장시 여비 지출
- 첨부서류 : 출장명령서 사본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날 인 자
① 증 제 호	원인행위부 일자 순에 따른 일련번호	
② 결재란	재무회계규칙 제5조에 위임 규정	해당자
③ 발 의	출장명령일자	취급자
④ 원인행위부 기재	지출결정일자	„
⑤ 세출과목	지출해당 예산과목	
⑥ 연도, 회계	세출연도 및 목적에 의한 회계분류	
⑦ 결재란	회계실무자 및 지출원	해당자
⑧ 발의	발의일자	
⑨ 지출부 기재	지출부 등재일자	취급자
⑩ 지급명령발행부	지급명령부 발행등재일자	
⑪ 지급명령번호	지급명령 번호 기재	
⑫ 개산액	당초지급액(14와 동일)	
⑬ 정산액	최종정산액	
⑭ 여비산출액	여비산출 금액	
⑮ 청구자	출장자 성명기재(다수인 경우 대표자 인으로 기재)	
⑯ 취급자인	해당부서 취급자 날인	
⑰ 용 무	출장목적	
⑱ 출장지	출장도시 기재	

Tip

질의회신

- 지출결의서와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소규모 공사 시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기 위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구분 기준은
 - 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이계약인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용
 - ② 지출용도에 따라 구분
 - 지출결의서 : 인건비, 물건비중 업무추진비 등, 이전경비 중 보상금 등, 자본지출중 시설비 등
 - 구입과 지출결의서 : 물건비중 인쇄비·물품구입비 등,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 등 따라서 상기의 구분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Tip

질의회신

- 수의계약 시 3000만원 이하면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 경우에 계약서를 생략하고 공사(수선)지출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나요?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인 "공사(수선) 집행과 지출결의서"로 집행한다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지급명령

지출원이 지급대상인 채주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대신, 현금출납을 책임진 금고를 지급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절차

1) 지급명령의 종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가) 통상지급명령 :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나) 송금(계좌)지급명령 :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 지급할 때

- 모든 경비는 반드시 계좌송금 (재무회계규칙 제50조)

※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경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현금지급 가능

다) 집합지급명령 : 지출과목이 동일한 경우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반드시 금액·성명표 첨부)

라) 약식지급명령 : 금고가 구내에 있거나 근거리에 있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금고에 제시

※ 지급명령서에는 지출원의 회계관인과 인감을 날인해야 함

2) 지급명령 발행요건(재무회계규칙 제51조)

가) 예산과목별, 채주별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로 작성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

나) 청구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

-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
- 일상경비(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 월정액 업무추진비, 도급경비
-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복리후생비, 의정활동비, 조의금
- 복리후생비, 의정활동비

〈 지급명령시 지출원 검토사항 〉

- ①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되어 있는가
- ② 당해 경비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③ 당해경비는 배정을 받은 예산 및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④ 소속 회계연도와 세출예산과목은 틀림이 없는가
- ⑤ 필요한 관계서류는 구비되어 있는가
- ⑥ 세입·세출을 혼동하고 있지 않는가
- ⑦ 예산전용을 제한한 전용이 아닌가
- ⑧ 지출의 특례로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기타의 제한을 넘은 것이 아닌가
- ⑨ 지출하여야 할 시기는 도래 하였는가
- ⑩ 정당한 채권자인가
- ⑪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⑫ 지출의무가 법령·조례·규칙·예규·지침·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 등에 의한 것인가

다. 전자이체 방식에 의한 지급명령

지출원이나 일상경비 출납원이 금고와 약정을 통하여 전자이체 방식으로 지급명령을 하는 방식을 말하며 동지출제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2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동 방식으로 지출을 하는 자치단체는 서울을 비롯한 여러 시·도가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2(지출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게 할 수 있다.

3.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① 인건비(101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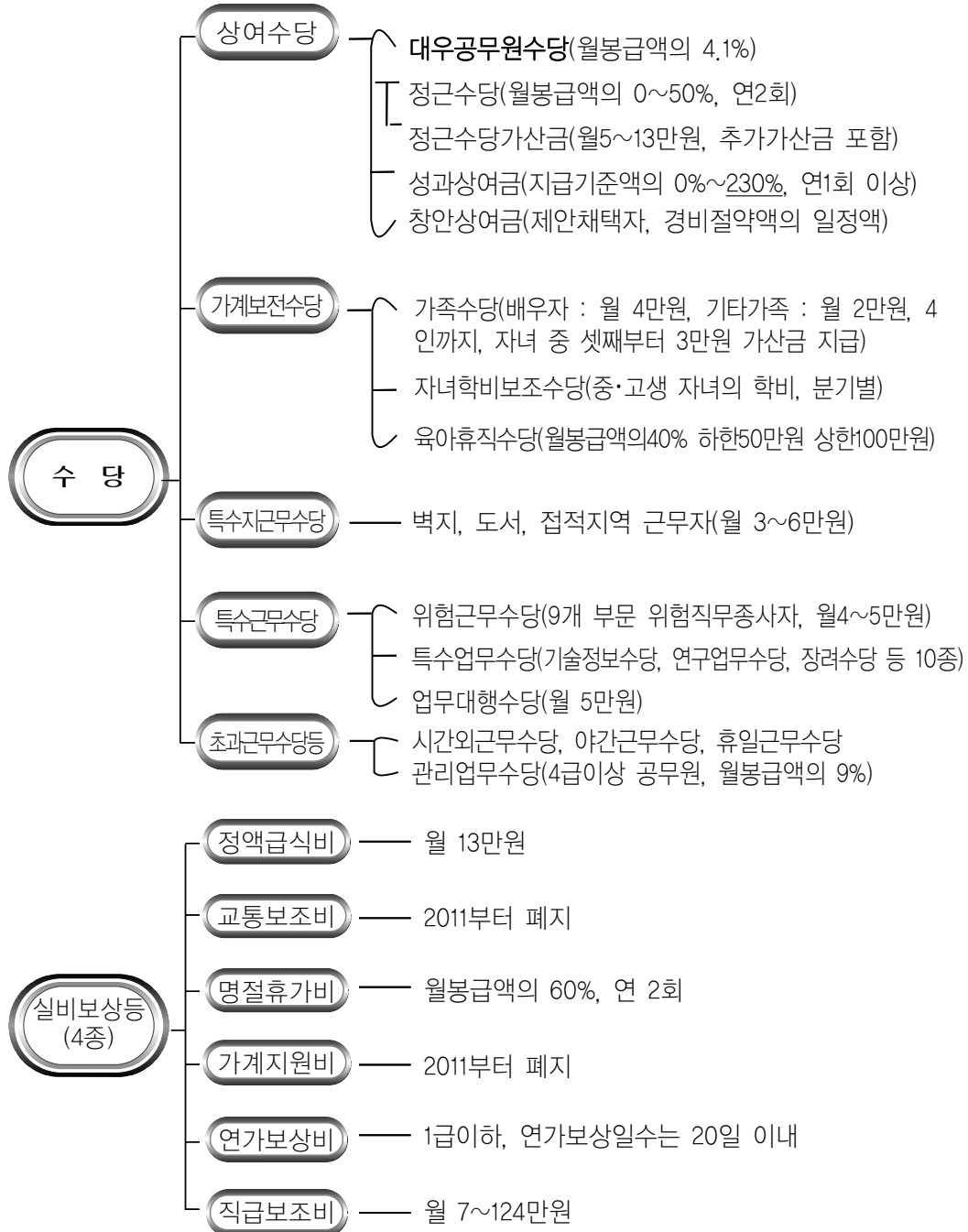
1-1.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101-04)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부문 노임(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 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 노임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특정사업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 완료 후 사역을 중단해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의 공공근로 인부임 지급 시 청구서 징구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청구서를 생략할 수 있는바 이것은 통상적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행정력 절감을 위하여 일일이 청구서를 받는 것을 생략한 것으로 이 취지에 의하여 지출서류의 증빙자료(날인된 근로 수첩, 계좌번호 등)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서 없이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무원보수체계



②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1. 일반수용비

- 각급 기관에서는 종이류 구입 및 인쇄·유인물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소모성 물품 구입
-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지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Tip

질의회신

일반운영비로 살 수 있는 목록?

- 단가가 4 ~ 5만원대인 사무용 의자를 201-01 일반운영비로 살 수 있는지요?
-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인 바, 물품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지침 등을 참조하여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일반운영비로 구입하고 비품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바, 사무용의자는 비품에 해당하므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탁교육비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 단, 필요에 따라 입교시 집행 가능
-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실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 시에는 해당 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다.
- ※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Tip

질의회신

일반운영비로 직원격려 만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직원 격려성 만찬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일반 운영비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임

Tip

질의회신

위탁교육비 집행여부

-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로 해외방문 프로그램을 직원위탁교육으로 진행 시 예산집행이 타당한지?
 - 일반운영비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교육비는 지방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위탁교육에 대한 경비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동 비목에 편성 집행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해외연수 계획 등을 수립하여 국외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되지,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투·융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Tip**질의회신****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위원회 참석수당 가능여부**

- 위원회참석수당은 위원회 개최 시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데 시일이 촉박하여 서면으로 개최키로 결정되어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사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한 지?
 - 운영수당에는 위원회참석수당, 심사수당, 일, 숙직비, 시험관리비, 외래강사료, 직원능력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사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참석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나 서면심사의 일환으로 이 경우에는 심사수당은 지급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일·숙직비

-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 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숙직근무 시 일정시간(예: 오후 9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재택근무 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초과하여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숙직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시험관리비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집행한다. 다만,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 선정, 감수,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6.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강사료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되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본청(의회포함), 사업소, 읍·면·동 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예시) 본청 직원이 사업소에서 강의를 한 경우 강사료 지급가능

7. 직원능력개발비

- 자치단체에 정한 지급대상, 지급금액(연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직원능력개발비 지급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자체실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며 직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수강료납부영수증 및 출결사항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Tip

질의회신

행사지원 공무원 급량비 현금지급 가능여부

- 00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각 종목별로 약 27개 경기장으로 분산 개최합니다. 경기장의 분산 배치로 카드사용이 사실상 어려울 경우 급량비를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에 의거 신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분산 지급하는 경우는 일상경비로 배정하거나 매식처를 정하여 식권발행 후 정산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8. 급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는 병급 가능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에게도 특근매식비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급식대상에서 제외한다.

Tip

질의회신

급식지급대상 여부

-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무조건 급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야간근무시간(22:00 ~ 익일 06:00) 이전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면 급식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들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 평일의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근무자에 대한 급식제공이므로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9.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단, 청소비 등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하도록 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 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지급 가능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음
-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형태로 집행이 가능

1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할 수 있다.
 - ※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조례·규칙)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적용대상에 ‘정무직공무원’도 포함한다.
 -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이 사무관리비(201-01) 이외 타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한다.

-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재배정할 수 없다.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 전화는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함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 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공공요금의 조화·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함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팸플릿·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 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2. 연료비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냉·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의 용역비로 한다.
-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 집행을 위한 재료 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재정정책팀-7984, 2006.12.29)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간단가 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의 내구년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 **일반수용비**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 **시설비** :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Tip

질의회신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범위

- 회계관련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범위 중 기타 시설물이란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 기타 시설물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에 이용하는 일반적인 시설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순수 인력만 소요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보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인건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차량·선박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한다.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무실·양호실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용에 집행한다.
- 소속직원에게 대한 공상치료비 등에 집행한다.

2-3. 행사운영비(201-03)

-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에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및 행사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비(단가는 급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 할 수 없다.(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 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 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Tip

질의회신

국내·외 교육관련 행사운영비(201-03) 지출 여부

- 외부인사를 초청한 행사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내부직원과 같이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 행사운영비에는 급량비의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내·외부인사에 대한 식사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등을 행사운영비로 지출 할 수 있는지?
 - 행사운영비에는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념품 및 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운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 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된 경우 행사참석에 따른 기념품이나 기념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지?
 - 외부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구입한 기념품 등의 비용은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여 비(202목)

3-1. 숙박비·교통비 정산제 ⇒ 정액제로 환원 ('08. 4. 2 행안부 문서시행)

종 전	운 입	일비(1일)	숙박비(1박)	식비(1일)
	· 실비정산(후불) (철도, 버스, 선박, 항공)	· 정액지급 (2만원)	· 카드정산(후불) · 1호(실비), 2호(4만원 한도)	· 정액지급 · 1호(2만5천원) · 2호(2만원)
↓				
개 선	운 입	일비(1일)	숙박비	식비(1일)
	· 정액지급(선불) · 철도, 버스, 선박, 항공 요금 정액 지급	· 정액지급 (2만원)	· 정액지급(선불) · 1호(4만6천원), 2호(4만원)※조례 ·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 정액지급 · 1호(2만5천원) · 2호(2만원)

※ 1호는 **3급이상**(단체장포함), 2호는 **4급이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함

- 출장입증서류를 회계서류에 첨부(근무지 외 출장에 한함)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 제외대상 : 다른 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별도의 자료 구비 불필요

1.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의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 내 출장임

- 2)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 내’로 보지 않음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 내에 해당됨

나. 여비지급 기준

- 1)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없음)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 2)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 3)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4)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근무지의 국내출장시의 여비

가. 근무지의 여비의 계산

- 1) 지급되는 여비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 2) 육로 120km 미만의 국내여행

가) 육로 120km 또는 수로 60km 미만의 국내 여행의 경우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km를 육로 2km로 계산한다.

나. 운임

1)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가) 국내 철도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구 분	철도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특 실)
제 2 호(3급이하)	실비 (일반실)

나) 철도이용협약(한국철도공사)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

가) 국내 항공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 다만, 예산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영 별표1 제2호 해당자는 운항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 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나)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에 따라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3)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가)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나)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숙박비

- 1)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 3)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라. 식비

1) 지급기준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식비 지급기준(1일당)
제 1 호	25,000원
제 2 호(3급이하)	20,000원

2) 지급방법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3) 식비의 지급제한

가) 숙박을 요하지 않는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의 경우는 식비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 이 경우 여행거리는 왕복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km를 육로 2km로 계산한다.

나) 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일비

1) 지급기준

가) 일비는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3. 국외출장 시의 여비

가. 국외여비의 계산 : 〈국외여비 지급기준 6급 이하 기준〉

(단위: 미불화)

구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철도버스 및 선박료	식비
가등급	2등급	26	129	실비	67
나등급	2등급	26	87	실비	49
다등급	2등급	26	64	실비	37
리등급	2등급	26	56	실비	30

1)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2) 나등급

가)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나)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다)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라)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3) 다등급

가)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이,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나)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다)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라)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4) 라등급

가)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나)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다)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라)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란드, 알제리, 예멘, 에티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나. 운임

※ 국외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1)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

가)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 나)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 다)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 ※ 다)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

- ※ 국외선박운임은 부선임(舢舨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
- 가)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 나)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 다)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 ※ 다)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 가) 공무원으로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국외항공운임의 경우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26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321호, 2010.7.27.) 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따라 지급한다.
 - 다만,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항공운임 절감 등 여비의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GTR 운임보다 낮은 항공운임을 적용하거나,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나)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12조제 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이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관리방법 등은 국내여행시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Ⅳ.2.다.(2))와 동일하다.

4) 숙박비

- 가)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 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 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다. 식 비

- 1)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예 시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5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라. 일 비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별도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마. 준비금

- 지급대상 :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

계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 지급대상항목 : 4개항목(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바.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

- 단체장·부단체장을 제외하고 3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 할 수 없다.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금지하여야 한다.
-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 시 국외여비에서 집행 금지(민간인 해외여비과목에서 집행)
- 지방의회의원의 국외 출장여비는 의회비에서만 집행한다.
-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한다.
-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
- 기타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Tip

질의회신

민간인 국외여비(301-07)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출 가능 여부

- 민간인 국외여비(301-07)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출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8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토록 정하고 있으며 민간인 국외여비(301-07)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 내 에서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의회의원이 민간인 국외여비로 집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 여부

-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을 경우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속 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무기계약 / 기간제근로자 국외여비는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지급해야 하겠지만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으로 판단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또는 「국외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

-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을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행사장 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이 제한된다.
 - 개인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동 규칙을 제정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과 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선거구민 등에 대한 상시 기부행위(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집행행위를 포함)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선거구민 등에 대한 예산의 집행행위(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행위로 보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을 법제화 한 것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해설

- 이 규칙을 적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장, 부단체장, 실·국장,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등 자치단체의 보조기관, 하부기관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만 적용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야 함
 -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 필요
 -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

책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별표〉 6호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 회계관계직원이란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 등을 포함함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집행구분 요령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경비의 집행성격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야 함
- 〈별표〉의 모든 항목이 개별적인 집행내용과 무관하게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분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함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별표〉6호에 규정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해설

-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별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 집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집행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해설

- 지방자치단체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의 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수혜를 받는 자를 포함)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표〉 제8호나목(축의·부의금품)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집행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112조 제4항 참조)

▶ 표기방법(예시)

- 전라남도지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 “전라남도”로 표기
- 경상남도 남해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 “남해군”으로 표기
- 「공직선거법」 개정(‘10.1.25)으로 종전의 제86조 제3항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호) 제4조에 의한 공직선거일 1년(또는 60일) 전 집행제한 규정은 폐지됨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세부기준, 지출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업무추진비 항목을 기준으로 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별표해설

1.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해설

- 재난·재해 사고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지역 대책본부를 통하여 이재민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 ▶ 재난·사고의 범위
 - 재난·재해 사고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와 재산손실이 크거나 인명피해가 커서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의 사고를 의미함
(예시) 태안 기름유출사고, 홍수 및 대형 산불사고 등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재난복구 종사자**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소방·경찰공무원, 학생, 자원봉사자 등 재난복구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봉사에 참여한 자를 의미함
- 재난·재해 사고란 가목과 같음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다음의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2)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5)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해설

-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 일일찾집, 바자회, 음악회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집행이 불가함
- 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등록 등을 하지 않고 모금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
- 개인적인 명의를 의연금품·구호금품 지급 일체 금지
-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 집행은 가능함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물 제공

해설

- “지역특산물”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공산품도 포함
- 광역시도는 관할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지역특산품으로 볼 수 있음
 - “의례적”이란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함
- 언론관계자의 범위
 - 신문사·방송사·잡지사 등 언론사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자
 - 관내 지역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중앙방송 언론사도 가능

나.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해설

- 다른 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 MOU, 행정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식에 참석한 자치단체 공무원,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식사제공이 가능함
 - ※ 협약 상대자가 민간기업인 경우도 포함
- 기념품은 의례적 수준에서 증정 가능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기념품을 적정수준으로 해야 함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해설

- 업무협의 또는 공식적으로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의미함

- 내방객의 범위

- 해당 자치단체에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해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여 1인당 4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 (불가피한 경우 초과 가능)
- ▶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시책사업 브리핑 등
- 언론관계자와 해당부서 관계공무원이 함께 식사 가능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해당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가 동행한 임·직원까지 식사 제공 및 격려품 지급은 가능하나 격려금은 선수에게만 가능
- 후원회·선수가족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집행 불가
-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등록은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가 지급이 가능함
- ▶ A시에 주소를 둔 선수가 B시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A시 및 B시에서 동시 지급이 가능함

▶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입상한 출향인에 대하여 격려금품 지급 가능한 지 여부

-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해당 자치단체 소속선수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
-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함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해당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지역사회를 위해 공연·행사를 하는 경우 행사 현장에서 행사를 위해 활동 하는 자
예시) 무대, 공연장, 촬영장 등 현장에서 (출연자 등 포함)에 대한 식사제공
- 격려금품은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봉사활동 관련은 농어촌 일손돕기 등 아래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 함
- ▶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 ▶ 타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경우에 집행가능 여부
 -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농어촌일손돕기, 불우소외계층 봉사활동에 대하여만 집행 가능(「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 불우소외계층 봉사활동 범위
 - 자원봉사자로서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가능(일일찾집, 바자회 등 간접적인 봉사활동은 집행 불가)
- ▶ 자원봉사활동 중 부상당한 경우 격려금품 지급가능 여부
 -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에는 집행가능
- ▶ 자원봉사단체 주관 행사 경우에 집행가능 여부
 - 봉사활동에 대한 발대식, 봉사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연찬회, 야유회, 간담회 등의 행사까지 확대하여 집행 불가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해설

- 자치단체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경우로서 그 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함
 - 행사개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함
- 시책사업과 관련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 “격려가 필요한 경우”의 의미
 -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초과 달성되고 있거나,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미달되어 격려가 필요한 경우

-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의미

▶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의 의미

-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거나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해설

- 회의 및 행사, 업무협의를 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로서 업무협의를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다른 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과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 집행 여부
 - 다른 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회의 또는 행사·업무협의를 자치단체 업무와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이 당해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업무협의를 등과 관계된 회의, 간담회의 경우에도 식사제공 및 기념품 지급 가능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자치단체가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행사로서 ‘시·군·구민의 날 행사’, ‘시·도, 시·군·구 체육 행사’ 등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함
- 행사 관계자는 행사를 위하여 자문·조언 등을 하는 자, 전문위탁기관의 관계자 등을 포함

라.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
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해설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외국 자치단체 관계자를 의미하며 내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자매결연 자치단체 등 해외 방문시 적용 가능함
- 해외에서 국내 방문시는 가급적 외빈초청여비에서 집행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당해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등은 집행대상에서 제외됨(단, 안내 등을 위해 일부 동행한 경우 공동식사는 가능)
- 공식적으로 교육, 견학 등의 구체적인 목적을 위하여 문서로 방문협의를
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
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해설

- 현업(현장)근무자는 단순노무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현장에서 실제로 수
행하는 자에 한정됨(대부분 기능직, 일용직)

- 대표자는 대표의 직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대표성을 가진 자)
- 관할지역 외에 다른 지역 기관 근무하는 자를 포함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관내에서 집단민원, 시위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
예시) 경찰(전·의경), 청원경찰, 청사방호직원 등
- ▶ 외주용역업체의 직원이 노점상 시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집행가능 여부
 - 집단시위자에 대하여 청사 등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보안업체 직원이나 철거현장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등 가능
- ▶ 외주용역업체가 현장근무 과정에서 부상 등을 입은 경우
 - 현장근무 중에 직접적으로 시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격려금품 지급 가능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 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의 현장에서 경비, 질서유지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
 -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란 축제, 시민의 날 행사, 면단위 농악경진대

회 등 자치단체가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자치단체가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행하는 행사, 행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행사를 말함

- 공공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특별히 질서유지에 중사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질서유지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 평일 초등학교 앞 질서유지 봉사는 해당되지 않음
- 유관기관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 한정됨
- 격려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의례적 수준 범위 내로 한정
- 공공행사 현장근무 과정에서 부상 등을 입은 경우
 - 현장근무 중에 직접적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가족에게 위로금품 지급가능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해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은 본청 및 지방의회 사무처(과), 사업소 등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일반구, 읍·면·동)을 포함
- 근무를 위한 출근이나 근무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포함되나 이 경우 직접적으로 자신의 집이나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로인 경우에 한함
-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로 위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는 제외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해설

-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자에 대한 감사패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로는 격려금품 집행
- 실제 퇴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퇴직예정자도 가능)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해설

- 중앙부처, 시도, 민간단체 등에서 행하는 각종 평가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 부서(자)에 대하여 격려금품 지급가능
- ▶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 및 읍·면·동 평가시 지급 가능여부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포상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해설

-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은 주기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별한 노고로 인한 격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근무형태가 상시적으로 현장근무를 하는 자로 한정되며, 감독자 및 일시 현장근무자 등은 제외
 - 예시)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감시를 위하여 현장근무하거나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위하여 현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

- 격려금품은 의례적 수준 범위 내에서 지급
- ▶ 공익근무요원 등의 지급 가능 여부
 - 상근하는 자치단체 소속 공익근무요원은 해당됨
 - 외주업체 직원, 공공근로 및 대체근로자 등은 상근직원에게 해당되지 않아 지급불가(「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해설

- 소속 상근직원들이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하여 격려 가능
예시) 국정감사, 정부합동감사, 산불예방 감시근무, 지방의회 행정감사, 시책추진 등으로 인하여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 격려를 위한 오찬 또는 만찬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실제로 재난, 재해,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근무자로서 비상근무명령이 있었거나, 별도의 비상근무명령이 없었던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비상근무를 할 조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지급 가능
- 격려금품 지급은 의례적 수준으로 하고 근무인원이 많은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자치단체 본청(의회 포함)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하급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집행 가능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방문”하는 경우의 범위
 - 취임에 따른 초도순시나 시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방문 또는 순시
 -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 중앙부처 등 다른 유관기관 관계자와 소속기관 또는 하급기관을 동행하여 방문하는 경우만을 의미함
- ※ 일상적 수시방문은 포함되지 않음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해설

-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집행가능
- ▶ 상근직원이 출산휴가 중이라도 생일이면 집행이 가능
- ▶ 생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공공기관 및 단체”라 함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의미
- “공동행사”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자치단체 사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의미함
 - ※ 환경보호 캠페인, 교통질서, 새봄맞이 새마을 대청소 등
- “회의”는 자치단체 사무의 직접수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회의 목적이 문서 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함
- “업무협조”라 함은 자치단체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문서로 계획된 경우로서 해당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거나 초청하는 경우를 말함
- “식사 제공”은 식사를 대신한 간식, 음료(주류를 제외한다)를 포함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해설

- “가목”의 “유관기관” 중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는 제외되며,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됨
- ▶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의 범위
 -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임하거나 새로 부임하는 경우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퇴임하거나 새로 취임하는 경우,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를 포함. 다만, 이 경우 자치단체 대표로 1인만이 집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집행 불가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집행 불가

▶ 지방의원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일반 의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음
- 격려금품도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 (감사사례) △△시에서 유관기관장 퇴직에 따른 격려금을 수백만원 지급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해설

▶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함

- ▶ “공공시설”의 개소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 반드시 당해 지자체 관할 구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님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해설 부속실 운영시 내방객 접대에 소요되는 경비 등

나. 축의·부의금품

-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지방의회·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말하며, 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행정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사망 또는 결혼은 실제로 축·부의를 하여야 할 경우 등 사실상 격려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상근직원은 관련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음
 - ※ 교육훈련, 파견 중인 자를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함

- ▶ 이·통장은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어 축·부의금품 지급할 수 없음
- ▶ 동일한 자치단체 내의 A구청(일반구)에서 B구청(일반구)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
 - 동일한 자치단체장 소속의 기관 간(소속기관, 일반구 및 동주민센터 간)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동일 자치단체 내 상하관계 기관으로서 업무유관이 있는 경우는 가능함
(예) 안양시(본청) 회계과 ↔ 안양시 동안구(일반구) 회계과
- ▶ 단체장이 의회사무처(과) 직원에 대하여 축·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없음
- ▶ 축의·부의금 대신 화분 또는 화환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5만원의 범위에서 집행
 - 지급대상 및 방법은 축의·부의금의 경우와 동일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④ 업무추진비(203목)

- 나.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실·국 또는 실·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예시) 본청 예산담당관실 ↔ 본청 회계과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면·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면·동장은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면·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시 본청 세무과 ↔ 시 일반구 세무과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면·동장은 규칙 [별표] 8호 나목의 3)-나)에 따른 소속 상근직원에게 한해서만 집행 가능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다른 자치단체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광역시 건설국장이 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건설과 직원 결혼 축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가능

-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의 소재지가 당해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예시) 인천 남구는 옹진군 업무관련 부서에 집행가능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읍·면·동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4-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실·과가 없는 사업소, 의회 전문위원실 등도 지급〉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
- 과운영비
 -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과 인원수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비고
월 지급액	1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정원31인 이상 1인 초과 시 월 5천원 추가

-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5] 직무수행경비(204목)

5-1.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 일선기관의 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실제로 2개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또는 부서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5-2. 직급보조비(204-02)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지급한다.

5-3. 특정업무경비(204-03)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감사·세무·예산담당공무원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한다.
 -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다만, 예산업무는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 예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계가 별도의 전담팀(계)으로 설치된 경우 지급가능
- 특정업무경비는 적용이 중복되는 경우(예: 과장)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 및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그 밖의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특사경수사 활동비는 병급 지급할 수 있다.
-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을 업무담당과장 이하로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시·도 및 시·군·구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

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한다.
-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전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상)
- 파견근무자(근무조정 포함)가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원 소속기관에서 월 정직책급의 지급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를 지급받거나 파견 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6] 의회비(205목)

-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9가지 경비(통계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6-1. 의정활동비(205-0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4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6-2. 월정수당(205-0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7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6-3. 국내여비(205-0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지급대상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 지급 금지)
-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집행한다.

6-4. 국외여비(205-0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
-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연간 편성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까지 추가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다.

6-5. 업무추진비(205-05, 205-06)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

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의회와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단, 지방의회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집행할 수 있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7 연구개발비(207목)

-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출납폐쇄기한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임상연구용역 : 실소요경비
 - 학술연구용역 등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 방법,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8 일반보상금(301목)

〈 일반보상금 공통 〉

- ❖ 일반보상금은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장단활동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운영경비
 -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

8-1. 통·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301-05)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이장 변경 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예) 통·이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1. 19일 변경했을 경우

$$\begin{aligned} &\left[\begin{array}{l} \text{전임자} : 200,000\text{원} \div 31(12.21 \sim 1.20)\text{일} \times 29(12.21 \sim 1.18)\text{일} = 187,100\text{원} \\ \text{후임자} : 200,000\text{원} \div 31(12.21 \sim 1.20)\text{일} \times 2(1.19, 1.20)\text{일} = 12,900\text{원} \end{array} \right. \end{aligned}$$

8-2. 민간인 국외여비(301-07)

-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8-3. 외빈초청여비(301-08)

- 외빈초청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 버스 임차료 등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자치단체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 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자치단체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1박/1식)
숙 박 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식 비	주 빈 50
	수행원 30
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8-4. 행사실비보상금(301-10)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지급하고 영수증 징구
 - 단체급식 및 다과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재 원칙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
-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한다.

8-5. 기타보상금(301-12)

-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집행

Tip

질의회신

시설부대비 집행관련

- 시설부대비의 사용 중 임명된 감독관이 아닌 업무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나 담당도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명령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시설부대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8호) III-10-2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시설부대비(401-03) 규정에 의거 시설부대비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며,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의 의미는 감독공무원 이외에 관련전문가나 관련공무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현장에 출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사 관련 담당 계장 및 과장이 단체장의 명을 받아 공사감독 또는 점검을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출장하였다면, 시설부대비의 집행이 가능하나, 단순한 관내순찰, 현장지도 등 일상적인 업무 출장인 경우 시설부대비 집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9 포상금(303목)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국내에 한함)
 -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집행
 -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
- 예산성과금
 -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 불가
 - 예산성과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집행

10 배상금 등(305)**10-1. 배상금 등(305)**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으로 집행한다.

11 출연금(306)**11-1. 출연금(306)**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서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하여야 한다.

12 민간이전(307)

12-1.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자금송금 → 정산(정산잔액반납)
-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를 말함
 - 당해 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지방의회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팀-458호('08.01.22)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권고」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정산시 증빙서〉

- 정산 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Tip

질의회신

민간보조금 교부시기에 관한 질의

- 민간보조금의 사업완료 후 지급해야 하는지 사전지급해야 하는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보조금의 교부시기에 명확한 표현이 없으나 기획재정부 발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착수지연 등으로 인한 이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어 보조금 교부시기는 자치단 체장이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 관련 지원조례 적법성 확보 후 지원여부 결정
 - 대법원의 서울시 서초구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조례와 동일·유사한 조례의 보조금 지급 규정은 삭제
 - 보조금 지급규정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를 엄격하게 적용, 보조금 지급규정 개정·보완후 지원
 - 보조금 지원시 일반적인 민간에 대한 보조 등과 같이 사업별로 검토하여 집행
 - 행정동우회도 지원조례가 있는 경우, 의정회 조례에 준하여 자체 검토 후 집행
 - ※ 재정정책과 - (2008. 1. 22)호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권고」 참조
- 집행방법
 -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효과성과 단체의 재정여건, 전년도 유사사업 추진실적,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
 -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를 지원하 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지양
 -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하여 보조사업의 성과와 사업실 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
 - ※ 보조사업 성과·실적평가 : 보조금 집행내역(자부담 등), 보조사업 달성도(사 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보조사업자 자체평가,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의 파급 효과, 관련부서 평가 등을 종합하여 예산부서에서 평가
 - 보조금의 지원내역과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주민에 공개

12-2. 민간행사 보조(307-04)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를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예시) 사업자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불이행시 제재 등 계약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방식으로 위탁계약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수탁기관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13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3-1. 시설비(401-01)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 시설비(401-01-4)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
 - 예) 건축공사 낙찰차액으로 건축물의 조경·안전시설공사 등실시
 -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

13-2.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무관리비(201-01)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13-3.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14 민간자본이전(402목)

14-1. 민간자본보조(402-01)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와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4-2. 민간대행사업비(402-02)

-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 민간수탁자 선정, 계약이행 등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집행 및 정산은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15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403목)

15-1.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 사업비의 정산은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16 자산취득비(405목)

16-1.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자산취득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요물품정수 책정 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한다.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 내구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16-1. 도서구입비(405-02)

-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하여 집행한다.
다만, 민원실,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Tip

질의회신

자산취득비 집행관련

- 명시이월된 자산취득 물품 구입 시 예산서 상의 부기별 금액과 물건 수량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체 자산취득비 총액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지?
- 명시이월된 예산의 경우 전년도 의회 의결로 명시이월조서 상 내용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당초 명시이월된 부기와 다르게 정정하여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4. 계약체결을 통한 원인행위 시 회계공무원 확인사항

가. 계약의 체결

- 1)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자치단체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3) 장기계속공사(동일회계연도 차수계약을 포함)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 공사 낙찰금액 부기

나. 계약문서의 종류

- 1)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 2)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 3)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4)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 5) 1억원 이상 공사는 공정별 물량내역서
- 6) 과업이행요청서가 있는 경우 과업이행요청서
- 7)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 8)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 9)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10)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11)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 12)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 13)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다. 대가의 지급 시 구비서류

- 1)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2)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 3)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 4)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 6)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7)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8)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8)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용어사전

● 채무

빚진 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채권의 반대말로서 채권이 있으면 반드시 채무가 존재한다.

● 지출결의

지방자치단체 지출원의 지출의사에 대한 결정행위를 말한다. 지출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리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았을 때에 당해 채무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출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다. 따라서 지출원은 구체적인 채무에 대한 지출결의에 앞서 그 채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 지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지출을 할 때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명령의 종류는 통상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약식지급명령이 있다.

● 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한다. 이에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현금출납사무를 관장하는 고유금고제도 ②은행 기타의 자에게 출납사무를 위탁하는 위탁금고제도 ③특정은행이 출납사무를 위임하는 예금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는 한국은행이 취급하며, 한국

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에 예금을 하도록 하는 예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사무는 위탁금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67조 내지 제76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내지 제101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 IV 장 지출의 특례

학습목표

- 지출의 특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개념 및 집행대상, 절차를 이해한다.
- 선금급, 개산급, 과년도지출의 개념 및 범위를 이해한다.
- 세출예산 이월의 개념 및 종류와 사례를 익힌다.

학습내용

1. 지출특례의 개념

회계제도는 일정한 원칙을 두고 있으나 그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써 특례를 인정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도모하고 있다.

원 칙	특 례
1) 정당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수 없음 (지재법 제71조)	○ 일상경비의 교부(지재법 제72조) ○ 도급경비의 교부(지재법 제74조)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 (지재법 제7조)	○ 지난 회계연도 지출(지재법 제76조) ○ 예산의 이월제도(지재법 제50조)
3)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고 이행시기가 도래해야만 지출 가능(재무회계규칙 제50조)	○ 선금급(지재법 제73조) ○ 개산급(지재법 제73조)
4) 모든 대가는 계좌입금 원칙임 (재무회계규칙 제50조)	○ 신용카드의 사용 (행안부 예규 “세출예산 집행기준”)
	○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여비는 현금 지급 가능

2. 지출특례의 내용

지출의 특례에는 일상경비의 교부, 도급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예산의 이월, 선금급, 개산급, 신용카드의 사용이 있으며, 이러한 특례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상경비

1) 개 념

- 일상경비란 도서벽지, 기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이 경비는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자금을 출납원에게 교부하여 지급케 하는 경비임

2) 일상경비의 교부 범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 여비(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범위 내)
- 일반운영비(제한 없음)
-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제한 없음)
-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범위 내)
-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립 (1회 교부한도액 2,000만원)
- 다수인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경비(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범위 내)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제한 없음)
-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범위 내)
-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지급(제한 없음)
- 당해 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의 행정구역 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1회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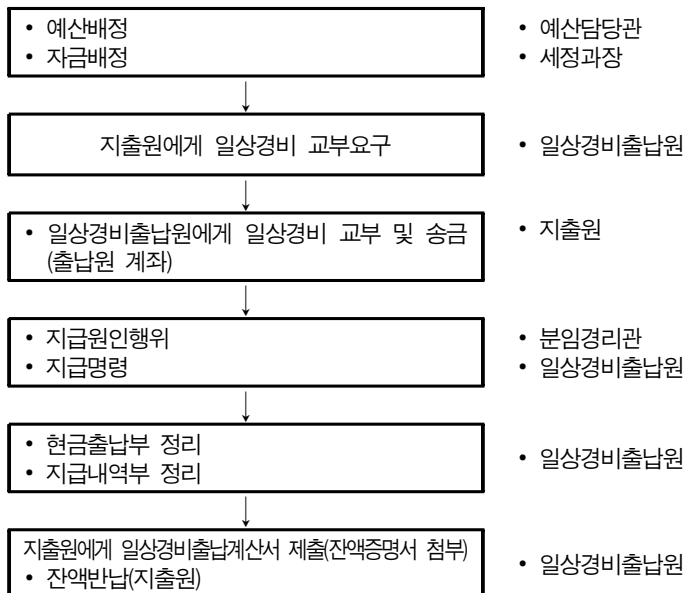
부한도액 1천만원)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그 밖의 직위 보수, 수당, 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제한 없음)
- 각종 수당, 사례금 및 업무추진비(제한 없음)
- 각 관서에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제한 없음)

3) 자금교부의 제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 관서의 일상경비 : 매 1월분 이내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다만,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외국·교통·통신 불편지역 등의 경비는 3월분 이내 교부가능
- 수시 비용에 대하여는 사무상 지장이 없는 한 분할 교부해야 함

4) 일상경비 집행절차



나. 일상경비로 지급되는 일반운영비의 범위 설정

지출원은 매년 초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하여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자금교부의 범위와 한계 설정하여 통보

○ 일반운영비 자금교부 범위 설정

- 지출원은 예년의 자금교부 수준, 예산서 상 일반운영비 내의 부기상 구분된 금액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과의 조직구조, 인력, 업무량, 업무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상경비 교부한도액을 설정하되

〈일반운영비 자금교부 한도액 결정시 검토사항〉

지출원이 직접집행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
○ 공공요금 중 기관단위요금 성격의 경비 ○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성격의 경비 ○ 재료비, 의료비 성격의 경비 등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성격의 경비 ○ 공공요금 중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등

○ 자금 교부범위 통보

- 시·도 및 시·군·구 지출원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1월 말까지 일반운영비 자금교부 한도액을 설정, 각 분임경리관(실·과장)에게 통보

다. 임시일상경비출납원(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재무회계규칙 제61조)

1) 개 념

채주 및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 이를 집행하게 한 후 지출원에게 정산토록 하는 제도

2) 교부요건

- 행사 등으로 현지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게 할 경우
-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에게 현지에서 직접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외국의 물품을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지 아니하면 구입할 수 없을 경우
- 기타 임시일상경비지출이 필요한 경우

3) 집행 및 정산절차

가) 주관과에서 소요경비에 대한 집행품의(지출원 협조) 및 집행결정

나) 인사부서에 의뢰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명(집행결정과 동시)

다) 회계부서로 임시일상경비 지급의뢰 및 수령

라) 임시일상경비 집행

- 집행 시 지급원인행위(계약) 생략 가능(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마) 임시일상경비정산(재무회계규칙 제61조)

- 정산서 제출 : 집행 후 5일 이내(지출원에게 제출)
- 잔액이 있을 때 : 당초 집행한 예산과목에 반납
- 부족금이 있을 때 : 증빙서를 구비하여 청구
- 과부족이 없을 때 : 정산서만 제출(집행관계서류 첨부)

※ 직전에 지급한 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재교부 금지(긴급한 사유 시 제외)

라. 도급경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8조)

- 읍·면·동의 출장소, 소방파출소, 기타 3인 이내의 관서 등 지출원이나 출납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의 소요경비를 지급하여 그 관서의 장 책임 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지급대상기관
 - 읍·면·동의 출장소,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
 - 도시철도 역과 도시철도 현업사무소, 화장장, 수원지 관리사무소
 -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자치단체 해외사무소, 119구조대, 그 밖에 정원 3인 이내 관서
- 도급경비지급 범위
 - 일반운영비, 여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도급경비의 집행
 -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정리하고 관서의 실정에 맞게 사용하되, 도급정리부를 정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함
 - 예산 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출원에게 집행상황 보고
 - 회계연도 말 사용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 사용
 -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사용시 정리부 기재
 - 도급경비 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관
 -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함

마. 선금급 (지방재정법 제73조)

1)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무 이행 이전 또는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비로서 미

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 지급

2) 선금지급 범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 운임 및 사례금
- 관공서(정부투자기관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부담금, 교부금과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 봉급지출일에 전출 또는 출장하거나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토지의 매수나 수용 또는 그 토지위에 있는 지장물의 보상금 및 이전료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바. 개산금 (지방재정법 제73조)**1) 개 념**

채무액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가 성립되어 있고 이행기한 도래 전에 지출하는 점은 선금급과 같으나 채무액이 미확정인 점이 다름

2) 개산금의 범위

-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 경비
- 소송비용
-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부담금, 교부금과 보조금

3) 개산금의 정산(재무회계규칙 제64조)

개산금을 받은 자는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지출원에게 제출

- 잔액이 있을 때 → 반납고지서 발행받아 반납
- 부족금이 있을 때 → 증빙서를 구비하여 청구
- 과부족이 없을 때 → 정산서만 제출

※ 개산금 중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 정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사. 지난 연도의 지출 (지방재정법 제76조)**1) 개 념**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출납폐쇄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지출의 제한

- 과년도지출은 그 경비의 소속 연도인 과년도 세출예산 항목별 불용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보충적 경비는 불용액을 초과하여 지출 할 수 있음 (공무원 보수, 배상금, 소송비용, 제세공과금 등)
- 과년도지출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음
 - ※ 전 전년도분에 대한 과년도 지출은 불가
- 채무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특례인 만큼 남용금지

질의회신

〈질의〉 과년도지출 가능 여부

〈답변〉 ○ 지난 연도지출은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 못한 경비를 현년도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며, 이를 후년도까지 이월·지출할 수 없으며,
 ○ 미지급된 채무액을 정산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예산조치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경비(미지급된 공무원보수 등)은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경비 소속년도의 불용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음

아. 세출예산의 이월

1) 개념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집행은 당해 연도 내에 한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

2)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명시이월비는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지방재정법 제50조)를 할 수 있음
-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후 10일 이내)

○ 사고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경비는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함

※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한 경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회계연도 내에 사고이월한 사업비의 부대경비,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PQ대상공사, 협상계약대상, 300억 이상대형공사, 재해복구공사), 손실보상비(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등 공사 완료 후 존속하는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재해복구경비),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당해경비에 대한 예산의 5%이내)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함(천재지변, 파업, 태업 등)
- 상대방의 채권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년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당초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음(명시이월비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

-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요구는 40일 이내)

감사지적 사례

- 사고이월은 당해년도 계약이행원료를 전제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 절대공기부족 등 사유로 연도 내에 계약이행 원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됨에도 회계부서에서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발주 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은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부적절 하게 처리하였음

○ 계속비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 이내(필요 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단,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 : 10일 이내)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 재이월의 제한 :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이월이 불가능함
- 예비비사용 경비의 이월
예비비 사용경비에 대하여는 이월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사고이월의 조건에 해당되면 이월 처리는 불가피할 것임.
-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함
- 이월에 수반된 자금
 - 원칙적으로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함
 - 단,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 자금이 부득이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자금 없는 이월)

자. 신용카드 사용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일반운영비 (201)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직원능력개발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

나) 공공운영비(201-02)

-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다)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업무추진비 (203, 205)

: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300만원 이상은 임의 적용

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

재 료 비(206)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통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연구개발비(2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보상금(3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또는 임의적 적용

- 가) 외빈초청여비(301-08)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 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 ※ 연회비, 선물비, 환송·여행사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 나) 행사실비보상금(301-10)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 다) 기타보상금(301-12)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민간이전(3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임의 적용

- 의료 및 구료비(307-01)

-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제용지 등
-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 피복비, 주·부식용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시설비및부대비(4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시설비(401-01) :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
- 시설부대비(401-03)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에 소요되는 소규모 경비

자산취득비(405)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
- 공관 및 관사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나) 도서구입비(405-02)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
- 이 경우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한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검사·검수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후)
- 물품제조·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제출 ⇒ ④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카드번호 입력) ⇒ ⑤납품(택배 등) ⇒ ⑥검사·검수 ⇒ ⑦카드대금지출(1개월 후)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2) 신용카드 발급절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한다.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 신용카드발급 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 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 실과 주무담당이 개설
 -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시 현지에서 공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1개 계좌 원칙 적용)

- 신용카드는 민간 법인카드와 구별·관리 될 수 있도록 아래 3가지 도안 중 자치단체 형편에 맞는 도안을 선택하여 제작한다.



(1안)



(2안)



(3안)

※ 기존카드를 전면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도안카드로 교체해야 함

- ❖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고 일상 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 ❖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 사용절차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카드 사용 및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집행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률을 1%로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

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4)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 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재한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법인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한다.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 받아 사용한다.(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통보)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5)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 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을 설정 할 수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계담당공무원이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하도록 함

6)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부를 정리한다.
-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출일까지 포함)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현금영수증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 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 (품의는 건별)
-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

을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7)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3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
 - ※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경리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 현금영수증에 의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별표 제2호 서식 】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교육훈련기관 구분		여비구분	운 입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 지급 없음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지급 않음	○ 당해 교육 훈련 기관 이 청구하 는 금액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 는 금액
	비합숙 의 경우		○ 지급 없음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공무원 자치단체 지방공 무원여비조례[별 표] 일비의 5할	○ 지급 없음	○ 자치단체지방 공무원여비조 례상 식비의 3 분의1 또는, 당 해 교육훈련기 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 에 있는 교육훈련 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한 왕복운임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지급 않음	○ 당해 교육 훈련 기관 이 청구하 는금액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 는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 의 경우		○ 자치단체지 방공무원여 비 조례에 의한 왕복운 임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자치단 체 지방공무원여 비조례[별표] 일 비의 5할	○ 자치단체지 방공무원여 비 조례에 의한 금액	○ 자치단체지방 공무원여비조 례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 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 른다

【 별표 제3호 서식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illegible]

제 V 장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및 소멸시효

학습목표

- 세입세출외현금의 개념 및 관리요령을 이해한다.
-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시 이자지급 방법을 살펴본다.
- 소멸시효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여 본다.

학습내용

1.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가. 개념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을 말하며, 연도 소속 구분은 출납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함

나. 종류

- 보증금 : 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 보관금 :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관하는 금전 등(채납 처분 경매대금의 미교부금 등)
- 잡종금 등 기타 : 보증금, 보관금 이외의 세입세출외현금(각종성금, 위문금, 재해의연금, 기여금 등)

다. 보관 및 귀속

- 출납관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보관 : 금융기관에 예치보관이 원칙
- 귀속 : 반환기간 경과한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에 귀속 조치
- ※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 5년(공법상 원인에 기한 것)

라. 수납 및 반환

- 수납 : 납부의뢰→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발부(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금고에 납부(납부자)→영수증 교부 및 납입통지서 송부(금고)→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정리
- 반환 : 반환요구→요구서 심사 및 지급명령(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지급·계좌송금(금고)→지급필 통보(금고)

마. 이자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자지급(재무회계규칙 제85조)
- 지급대상
 - 차액·계약·하자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 지급기준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 예 탁	만 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 당해 지방자치단체 취급점(금고)의 정기예금 중 최고 이자율	
별단예금 예 탁	만 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 출외현금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 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 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 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 이자 미지급	

2. 소멸시효

가. 의 의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완료 되었을 때, 지금까지 평온하게 계속되어 온 사실 상태 그 자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제도

나. 채권소멸시효

1)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 5년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채무자인 주민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상의 채권 청구절차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정권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 받을채권 : 세금,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 등
- 줄채권(채무) : 과오납세금 반환청구 등

※ 민법상 채권소멸시효 : 10년

- 사법상의 매매나 도급 기타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소멸시효 적용 : 5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공·사법상의 권리를 망라하고 공법상 채권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판례 65다 2506호(66. 9. 20)

다. 시효중단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일정사실이 생겼을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되어진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음(청구·압류·가압류·최고 등)

질의회신

공연수입금을 세입세출외로 적용할 수 있는 경비 적용여부

〈질의〉 ○○구에서 「난치병 돕기 한마음 음악회 행사」 예산을 편성, 지출하고 동 음악회를 △△사와 공동개최하여 그 수입금으로 암, 백혈병, 심장병 등으로 고생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돕기 위해 동 금액을 ○○구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일시 적립 후 연말에 치료비를 전달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 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공연수입금 등 일반적인 세입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모든 수입은 우선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고 이후에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담금, 보증금, 예치금,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토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공연수입금을 일시적으로 보관 후 연말에 난치병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치료비로 전달하기로 주최기관 간 상호 약정하였고, 공연참석자들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근거하여 자치구가 일시적으로 보관 후 난치병 어린이에게 전달하였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4호(舊)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조치 시효기간

〈질의〉 ○○구 재무회계규칙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1998년 4월에 가로수 이식하고 예치기간 2년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반환기간」 이라 함은

① 지방재정법 제69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국고예의 귀속)에 의하여 보관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한 2005년 4월 이후인지?

- ②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항의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보관기간 만료 후 10년이 경과한 2010년 4월 이후인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은 지방재정법 제166조 및 제167조(舊)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을 보충적으로 보완하는 규칙입니다.

○ 따라서 자치단체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69조(舊)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으로 하고 있는 바

- 위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별도의 시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므로 ①과 같이 2005년 4월 이후에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Tip

질의회신

- 관할 학교급식실공사 계약을 하면서 하자보증금(현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당시(1996년)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세외통장에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하자기간과 보관(5년)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지나 ○ ○ 시교육청으로 세입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세입조치를 할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 ⇒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69조에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귀 기관의 경우 하자책임기간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귀 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세입조치를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등을 관계징수관에게 송부하여 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 현재,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에 의한 보관금 지급 시 출납원은 주관부서에서 반환 의뢰한 원금과 통장해지 이자("이자"임을 표기)를 즉시 송금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지급,지출은 결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자발생분에 대한 것을 세입세출외현금 수입으로 결의해서 원금과 합한 금액을 지출결의서에 표시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 예산총계주의를 따진다면 오히려 "기타이자수입"으로 처리하여 세입부서에 이자반환청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 반환 시 즉시 줄 수 있는 이자발생분을 세입처리하여(지급일자를 미리 추산하여 주관부서에서 두서금액을 맞추어 와야 함)처리하는 것은 수입계수만 늘릴 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 타 시군의 경우 이자수입을 기타잡증금으로 부기해 놓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수입처리 않고 즉시 송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지급 현황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학습정리

-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되며 공공성이 있는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 계좌를 말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반환 시에 정기예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6개월 미만 보관하는 경우 별도 예금으로 원천세, 의료보험료 등 공공성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세입세출외 현금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이를 보관 및 관리하며 보증금이나 보관금, 잡종금 이외의 현금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할 수 없음.
- 공법상 채권소멸시효는 5년으로서 민법상 장기채권 소멸시효인 10년과 차이가 있으며 시효의 기초가 되는 청구·압류·최고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때 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음

연습문제

1. 다음 중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입찰보증금 ② 하자보증금 ③ 계약보증금 ④ 근로자 임금

〈정답〉 ④ 근로자 임금은 채주인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음

2. 공공시설손실부담금을 자치단체에 1년 이상 보관하였을 경우에 이자지급 기준은?

- ① 정기예금예탁에 의한 이자지급
 ② 별도예금예탁에 의한 이자지급
 ③ 공공예금예탁에 의한 이자지급

④ 시중금리에 의한 이자지급

〈정답〉 ① 부담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예치한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3. 입찰보증금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만 6년 동안 예치하고 예치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 ① 자치단체에 귀속 ② 본인에게 환급
③ 계속하여 보관 ④ 국고에 귀속

〈정답〉 ① 지방자치단체 채권소멸 시효가 5년이므로 5년이 경과하도록 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임

용어사전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계약·입찰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이다.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다.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 함.

● 하자보수보증금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그 공사대가 최종지출 시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

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있음.

● 보증금 반환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동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 즉시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4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5조 내지 제8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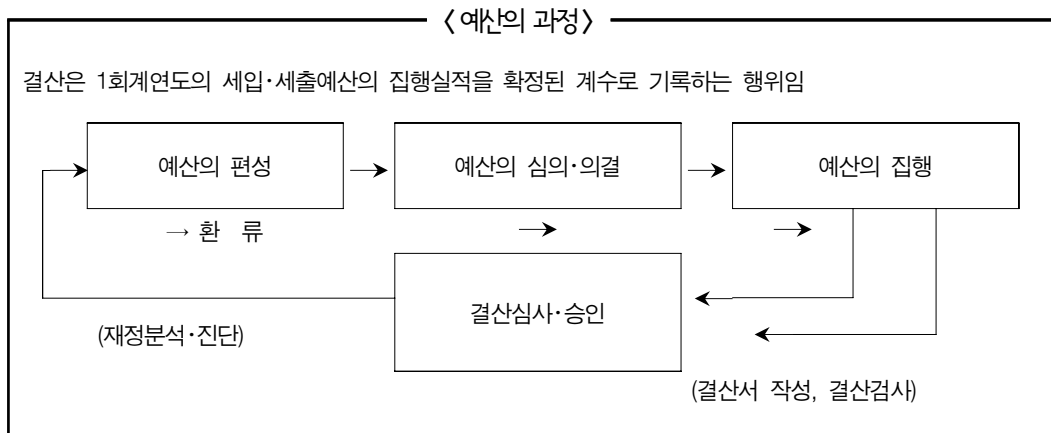
제 VI 장 결 산

학습목표

- 결산의 의의 및 결산업무처리 순기를 숙지한다.
- 결산보고서 작성요령 및 내용을 숙지한다.
- 결산업무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시차별로 이해한다.
- 결산잉여금의 처리절차 및 방법을 숙지한다.
- 결산검사 및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절차와 의미를 이해한다.

학습내용

1. 결산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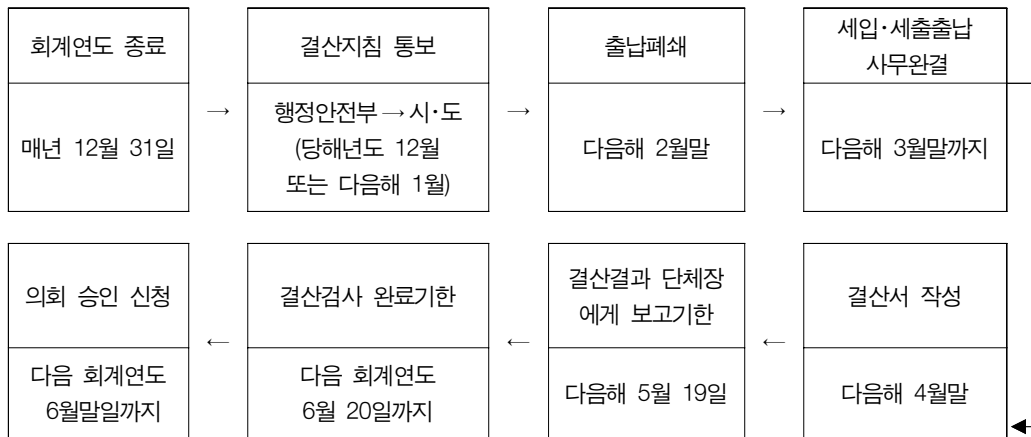


-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감독수

단인 예산의 심의·의결과 구별됨

-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함으로써
 - 당초예산과의 차이,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결산업무 처리 순기



-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의 책임을 해제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음(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하는 것으로서 특정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님)
- 결산서는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수단으로 활용됨

2. 결산보고서

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 세입·세출실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소관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함
- 결산서의 작성

- 결산총괄설명서
- 세입결산
 -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미수납액(결손처분 + 다음년도 이월액)
- 세출결산
 -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조서
- 계속비 집행
- 예비비 지출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채무부담행위
- 수입대체경비

나. 기금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하는 기금은 현금회계방식으로 결산함

다. 채권현재액보고서

소관별·회계별로 채권의 종류, 현재액을 사유별로 그 증감내역을 파악하여 계산함

라. 채무결산보고서

지방채·차입금·해외차관·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의 증감내역과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기타채무 및 세입세출외현금을 파악하여 작성함

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을 용도별, 종류별로 계산함

바.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을 품종별로 계산함

※ 결산서 부속서류

- 결산수지상황 총괄
-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 전년도 결산대비표
- 자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전년대비)
- 세입금 불납결손사유별 현황
-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 세출결산 불용액현황
- 보조금 집행현황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 보증채무 현재액

3. 결산의 준비

가. 출납사무의 폐쇄

- 예산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기 때문에 출납사무의 완결을 전제로 작성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로 폐쇄함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정리를 위하여 3월 10일까지 출납정리기한을 두고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출납정리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내에 완결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조, 출납사무의 완결)
 - ※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을 폐쇄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액 및 세계잉여금이 확정됨

나. 출납사무 완결을 위한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수입과 지출의 발생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2개 연도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어느 회계연도에 소속 시키느냐가 문제됨
- 회계연도 소속 구분 기준
 - 실질주의 : 세입·세출의 원인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
 - 형식주의 : 현실적으로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질주의를 채택, 출납정리기한을 경과한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형식주의를 인정함

1)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

-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임. 다만, 그 납기 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 수입이 속하는 연도임
-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다만, 지방채 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임
- 수시수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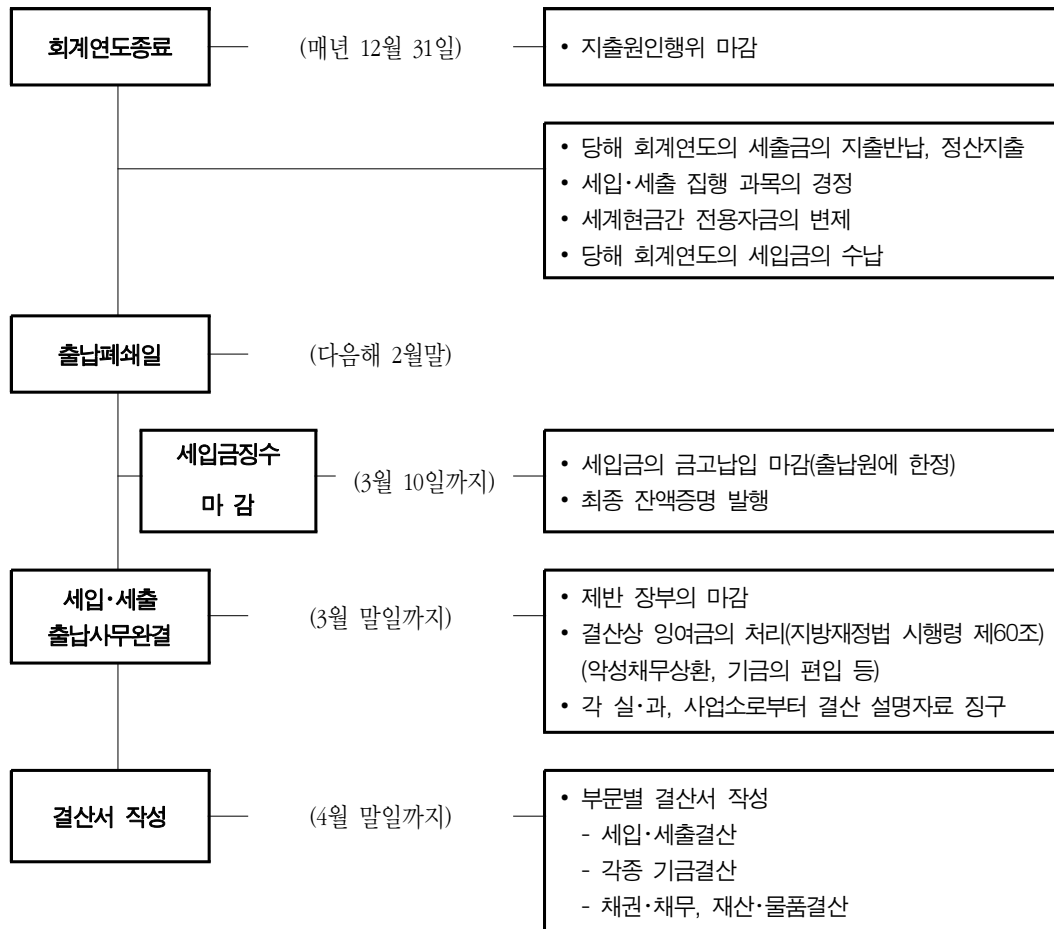
2)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

- 지방채의 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임
- 모든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기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임
-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임
- 사용료·보관료·전기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임
- 공사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다만,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 기타 사항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4. 출납사무의 완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4조)
-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조)

[처리과정]



※ 재무회계결산(재무보고서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4월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5. 결산잉여금의 처리

가. 잉여금의 의미

- 세계잉여금이란 1회계연도 중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뺀 잔액을 말함
- 잉여금은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경우와 예산을 미집행한 불용액에 의하여 발생됨
-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함(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임)

나. 잉여금의 처리

- 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집행잔액, 익년도이월금(명시·사고·계속비)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함
- 이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음

- 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순세계잉여금 = 잉여금 - (이월금 + 국고보조금집행잔액)

6. 결산검사

〔처리과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회계담당과장은 5월 19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2항)

나. 감사위원의 선임 및 결산검사 사항

- 감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함
 - 시·도 : 5인 이상 10인 이하
 - 시·군 및 자치구 : 3인 이상 5인 이하
 - ※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면 대표위원과 감사일정을 협의하여 수검장소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 세입·세출의 결산
-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 감사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및 금고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 세입·세출 관련 회계부책
 - 결산내용의 기초가 되는 서류 및 그 설명서 등

결산검사의 범위

- ① 결산결과 계산의 과오 여부
- ②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 ③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료요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함

- 감사위원의 검사기간은 20일간으로 함
- 감사위원(대표감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사위원의 심사결과 결산서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7.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가. 승인신청

- 승인대상 : 세입세출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 등 결산서 6종
- 지방의회 제출 :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나. 승인의 효과

- 승인의 효과는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사항에 대한 회계적·법적 책임은 별개의 것임
- 불승인 시에도 이미 집행한 수입·지출은 유효하고, 당해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정치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음

8. 보고 및 고시

- 지방의회 승인 후 5일 이내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9. 결산결과의 공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60조)

학습정리

- 결산이란 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기록하는 행위를 말함
-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결산서 부속서류 등으로 구분되며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는 총괄 설명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계속비 집행, 예비비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출납사무의 폐쇄기한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이며 결산 시에는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 결산서는 다음연도 5월 19일까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함
-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시도는 5인이상 10인이하 시군구는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되 지방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며 특정사항에 대한 법적·회계적 책임은 별개임

연습문제

1. 결산보고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세입·세출결산보고서 ② 기금결산보고서
- ③ 채권현재액보고서 ④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정답〉 ④ 예산집행상황보고서는 예산의 현재 집행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1년간 집행결과인 결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2. 다음 중 결산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출납사무의 폐쇄
- ② 출납사무완결을 위한 회계연도 소속 구분
- ③ 결산잉여금
- ④ 출납상황보고

〈정답〉 ④ 출납상황은 현재상태의 예산 집행상황을 보는 것으로 결산과는 무관함

3. 결산검사 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다음 연도(5. 19까지)
- ② 감사위원의 결산검사(20일 간)
- ③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 ④ 상급기관의 결산승인(다음 연도 6월 20일까지)

〈정답〉 ④ 결산은 지방의회 승인으로 종료되며 상급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8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61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결산작성기준」

제Ⅷ장 회계장부 관리 및 계산증명

학습목표

- 회계장부의 종류 및 보존방법을 이해한다.
- 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이해한다.
- 회계문서의 표기, 정정, 날인절차 등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1. 회계장부

가. 장부의 비치 정리 (지방재정법 제96조, 재무회계규칙 제8장)

- 징수관 : 징수부, 징수총괄부, 과오납금정리부
- 채권관리관 : 총괄채권관리부(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부(채권관리관)
- 채무관리관 : 시·도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 수입금출납원 : 현금출납부
- 경리관 : 지출원인행위부
- 지출원 : 지출부, 일상경비정리부, 지급명령발행부
- 일상경비출납원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유가증권수급부
- 분임자 :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함

- 보조부의 비치 : 위 항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음

나. 장부조제, 보존 (재무회계규칙 제150조)

-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조제하여야 함. 다만, 기재 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
- 지정정보 처리장치 (e-호조)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하여 관리할 수 있음

다. 장부기재상의 주의 (재무회계규칙 제149조)

-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
- 각 계좌의 색인을 붙임
-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함
- 매월 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
-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기재
-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임
-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

2. 계산증명

가. 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계산증명규칙 제3조)

증명책임자는 증명기간마다 계산서를 작성한 후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그 증명기간이 지난 뒤 15일 안에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25일 안에 제출해야 함.

나. 두서금액의 표시 (재무회계규칙 제124조)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금액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 불가

다. 금액, 수량 등의 정정 (재무회계규칙 제125조)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라. 회계문서의 날인 (재무회계규칙 제128조)

-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다만, 강의, 감시 또는 회의참석의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마. 증빙서류 원본주의 (재무회계규칙 제126조)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을 첨부

바. 회계서류 편철 (재무회계규칙 제126조)

-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의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해야 함

제 VIII 장 공유재산 관리

학습목표

- 공유재산의 개념, 범위, 종류, 관리체계를 알아본다.
-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사용관리, 처분관리에 관하여 알아본다.

학습내용

1. 공유재산의 일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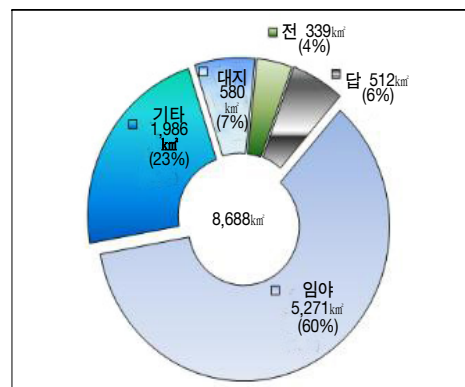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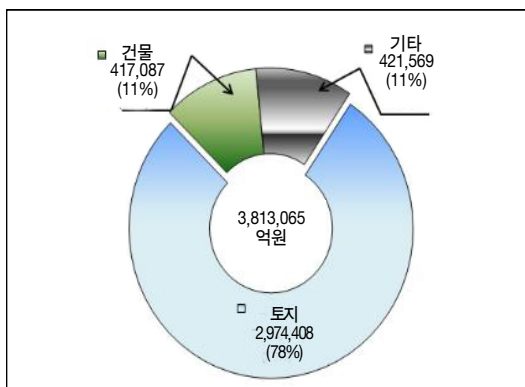
가. 공유재산의 개념

1) 공유재산의 정의

-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

2) 총 규모 : 8,688km², 381조 3,065억원

- 공유지 면적은 전 국토면적(100,210km²)의 8.67%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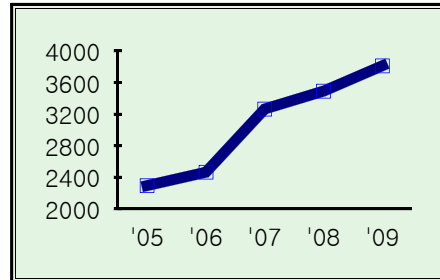


※ '09년도 공유지 면적은 16,554km²로 전 국토면적의 16.52%를 차지

○ 연도별 증감 추이

(기준 : 천억)

구분	'05	'06	'07	'08	'09	연평균 증감률
가액	2,293	2,463	3,264	3,492	3,813	13.55% 증가



3) 용도별

○ 행정재산 : 344조 2,410억원(9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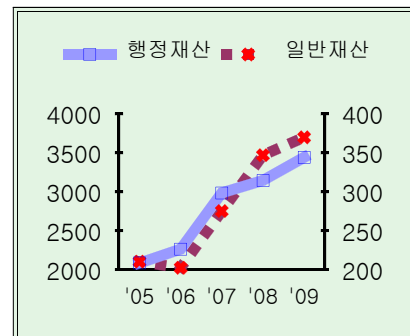
○ 일반재산 : 37조 655억원(9.72%)

※ 보존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08.12.26 시행)으로 '09년부터 행정재산에 포함하여 계상

○ 연도별 증감 추이

(기준 : 천억)

구분	'05	'06	'07	'08	'09	연평균 증감률
합계	2,292	2,463	3,260	3,492	3,812	13.56
행정 재산	2,082	2,261	2,985	3,145	3,442	13.39
일반 재산	210	202	275	347	370	15.21



4) 공유재산의 성질

○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 기능

- 국민과 주민의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의 활용수단

-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수익재로서 역할
 - 세외수입의 확대 등 재원조달의 수단

나. 공유재산의 범위

1) 부동산과 그 중물

※ 중물 : 건물의 냉·난방시설(보일러 포함), 엘리베이터시설, 전기·통신시설, 주택에 있어서의 우물, 농장의 부속시설 등

2) 선박·항공기, 기관차 등 중요 기계와 기구

3) 지상권·특허권·주식,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등

다. 공유재산의 종류

1) 구 분

종 류	공 유 재 산
•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도서관, 각종 회관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상·하수도, 지하철 등)
보존용재산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등)
• 일반재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2)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유물중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큰 재산

- 공용·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출자, 사권설정, 신탁이 불가한 재산
-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

3) 일반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님
- 필요에 따라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 변제하거나 사권을 설정
-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재산
- 구 분
 - 「수익재산」으로서 활용되는 것 : 대부·매각 등
 - 「준행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것 : 출자재산과 준공용재산 등
 - * 준공용재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재산
- 시효취득의 대상이 됨

라. 관리체제

1) 총괄재산관리관

-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당해 자치단체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받은 공무원(회계관계공무원)

2) 재산관리관 : 재산의 종류별·소관별로 지정하여 관리

3) 분임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 또는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

마. 관리계획

- 1) 익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집행권을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
- 2) 예산편성의 준칙으로서 강행성과 구속력
- 3) 관리계획 수립대상

구 분	취 득	처 분	비 고
서울시·경기도	20억원 또는 6천㎡이상	20억원 또는 5천㎡이상	
기타 시·도	“	10억원 또는 5천㎡이상	
시·군·자치구	10억원 또는 1천㎡이상	10억원 또는 2천㎡이상	

※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 건물·기타 재산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기준
(신축공사시는 설계·감리비 등을 포함한 건축비·시설비를 기준함)

4) 관리계획 중 제외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한 무상귀속, 수용, 매각 등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2.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가. 재산의 매입

- 1) 사법상 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후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취득형태
- 2)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할 수 없으며 공유지분으로 된 재산과 사유지로 둘러싸인 맹지, 도시계획 등 공법상 토지이용이 제한된 토지 등은 재산의 가치하락과 토지이용의 제한이 있어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나. 건물의 신·증축 등에 의한 취득

- 1)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사를 신·증축하거나 공작물의 신설, 증설 또는 입목의 식재 등에 의한 재산의 취득형태
- 2) 예산의 투입이 있으나 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기관일 경우

다. 기부채납

1) 개 요

- 사유재산을 기부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채납하는 행위로 민법 제 55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와 유사
- 지방재정법상의 공유재산은 매각, 교환, 양여, 무상귀속, 출자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처분할 수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인에게는 기부가 불가
- 기부채납이 되는 대상은 물건상태에서 공유재산에 편입이 가능한 재산으로 재산의 증가가 있어야 함
 - 따라서 건물 등의 보수·유지관리, 토지의 형질변경, 가공비, 공사비 등을 포함할지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

2)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부터 물건의 기부 의사에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 됨
 - ※ 기부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준공과 동시에 하여야 함
 - 시설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민원이 야기되거나 사권이 설정된 재산
 -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사용이 곤란한 경우

-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무상사용하기 위한 재산
-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인에게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없음.
- 기부채납한 재산은 어떠한 이유로도 기부자에게 반환이 불가
 - 무상사용수익허가 이외에는 어떤 조건도 수반되지 않은 기부이기 때문임

3) 기부채납의 종류

-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 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민자유치 수단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 기부재산을 평가하여 그 가액만큼 무상사용이 가능
- 자치단체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거나 또는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하는 경우
 - 무상사용 불가

라. 교환에 의한 취득

1) 개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 상호간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취득
- 해당 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의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

2) 조 건

- 행정재산을 교환하고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 일반재산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 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
-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유사한 것이어야 함(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 제외)
 -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주된 재산의 종류가 같은 경우

3.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1) 개 념

-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 최고 3년
- 대부계약 : 일반재산
 - 토지와 그 정착물은 최고 5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일부 20년, 50년 허용)
 - 기타의 물건은 1년

2) 수익계약 대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행정), 제29조(일반)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 행정재산은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 일반재산은 재산평가액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등
 - ※ 다만,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함

3) 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 면제의 범위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한정, 수도·전기 등 관리비용 제외

4) 대상 재산가액의 평가

- 토지의 경우 :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필요시 감정평가액)
- 토지 외의 재산의 경우 :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
 - ※ 건물의 경우 :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동안 1회의 감정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출 가능

5) 사용료의 산출

- 연간 사용료 : 시가 원칙(재산평가액 × 사용료율)
 - 사용료율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경쟁입찰시 사용료
 - 최초년도 : 최고입찰가

- 2차년도 이후(수의방법으로 허가 갱신한 경우 포함) :

$$\text{당해년도의 재산가액} \times \frac{\text{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text{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나. 허가 또는 계약의 갱신

1) 적용범위

당초 사용·수익허가한 기간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2) 갱신기간 : 행정재산 1회 2년 이내, 일반재산 1회 5년 이내

3) 갱신의 요건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만료일 전에 입찰공고하여 새로운 사용자를 결정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그러나, 천재지변 또는 재산관리청의 귀책사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기간 갱신을 신청받아 기간 갱신은 할 수 있음

다. 관리위탁

1) 개념

행정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업무로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하는 업무 형태

2) 위탁의 대상

- 행정재산에 한정(일반재산의 위탁관리와 별개의 사안임)

- 위탁재산 내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포함된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3) 위탁의 개념

- 위탁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에게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를 수탁자의 명의로 책임 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됨
 -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분야로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적용
 - 예) 체육·문화 관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 용역(아웃소싱)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충당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
 - 예)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청사관리
- 사용수익허가 : 민간부문의 임대개념

4) 유의사항

- '06.1.1 이후 위탁계약 체결 분부터 위탁비용과 사용료의 상계처리가 가능
- 시설활성화로 인해 위탁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한 수입증대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 사용료 징수 및 위탁보조금 상계범위, 초과이익금 분배방법 등 제반 사항은 계약전에 안(案)을 수립하여 입찰을 통해 확정
 - ※ 위탁에 대한 수의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

라. 영구시설물의 축조

1) 업무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국가·다른 자치단체·사인)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코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할 때 영구시설물의 축조허용 관련 업무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

3)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 범위(령 제9조)

①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독지가인 사인(私人)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납의사를 결정하여 기부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때에 발생
- 따라서 이 때 기부는 조건이 없는 기부이기 때문에 건물 등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인 바, 기부채납 재산은 향후 기부자가 무상사용도 불가하고 아무런 연고권이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기부자가 기부한 재산을 무상사용 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결정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행정재산 용도에 필요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평정가격 범위 내에서 당해 기부채납재산을 무상사

용·수익허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이 가능

③ 자진철거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단기간 사용과 자진철거를 전제로 토지사용승락이 가능함
 - 이 경우 단기간 사용은 사용·대부를 받은 후 당해 재산의 사용·대부 기간 내(갱신기간 포함)이어야 하며, 사용·대부시 철거이행을 확약하여야 하며, 자진철거 불이행시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비를 예치하여야 함
- 특히, 자진철거 조건인 점을 고려할 때, 건물 등과 같이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해체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 시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축조는 곤란함
- 또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자 명의로 권리보전을 하거나 재산권의 양도 등 권리행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기부 또는 원상회복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코자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때는 토지상에 공장등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이행토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물 등기부상에 특약을 하거나 공증 등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을 50년 이내 대부할 수 있고 기간 갱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기간이 종료되거나 대부기간 중 철수를 하는 경우는 기부 또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할 것임

- ⑤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종업원이 3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축조하는 경우
- 수도권 내(서울·인천·경기)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코자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하여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자치단체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등을 축조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함
 - 따라서 수의계약대부를 할 때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하여야 할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대부기간 만료 시는 당해 시설물을 매입해야한다는 조건을 대부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건물등기부상에 특약 또는 공증 등)를 확보하여야 함
 -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0호,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축조가 가능함
- ⑥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시설을 대체시설 하고자 축조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와 같이 각 개별 법률에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조문을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대부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토록 되어 있음
 - 이 규정의 의미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시설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체시설을 하는 동안은 기존의 공공시설에 건물 등을 신축할 수밖에 없는 바, 이때는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규정을 많

이 두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대체시설 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을 것임

- 대표적인 예시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등이 있음. 참고로 이 규정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개별 법률에서 공공시설의 범위(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 규정상의 공공시설)를 정하고 있는 바, 당해 공공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임

⑦ 매각·양여·교환계약 체결에 의하여 필요에 의거 축조하는 경우

-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허가)와 공유재산을 처분(매각·양여·교환)하고 그 처분에 의한 사용, 즉, 매매대금 등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을 하기 전 단계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코자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할 때 적용하는 조항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장치(은행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가 마련되면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조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을 할 때는 채무불이행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채무이행을 하도록 안전장치가 필수적 전제조건이라 할 것임

⑧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외의 법률에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등 각종 법률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할 수 있음
- 다만, 토지사용승낙을 할 때는 사실상 토지의 재산권이 상실되어 다른

목적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때는 공익적 이익이 커야 하며 대부 종료시 기부·원상복구·매입조건 등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권리가 행사되기 때문에 특별한 공부상 관리와 별도의 특약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 교육청 소유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먼저 부지 소유자인 당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야 하며,
 - 이 경우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시설 설치에 한정되므로 주차장 등 단독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양여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불가하다 할 것임
- 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경우

- 시·도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차원에서 시·군·구 소유의 부지에 공공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권자인 시·군·구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권자인 시·군·구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공용 건축물(청사, 관사, 예술회관, 시·도립학교·박물관·도서관 등)이 아닌 공공용 시설물(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 전용 노외 주차장, 주차빌딩 등) 등의 영구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에 유의

4) 유의사항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
- 공유재산을 매각·양여·교환할 때에는 대금완납 전에 실무적으로 채무 이행 확보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국·공유지상에 지상·지하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 행위를 하게 되면 토지와 시설물 등의 소유권이 분리됨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그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당해 재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의 하락을 유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음
 - ⇒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지내에 일정한 건축행위나 공작물 설치행위를 금지 또는 최소화 하여야 함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가. 매각기준

1)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28조,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7조, 제38조

2) 매각요건

-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양여·매실·교환 등을 하는 때
-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 기타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때

3) 매각기준

- 법률에 의한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으로만 매각할 수 있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은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로서 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인·허가 등을 받고 그 사업부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소유의 재산을 법령에 정한 비율 이상 취득한 자가 매수 신청한 재산을 포함함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대부하여 직접 경작중인 자에게 5년 이상 사용·대부받아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20,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하는 경우
- 법률에 의한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하거나 보존관리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해서는 안 됨

○ 공공목적의 매각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요 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 육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제한된 면적
-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 매각하는 경우. 다만,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무상귀속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은 주택사업자가 아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사업자(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업이므로, 주택건립 부지면적에 포함하여 계상하지 아니함

※ 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공유지상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유면적은 국·공유지 면적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 주거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1,400㎡이하의 범위에서 공장근로자에게 보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의 추

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다만,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환매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

- 시 이외의 지역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취락 예정지 중 공유지의 면적이 그 예정지역 내의 택지 면적의 50%미만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지변 또는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 내의 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 기타 법원에 의하여 매각을 하도록 판결된 재산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직접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우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 다음 어느 하나의 토지(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포함)로서 재산의 위치와 규모·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 등을 통해 매각할 수 있음

- ①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1,000㎡이하, 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1,500㎡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3,0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결정하여야 함
- ②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 ③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 ④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 ⑤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⑥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1,000㎡를 한도로 함
-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500㎡,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3,000㎡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 ①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하며,

- ② 위 내용은 분할매각시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 ③ 위항에 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서울특별시·광역시·시의 동 지역은 300㎡, 시의 동 지역은 500㎡, 기타 읍·면 지역은 1,000㎡ 이내로 한정
-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위 나)의 1,500㎡ 또는 3,000㎡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②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음

※ 일단(一團)의 토지 :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하여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일련(一連) 일반재산 토지.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지분 토지는 제외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 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경쟁입찰·지명경쟁·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음
 - 사인 토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나 공유지 위에 설치된 건물 중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
 - 토지·건물 이외의 재산으로서 용도폐지된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입한 후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나머지 재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제 규정에 따른 환매대상 여부 검토 필)

○ 매각제한

- 위에서 열거한 매각기준에 부합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음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 상 필요한 재산으로 그 사용수익을 신청한 경우
 -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상 필요한 경우
 - 상수원 관리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및 4대강(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매각재산에 대한 심사 철저

-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각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제출된 재산처분계획을 일괄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수립·통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명시된 처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조치

나. 재산의 교환

1) 의 의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간에 또는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에 쌍방 합의에 의하여 교환하는 사법상의 계약

2) 법적요건

- 해당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가능, 교환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하여 교환이 성립되는 것이 아님

※ 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경우 손실보상 원칙(교환 불가)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상호가격 3/4 이상일 경우)
- 교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 유사한 재산(예 : 부지와 부지, 건물과 건물간)이어야만 교환이 가능함.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공유재산과 교환 시는 예외)

3) 교환의 제한

-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케하는 경우 또는 장래에 도로, 항만, 공항등 공공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의 필요가 있는 재산은 교환 불가
-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교환으로 취득 불가

-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을 해제하지 않고는 교환취득이 불가
- 4) 교환가격의 평가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
 - 교환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시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

다. 재산의 양여

1) 의 의

-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국·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민법 제55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 양여는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양여의 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특약을 하는 등 특수성이 있음. 또한 양여 자체가 금전적 보조와 같은 효과를 가짐.

2) 양여의 요건

- 행정재산의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당해 행정목적, 용도 등의 성질 등을 그대로 유지하며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 ※ 국가기관 또는 시·도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적과 용도가

다른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서의 양여 불가

○ 일반재산의 경우

- 광역자치단체가 그 구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시·도에서는 시·군·구로 양여할 수 있으나, 시·군·구에서 시·도로, 시·도, 시·군·구에서 국가로의 양여 곤란

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1)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각 사업별 근거법령 확인 필요

2) 정의

-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 개별법률에 의거 인·허가 처분 시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에 기능이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는 것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말함. 다만, 개별법에서 공공시설의 정의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함
 -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단체 등이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하천·제방 등과 같이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함
 - 공공청사, 아파트, 대학교 등 부지 내 도로, 구거 등은 당해 시설의 기

능유지에만 사용되는 단지 내 개별 시설에 불과하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에 유의

3) 범위 및 대상

- 기능이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설치비용 등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무상양도가 가능함
 - 기존의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같은 종류가 아니라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 가능
- 용도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므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처리
- 무상귀속·양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6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65조·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08.9.25 개정) 등에 따라 처리하되,
-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시 먼저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양도 면적 등을 결정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을 산정
 - ※ 공공시설을 무상 양도한 경우 그 면적만큼 건폐율·용적률 등의 상향 조정시 빼고 산정해야 함

4) 유의사항

- 공공시설이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즉시 또는 가급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용도폐지와 지적공부상 지목을 정리하여 무상양도 대상으로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기존의 공공시설 인정시점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실시계획 인·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특별법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업의 인가권자는 사업인가 전에 미리 무상귀속에 관하여 재산 관리청(재산 관리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등)
 - 따라서, 재산 관리청(재산 관리부서)의 의견조회·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귀속부분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당해 재산의 관리청(관리부서)에 의견조회·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1 사용료 요율

질의요지

-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완공된 화물터미널을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 요율을 공공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화물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의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점, 그 용도가 물류산업의 원활한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터미널의 운영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의 용도는 공공용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이용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1551('10. 3.17)호

2 사용·수익허가 전대

질의요지

1. 지방공기업과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한 현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의 지위가 동일한 지 여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데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동일한 지위로 임대 계약청구권이 있는 지
3. 「민법」에서 시간적으로 우선의 원칙 및 직접 계약 관계의 준용 등 지방공기업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에게 우선 계약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지방공기업이 임차인과 전차인이 계약을 신청할 경우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정당한 지
4. 사유재산권인 임차권을 보호하여 주는 것이 사유재산제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 지

질의회신내용

- 지방공기업이 수탁관리 중인 지하도상가는 도로법상 도로의 일부로 이는 행정재산에 해당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토록 하는 전대는 금지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지방공기업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임차인과 전차인이 동일한 지위인 지는 의미가 없음
- 한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항단서 제1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 수의계약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수익

을 허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가의 경우 다수의 수요가 예상될 수 있는 재산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입찰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2524('10. 5. 3)호

3 건물 사용료 산정방법

질의요지

- 고층 건물의 대부료 산출 방법

질의회신내용

- 건물의 대부료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되, 건물과 부지의 평가액은 건물과 부지 모두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며, 그 산식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즉, 건물의 일부 대부에 따른 면적은 부지와 건물 모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구하여야 하며,
- 건물은 해당 전용 및 공용면적을, 부지의 전용면적은 건물면적 즉 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부지 공용면적은 전체 부지에서 건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공용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건물의 경우 조례로 정하고 있는 층별 대부료가 달리 산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CRM 질의응답 - 접수번호 H168132('10. 2. 1)호

4 공유재산 대부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질의요지

- 대부를 받은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근거하여 갱신 요구가 가능한 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특별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법이 적용되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CRM 질의응답 - 접수번호 H168223('10. 2. 3)호

5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이용료

질의요지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이용료의 정의
2. 관리위탁할 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대가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지

질의회신내용

1.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9조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의 이용료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시 재산에 대한 사용대가로 징수할 수 있는 수익인 사용료(사용·수익허가)와 수수료(입장료, 대관료)를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이용료 중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제정한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나, 시설의 이용에 따른 입장료 등 사용료는 관리위탁을 실시하는 행정재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다면 귀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행정재산의 용도와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가 사용수익허가자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의 범위(예, 구내식당의 메뉴, 단가 등)에 속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곤란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CRM 질의응답 - 접수번호 H176036('10. 4. 26)호

6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시 전대방법

질의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전대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질의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면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위탁계약서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자치단체가 심사토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전대사업 계획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므로 전대 시 업종, 전대자 선정방법,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충당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전대 가능 업종은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특성, 전대자 선정방법 및 사용료의 예정가격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탁자가 전대자를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전대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자치단체와 수탁자가 사전에 계약으로 정하는 이용료와 경비의 차액에 대한 충당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CRM 질의응답 - 접수번호 H177942('10. 5. 13)호

7 전세권

질의요지

1.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한 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하거나 자체예산으로 민간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무상임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제외)에 사무실을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303①)”고 규정하고 있어 전세권을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용익물권으로 분류
 - 사유재산을 임차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¹⁾에 의한 용익물권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함
 - ※ 전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고, 민법 제618조에 규정에 의한 채권적 성격의 보증금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유재산을 임차하여 민간에게 재대부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전차인 선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쟁입찰로 하고, 대부로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해 시가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사유재산의 임대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재임대하는 것은 건전 지방재정 운영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8(‘09. 1. 2)호

1) 전세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개정(‘10.2.4. 공포, 8. 5시행)으로 공유재산에 해당함에 유의

8 지방자치단체 범위

질의요지

- 도 교육감 소유 재산을 00사에서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는 “제주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4조제1항에서는 제주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잡종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귀 교육청에서 서귀포시에 무상으로 대부할지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2421('08. 11. 17)호

9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질의요지

- ○○○○시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국가의 철도시설 관리 대행기관”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다른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 하다 할 것임
- 본 사안의 공단은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한 사용료 면제는 불가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3274(2008.12.30)호

10 사용료 조정

질의요지

- ○○개발(주)로부터 제기된 ○○○공원 내의 놀이동산인 ‘○○랜드’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요율 1,000분의 50적용이 위법하다는 소송에서, ○○○공원 관리사업소와 ○○시가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1. 대법원 2007두6762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결('08.10.23)로 다른 도시공원 시설(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도 공공용 요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04년과 '05년도 ○○랜드 사용료에 대한 재부과처분시 사용요율 적용 범위

질의회신내용

1.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시의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그 처분에 대하여 취소한 것으로 당해 처분에만 효력이 있을 것임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임대료 산정은 인근 유사 물건의 시중 임대료(시가)로 산정하되 그 재산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요율의 결정은 관련법령과 조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00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3125(2008.12.20)호

11 공유재산 변상금

질의요지

- 당초 ○○청에서 국가업무로 수행해 오던 철도운영부분은 ○○○○공사가 수행하고, 철도관리부분은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 (2005. 1. 1 부터)하고 있음
- 공유지(잡종재산) 상에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도시설물(선로건조물, 궤도구축물, 철도차량수리용 건물 등)이 점유되어 있고, 대부계약체결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구청 위임)에서 ○○공단에 변상금을 부과 하였으나 유사한 판결 사례 등에 의거 점유자가 부과·취소 신청을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계약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의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임
- 그 재산의 사용·대부료의 면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해 재산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하였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 의거한 변상금 부과 대상임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3275(2008.12.29)호

12 공유재산 변상금

질의요지

- 기부채납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유소를 기부자에게 10년 간 무상 사용·수익허가 하였으며,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무상 사용허가 기간 연장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에서 승소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현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서, 무상 사용·수익허가 만료일 이후 현재까지 점·사용중인 시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과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당한 이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대부 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동법 제81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 할 것임
- 또한, 명도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시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부과지 및 징수유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1940(2008.10.23)호

13 공유재산 기부채납

질의요지

- 주택 신축 허가시 새로 설치되는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이 공유지분인 경우 그 중 일부만 기부채납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서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소유권자로서 공유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 및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인·허가, 특허 등) 행위로 인한 제한 등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에 제한이 된다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2906(2008.12.12)호

14 공유재산 처분시 가격결정

질의요지

- 공유재산의 매각금액 산정에서 시유지 감정평가 금액과 인근 사유지의 실거래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사유지 평균 실거래신고가액을 참고로 한 적정 가격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에서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유재산의 처분 시 가격결정은 동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가는 실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 바, 본 사안에서 가격결정 시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실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2704(2008.12.2)호

15 공유재산 처분시 매각방법

질의요지

- 00시 소유 토지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지정정보처리 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터미널”부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한 후 통과된 자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제한을 두는 것과 관련하여
- 1. 본 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2호에 따른 지명경쟁 또는 경쟁입찰로 볼 수 있는 지
- 2. 질의 1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서는 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 00지구 여객터미널 부지 매각시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등 적격심사를 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적격심사(Pre-Qualific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또한, 동법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2703(2008.12.2)호

16 지상권 설정 재산 취득

질의요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00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에서 공공시설로 반영(공공용지, 녹지, 유수지)된 부지를 국방부가 국방상 이유로 화단형 방벽형 진지를 설치하고 해당토지에 지상권 설정 요구와 관련하여
-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소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공공시설에 국가가 필요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의 사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서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용·공공용 등에 사용되는 행정재산의 온전한 소유·관리권 행사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권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국방상 화단형 방벽형 진지를 설치하고 사권설정을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지방자치단체가 사권설정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취득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2714(2008.12.2)호

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질의요지

- ○○시에서 거림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청 소관 재산인 폐교가 동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거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처분금액과 토지면적에 상관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거림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인 농촌체험관 건립에 폐교가 포함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면 동조 제7조제2항제4호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배제된다 할 것임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412(2009.1.22)호

18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질의요지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후단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해석은?
2.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가 아닌 단순 시설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3. ○○산 문화광장조성사업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었으며, 현재 토지매입비 60억원을 확보하고 90% 정도 토지매입 하였으며,
 - 현재 매입한 부지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건물 신축 계획은 없고, 단순 광장을 조성(산책로, 자전거도로개설, 잔디광장, 주차장 등)하고자 '09년도에도 공사비로 60억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 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인지 여부?
4. 위 질의 3과 관련하여 만약 상기 장소에 건물과 공작물 설치시 공사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대상인지

질의회신내용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의 '건축비'는 건축·토목·기계·조경·통신 등 총공사비를,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토지매입비(401-03)를 제외한 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의미함
2. 토지의 취득과 연계하여 당초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 부지의 형질을 변경시키는 토목·조경공사 등이라면 당초 취득의 목적이 변경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됨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08.9.5 시행)」에서도 전년도 의회 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

- 의결을 득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시설물의 취득·처분 및 당초 관리계획에서 사용용도 등 대상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에서 ‘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입한 부지에 산책로, 자전거 도로 개설, 주차장 등 광장 조성비용으로 60억원을 확보하는 경우라면 당초 기준가격에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 대상이라 할 것임
4.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5억원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그 동안 물가 및 부동산 가격 등의 상승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동 기준가격을 10억원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개정·시행, ‘08.12.31)한 바 있으며,
- 부칙 제2조에서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토지의 취득과 연계하여 건물과 공작물 설치 공사비가 10억원 미만이라면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상기 질의내용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과 공작물, 동부지의 형질을 변경시키는 토목·조경공사 등이 포함되는 등 당초 취득의 목적이 변경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1037(2009.2.20)호

19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질의요지

- 관광지 공공편익시설 지구 내에 조성된 진입 교량 및 도로를 관광지 구역 밖 토지의 개별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수익허가 가능한 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서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유재산을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고, 어떤 특정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진·출입로의 용도로 사용·대부를 하거나, 본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법 등 개별법률의 인·허가 충족을 위한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2194(2008.11.6)호

20 공유재산 매입시 가격산정

질의요지

- 학교의 교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 산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공유재산의 취득 시 가격산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의 가격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으로 보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9040(2010. 8. 2)호

21 공유재산 진입로

질의요지

-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중인 토지(임야)에 진출입 통로가 없어 인접한 자치단체 소유 토지(임야) 중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지 및 공유재산인 토지 중 일부만 매수할 수 있는 지

질의회신내용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대부토록 하는 것은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 한편, 공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 재산의 활용상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5173(2010. 8. 27)호

22 공유재산 사용료

질의요지

- 공유재산인 주차빌딩(행정재산, 3층) 중 옥상(바닥 154㎡)을 울릉군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자에게 현장 가설사무실* 용도로 사용토록 할 경우 부지평가액만으로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는 지

* 주차빌딩 옥상에 대부받은 자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

질의회신내용

- 주차빌딩 옥상은 주거용 또는 사무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사안과 같이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옥상을 현장 가설사무실 용도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건축법 등 개별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지는 귀 군에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
- 건물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후 사용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나,
-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용·수익허가 대상인 옥상 자체를 건물로 보는 것은 곤란하며,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야 사무용도로 사용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 사안과 같이 옥상을 대부할 경우라면 사용료에 건물평가액을 포함하는 것은 곤란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5171(2010. 8. 26)호

23 공유재산 전세권

질의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후순위 전세권설정이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물건에 설정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산가액의 일정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는 지
2. 만약 후순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면 적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 지

질의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4호에서는 전세권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10.8.5 개정시행)되어 있으므로 사유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선순위 권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가급적 1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판단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4758(2010. 8. 11)호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질의요지

- 기초 자치단체가 소방청사 건축을 목적으로 신규로 부지를 매입하고 광역 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인 소방청사를 동 부지 위에 축조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라 가능한 것인 지 여부

질의회신내용

-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는 소방서의 설치에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시·군에서 도 사무에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부지를 취득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귀 도에서는 매입 또는 교환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4751(2010. 8. 11)호

25 공유재산 변상금

질의요지

-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공유지에 무단으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갑’과 ‘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였으나, ‘갑’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며, 현재 고물상 영업은 ‘갑’과 그 처인 ‘병’ 그리고 ‘을’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을’은 고물상 사업자등록자임
- 1. 기존에 ‘갑’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병’이나 ‘을’로 변경하여 징수할 수 있는 지
- 2. 질의 1에 의한 처리가 불가하다면 공동영업자인 ‘을’ 또는 ‘병’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사안의 경우 ‘갑’, ‘을’ 그리고 ‘병’이 공동으로 영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을’이 사업자등록자인 경우라면 ‘을’에 대하여 기존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갑’, ‘을’ 그리고 ‘병’이 공동 영업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사 대법원 판례(92누2202 판결*)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원에서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3인이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유자들의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이므로 공유자 1인에 대하여 변상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4377(2010. 7. 28)호

26 변상금 부과 대상

질의요지

-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공유지에 무단으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갑’과 ‘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였으나, ‘갑’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며, 현재 고물상 영업은 ‘갑’과 그 처인 ‘병’ 그리고 ‘을’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을’은 고물상 사업자등록자임
- 1. 기존에 ‘갑’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병’이나 ‘을’로 변경하여 징수할 수 있는 지
- 2. 질의 1에 의한 처리가 불가하다면 공동영업자인 ‘을’또는 ‘병’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지

질의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사안의 경우 ‘갑’, ‘을’ 그리고 ‘병’이 공동으로 영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을’이 사업자등록자인 경우라면 ‘을’에 대하여 기존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갑’, ‘을’ 그리고 ‘병’이 공동 영업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사 대법원 판례(92누2202 판결*)를 참고하시기 바람
- * 법원에서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3인이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유자들의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이므로 공유자 1인에 대하여 변상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질의회신일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4377(2010. 7. 28)호

제 Ⅱ 부

계 약 분 야

제 I 장 계약의 의의와 특징

1. 계약의 의의

가. 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낙찰취소처분 등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1996.12.30 누 14708)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판례 계약금액 감액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90.11.28, 사건 90-다카 3659)

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원가계산 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환수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공공복리 추구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며, 이에 따라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 계약업무담당자의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집행의 공익성·공정성·경제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계약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라. 계약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대리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경리관이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구 분	공 사		물품제조·구매, 용역		의무경비 및 조달구매 등	
	광 역	기 초	광 역	기 초	광 역	기 초
본 청	추정가격 10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추정가격 5억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금액제한 없 음	금액제한 없 음
제1관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	"

※ 지방의회(사무처)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함(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마. 계약의 법령체계

-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각종 예규, 훈령이 제정되어 전면시행 되고 있음

- 한편, 지방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우선적인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체계

- ① 법 제42조문 ②시행령 9장 137조 ③시행규칙 -87조문
- ④ 예규·고시- 예규 8개, 고시2개(국제입찰관련 개방대상 기관 및 금액)

주요내용	예규명칭	형 태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적격 심사, 사전 심사 기준 등 (7개)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매뉴얼 형태
제한입찰, 공동계약, 선금 및 대가지급,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8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매뉴얼 형태
수의계약 기준 및 적용방법	3) 수의계약 운용요령	매뉴얼 형태
계약체결시 원가계산 방식	4)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매뉴얼 형태
재해복구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5)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지침형태
공사계약 일반조건	6) 공사계약 일반조건	매뉴얼 형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7)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매뉴얼 형태
물품계약 일반조건	8) 물품계약 일반조건	매뉴얼 형태

- 국제입찰금액 범위 고시(2010.12.30.) 공사는 284억원, 용역 및 물품은 3.8억원

- 대상 : 15개 시도(울산광역시 제외)

사. 지방계약법령의 적용대상 기관

- 1) 직접 적용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제2조)

- 시·도 및 시·군·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기관·법인
- 교육행정기관(지방계약법 제3조)
 -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청
 - 초·중·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2) 준용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지방공사·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예 : 사회복지 법인)

아.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방계약법 제4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함

※ 다른 법률 예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술사법, 건축사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 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령, 물품관리 법령, 폐기물 관리 법령, 소방 법령, 전기공사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 법령, 문화재보호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정부투자기관 기본 관리 법령, 지방 공기업 법령,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 법령, 전자거래 기본 법령, 산림 법령, 장애인 복지 법령, 어항 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력기술 관리법, 민사 소송법, 공탁법, 증권 거래 법, 인지세법, 국세 징수법, 산업안전 보전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고용 보험법, 소프트웨어 산업 진 흥법, 지방자치법 등

※ 계약 관련 관련 부처·청의 고시·지침·공고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 공고 (중기청)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 (국토해양부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공정위)
- 감리업무 수행지침 (국토해양부 지침)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국토해양부 지침)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 비용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 (노동부 고시)
-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동부 고시)

질의회신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지방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동 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지방계약법령은 동 회계규정에서 준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임

2. 계약의 집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무원(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 ※ 전문기관 : 정부출자 및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함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가. 전문기관의 범위

- ❖ 계약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원가검토는 제외)
 - 정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공익 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 ❖ 원가검토만 위탁 가능한 기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 해당)
 - 국가·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따라 주문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 원가검토를 하고자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

나. 전문기관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
 -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범위에서 자치단체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
 - 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다.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해야 함

라. 계약 심사 실시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7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거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함
- 의무적 심사 대상 사업

(시·도심사)

대상 기관	심사 내용	대상 사업
• 시·도 본청 및 사업소 •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원가 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 (전문 3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군·구 심사)

대상 기관	심사 내용	대상 사업
•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 시·군·구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원가 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원 (전문 2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임의적 심사 대상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정함)

- 심사제외 대상 사업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사업이 아닌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한 경우

마. 조달청에 의뢰대상

구분	조달청 의뢰(의무)	자체 계약·전문기관위탁 가능계약
공사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공사는 없음	○ 모든공사는 지자체 자체발주 가능 ※ 탄기·대안입찰 공사도 2010부터 자율화 되었음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원가검토 의뢰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2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중 다음의 경우 -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경우 - 재해복구사업 - 기타 공사의 특수성,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계약심사 부서설치의 경우에는 자체 심사)
용역	○ 의무적 대상용역은 없음 ※ 자율의뢰는 가능	○ 모든 용역계약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 가능함
물품	- 2008년부터 완전 자율화 <u>다만 시·도지사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구매</u>	자치단체가 자체 판단

3. 계약체결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들이 종사하는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계약 체결이 금지되어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계열회사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지방계약법 제33조, 영 제93조)

※ 계약금지 대상

구 분	적 용
①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본인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입찰을 불문하고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② ①의 배우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 존·비속은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④ 본인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⑤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사실상 본인 소유재산이 자본금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
①~⑤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

※ 자료제출 요구 등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예:의회사무처)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갖추지 않은 경우
 - ※ 단,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하는 경우 예외(이 경우도 조합원은 자격 필요)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자 또는 납세번호 부여가 되지 않은 자
-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
-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

- 영업정지 중인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또는 사업행위를 일시 중지된 경우

질의회신

- 〈질의〉 당초에는 ○○○군청에서 군도확·포장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도중 지방도(道)로 승격되어 동일도로에 대하여 ○○○도청에서 다시 발주를 하는 경우 도청에서 새로운 낙찰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하는지?
-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당해 공사계약관련 예산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체결되어 이행중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 명의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4. 계약의 대행 (법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의 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음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 정산해야 함

학습정리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과 관련된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개별법에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

령을 적용 할 수 있음

- 계약과 관련된 각 부처나 청의 고시 지침 등이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들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계열회사는 그 자치단체와 수익계약을 체결 할 수 없음
- 영업정지 등 자격이 정지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한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계약을 그 지역주민들의 의뢰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음

용어사전

● 지역제한 경쟁입찰

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제도

● P.Q(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공사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1개 이상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하는 제도

● 적격심사제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낙찰자의 결정방법 중에 충분히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8조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 II 장 자치단체 계약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구분]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크게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구분된다.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은 물품·공유재산의 매각, 청사임대, 리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지방계약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은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기타의 경우 등 대가를 미리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분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중 경매에 의한 경우가 있다. 경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 이외에는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도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과 동등한 적용을 받게 된다.

○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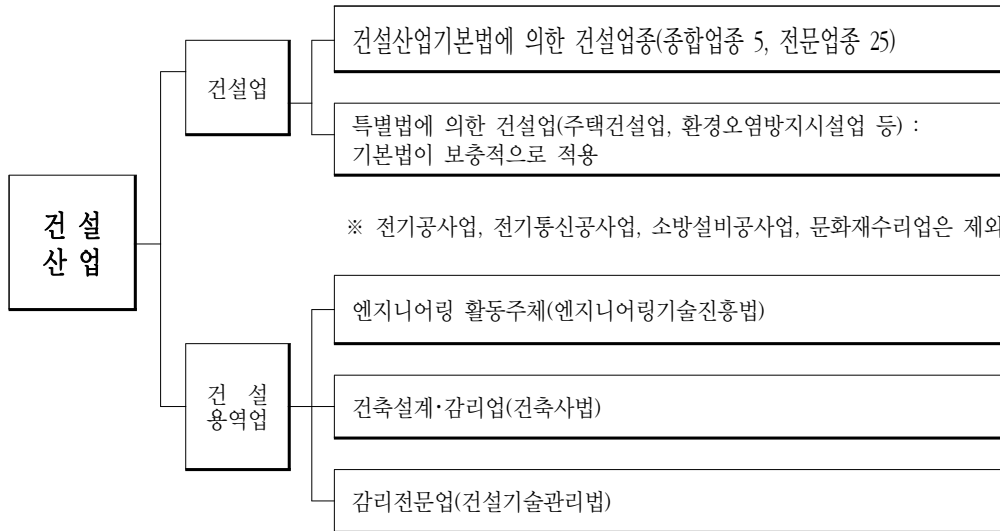
구 분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가격 낙찰자	최저가·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보증금(서)	대가를 일시에 선납 받는 경우 불필요	필요
대가지급	• 선납원칙	• 계약이행후 지급 • 선금지급
입찰보증금	• 필요(면제 가능)	• 필요(면제 가능)
예정가격	• 작성 • 일반재산인 경우 2인 이상 감정평가	• 작성 • 생략 가능(2억(전문1억원, 전기공사 등 8천만원)미만 공사, 5천만원 미만 용역·물품) ※ 소액수의 전자건적 계약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하자보증	불필요	필요
지연배상금	부과	부과
계약담당공무원	경리관(분임, 대리경리관)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경쟁형태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 공사계약 - 일반공사 - 전문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공사 - 문화재공사 - 환경관련공사 등 - 물품제조·구매계약 - 용역계약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	○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단년도 차수계약 ○ 회계연도개시전계약 ○ 단독계약, 공동계약 ○ 종합계약	○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 금액에 의한구분 - 내용에 의한 구분	○ 공사 - 최저가 입찰 - 적격심사 입찰 - 턴키,대안입찰 - 기술제안,공모 - 협상에의한계약 - 최적가치 낙찰 ○ 용역,물품 - 최저가입찰(물품) - 협상에의한 계약 - 적격심사, - 2단계 경쟁입찰 - 희망수량경쟁입찰 - 설계공모 ※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 의무적적격심사

공 사

가. 건설공사



□ 건설업의 등록 유형

건설업구분	업종	업무내용
종합건설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도로, 하천, 철도, 댐, 택지조성 등 건축공사 및 부수되는 시설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수목원, 공원조성 등
전문건설업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9.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인테리어, 칸막이, 목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미장, 방수, 다듬기, 줄눈, 타일, 조적 돌쌓기, 돌붙임, 돌포장, 석재공사 도장, 뱀칠, 차선도색, 경기장비탕 비계, 구조물해체, 파일, 말뚝 창호, 철물, 온실설치 지붕, 판금공사, 건축물조립 철근구조물, 2차선미만도로포장

건설업구분	업종	업무내용
	10. 기계설비공사업	건물내 기기설비, 무대장치, 냉장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기기설비, 옥외용수관
	12.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착정공사
	13. 철도, 궤도공사업	레일, 침목, 건널목보판공사
	14. 포장공사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선택층
	15. 수중공사업	수중공사, 부표, 항로표지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석, 인조목, 파고라, 놀이기구
	18. 강구조물공사업	철구조물 하수급, 육교, 철탑, 수문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건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
	20. 석도설치공사업	케이블카, 리프트
	21. 준설공사업	항만, 운하, 하천준설
	22. 송강기설치공사업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설비
	23.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24.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25. 시설물유지관리업	점검, 정비, 복구, 개량, 보수, 보강

※ 종합 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허용 (2008.1.1)**

□ 영업범위제한의 내용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해야 함. 다만 아래는 예외

- ① 종합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 받는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
- ②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③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관리·계획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
- ④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부대공사의 범위

- (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나) 공사에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에정금액이 전체공사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 (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건설 공사의 하한 금액(시공능력 평가액 1천억원 이상 업체)

-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 안 되는 1건의 공사에정금액임
 - ※ 하한금액 : 당해공사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150억원은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업 등록대상 제외

-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1건 공사의 공사에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종합건설공사
 - 전문공사는 공사에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석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해당업종등록자가 수행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
-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 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님

□ 하도급 제한

○ 일괄하도급의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영 제31조)

-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주요 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 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조정하면서

①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전문공사의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전문공사의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영 제32조)

- 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감리자에게 통지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동일업종 간 하도급 제한(법 제29조 제3항)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

○ 재하도급의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 재하도급 제한의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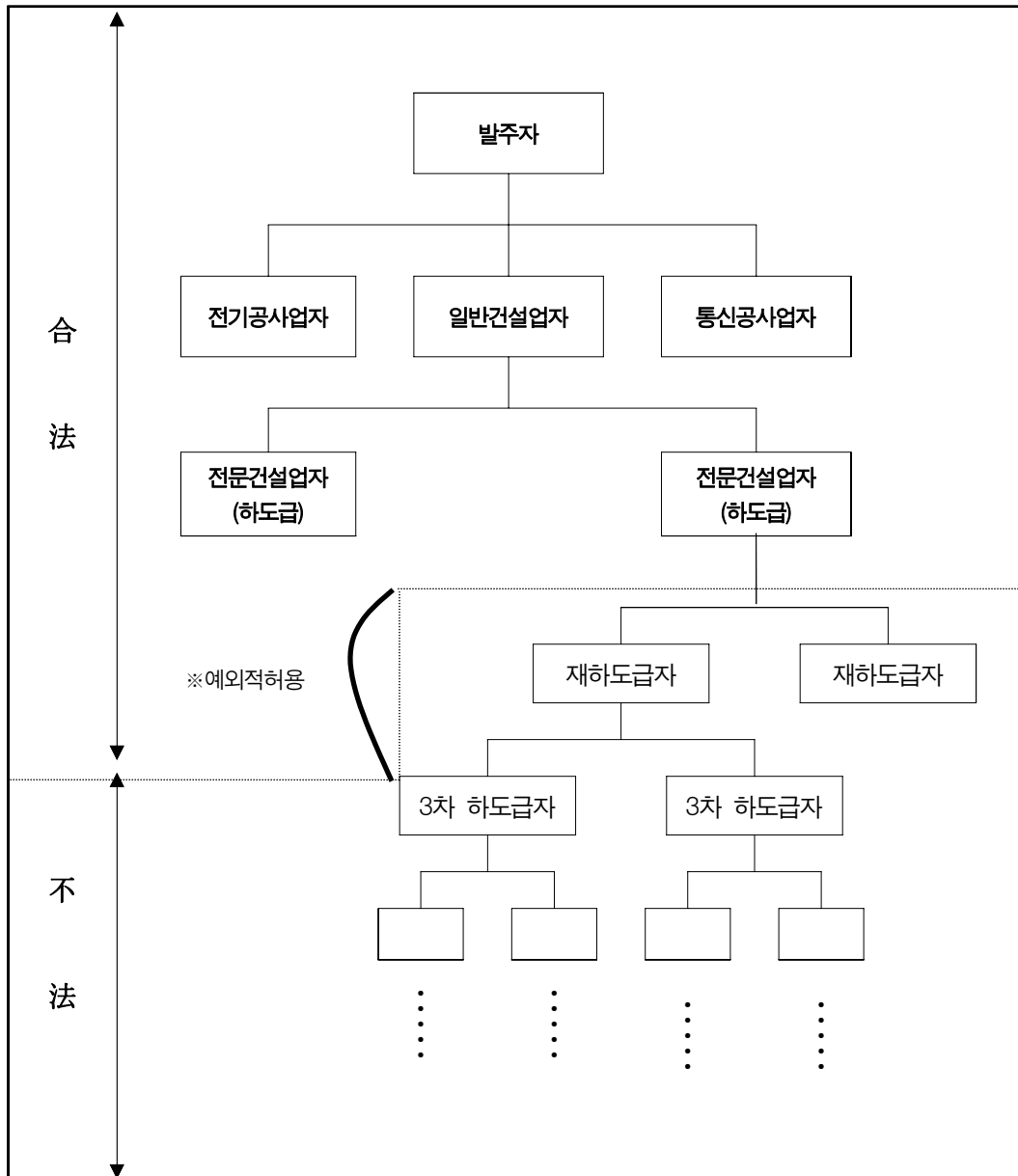
- 종합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
-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①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건설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 하도급 받은 공사를 20/100이내 금액을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특허나 신기술 개발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 철강재 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 건설기계 및 상근 전문인력이 있는 업체에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특허나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 하는 경우 등

② 수급인의 승낙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원·하도급 구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음.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동일
-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간주함(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권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14조 제4항)

나. 전기공사

□ 전기공사의 정의

-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등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함(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 전기공사 시공자격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전기공사업법 제3조)
-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로서 공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공에 참여할 수 있음.
 - 꽃음접속기, 소켓, 로우젯,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교환공사
 - 벨, 인터폰, 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 축전압 36V이하) 설치 및 2차측 공사
 -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 내는 공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꽃음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KW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단,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공사)
- 국가·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는 직접 시공할 수 있음
 -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 보수공사

□ 전기공사의 하도급

- 전기공사는 일괄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하도급이 가능(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 수급인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

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 또한 전기공사 재하도급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의 공정에 전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전기공사사업법 제14조 제2항)

※ 기자재를 납품하는 자도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무등록자인 경우는 불가능.

○ 하도급 및 재하도급 통지

- 수급인(하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재하도급)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전기공사의 발주자(재하도급일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발주청 및 수급인은 당해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자 또는 재하도급자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함

□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시공관리책임자

-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전기공사업자는 반드시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의 규모에 따라 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전기공사 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특급(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 모든 전기공사
2. 중급전기공사기술자	○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3. 초급전기공사기술자	○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자는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사실을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분리발주 의무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전기공사법 제43조 제4호)에 처함
 - 다만,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발주가 가능
예)국가기밀공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다. 정보통신 공사 : 정보통신공사법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자격(법 제3조)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법 제2조, 영 제2조 별표1)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
 - 통신설비 공사 : 통신선로설비,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설비, 이동통신설비, 위성통신설비, 고정무선통신설비
 - 방송설비 공사 : 방송국설비, 방송전송선로
 - 정보설비 공사 : 정보제어·보안설비, 정보망설비, 정보매체설비, 항공·항만통신설비, 선박의통신·항해·어로설비, 철도통신·신호설비
 - 기타설비 공사 :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

○ 공사의 분리발주(법 제25조)

-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통합발주가 가능함
 -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는 터널, 댐, 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비상재해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또는 통신구설비공사로 분리하여 발주가 곤란한 경우

○ 하도급의 제한(법 제31조)

-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다만, 아래의 경우는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음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재하도급은 가능하나, 재재하도급은 금지함
-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각각 얻어야 함

라.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영업의 범위가 구분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모든 특정시설공사를 말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된다.

구 분	내 용
기계분야	연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
전기분야	연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

-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도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청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발주청은 하도급인을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하게 되며, 감리 대상(연면적 1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시설물은 감리결과 보고로 같음
- 소방공사의 경우에도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가 의무화

마. 문화재공사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수리업자
 - 보수단청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보수단청업자로 등록된 자.
 - 조경업자 : 일반조경공사업, 전문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

바. 환경관련 시설물 시공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환경과 관련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적인 환경관련 시설물의 설치업자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자 격 요 건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격요건(폐기물관리법)	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 ② 폐기물 최종처리업 ③ 폐기물 종합처리업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자 (소음·진동규제법)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설계·시공)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설계)
•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 •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 정화조의 설계·시공업

용역

세출의 원인이 되는 용역계약의 유형은 크게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용역은 다시 학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조사, 연구 등 기술과 관련되는 용역을 말한다

-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용역, 건축용역, 기타 기술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용역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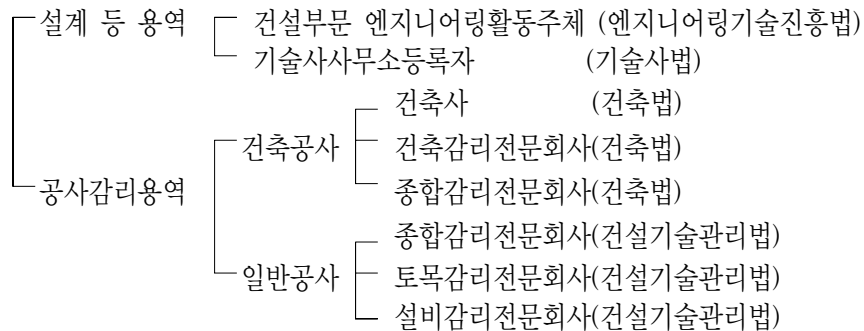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 일반용역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절 총칙 3.용어의 정의에서 정하는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 학술연구 용역 :정책의 개발 및 연구, 수요·공급의 예측
- 시설분야 용역 :청소 위생관리, 시설물 경비, 시설물 관리
- (생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육상·해상 운송 용역
- 기타 일반 용역(전시회, 방역, 광고, 무연분묘 개화장)

①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

②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



③ 건축설계용역(건축법, 건축사업) : 건축사사무소등록자

○ 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 및 공사감리용역, 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설계용역 등으로 구분된다.

○ 엔지니어링사업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제외)등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예정가격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인 엔지니어

링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

기술부문(15)	전 문 분 야(93)			
기계부문	1. 기계제작 5. 건설기계 9. 금형	2. 유체기계 6. 차량 10. 정밀측정	3. 산업기계 7. 기계공정설계 11. 철도차량	4. 공조냉동기계 8. 용접
선박부문	1. 선박설계	2. 선박건조	3. 선박기계	
항공, 우주부문	1. 항공기계	2. 항공기관		
금속부문	1. 철야금 5. 금속가공	2. 비철야금	3. 금속재료	4. 표면처리
전기, 전자부문	1. 발송배전 5. 전자응용	2. 전기응용 6. 전자계산기	3. 전기철도 7. 철도신호	4. 공업계측제어
통신, 정보처리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전자계산조직응용	
화학부문	1. 공업화학 5. 세라믹	2. 고분자제품	3. 화학장치설비	4. 화학공장설계
섬유부문	1. 방사 5. 생사	2. 방직 6. 의류	3. 제포	4. 염색가공
광업자원부문	1. 지하자원개발	2. 탐사	3. 지하자원처리	
건설부문	1. 토질 및 기초 5. 항만 및 해안 9. 수자원개발 13. 도시계획 17. 건축기계설비 20. 지질 및 지반	2. 토목구조 6. 도로 및 공항 10. 상하수도 14. 조경 18. 건축전기설비	3. 농어업토목 7. 철도 11. 건축구조 15. 건설안전 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4. 토목품질시험 8. 교통 12. 건축품질시험 16. 화약류관리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농림부문	1. 식품 5. 산림	2. 농화학 6. 임산가공	3. 축산	4. 종자
해양, 수산부문	1. 해양	2. 수산양식	3. 어로	4. 수산제조
산업관리부문	1. 공장관리 5. 기계안전 9. 가스	2. 품질관리 6. 전기안전	3. 포장 7. 화공안전	4. 산업위생관리 8. 소방설비
응용이학부문	1. 제품디자인 5. 비파괴검사	2. 원자력발전	3. 핵연료	4. 방사선관리

-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건축설계 제외), 설계 감리, 시공,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및 안정성 검토, 시설물의 유지·보수 철거·관리 및 운용과 건설공사물자의 구매 및 조달,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공사감리, 시운전, 건설사업감리, 건설기술 타당성 검토, 건설기술정보 처리, 건설공사의 견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건설기술용역에서 설계 등의 용역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을 하여야 하며, 설계 등의 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예정용역사업비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은 입찰을 하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해야 한다.

- 용역비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 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선정하며,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은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책임감리용역

건설공사의 전면 책임감리대상용역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100m 교량 포함 공사, 공항, 댐, 고속도로,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폐기물처리, 폐수종말처리, 송전·배전시설 등)가 이에 해당되며 부분책임감리대상용역은 교량, 터널, 배수물,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쓰레기소각로,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공사중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를 부분 책임감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건축설계용역

건축설계용역이란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서류를 작

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서 건축사로 정해 놓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다.

-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축법에서 건축사 업무로 규정한 사항
 -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건축주는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감리하게 해야 한다.

건축공사의 감리는 감리자가 건축사가 되며, 감리대상은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내의 건축물,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3층 이상 또는 200㎡이상 건축물, 기타 건축허가 구역 또는 지역의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건축물 공사의 상주감리대상은 바닥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 5층 이상으로서 3,000㎡이상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가 해당되며 상주감리인원은 건축분야는 건축사보 1인 이상, 기타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가.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1) 확정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서 예정가격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임

2) 용역 등의 개산계약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정부투자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출자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등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계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

※ 계약절차

개산가격 결정 ⇒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결정, 공시 및 열람(입찰공고, 입찰설명서, 수의시담문서) ⇒ 계약이행 후에 정산절차, 원가계산기준 등에 따라 정산

〈유의사항〉

- 개산계약에 있어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처리는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함
- 정산을 항목별로 할 것인지,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정해야 함
- 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단가 금액에 낙찰률을 곱함
- 개산금액은 견적금액 등을 참고하여 작성
- 개산계약 체결 시 시·군은 시·도에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함
- 개산계약이라도 이행에 따른 기성대기는 지급을 하되 정산에 따른 감액예산금액에 대한 유보율을 마련, 일정부분 지급 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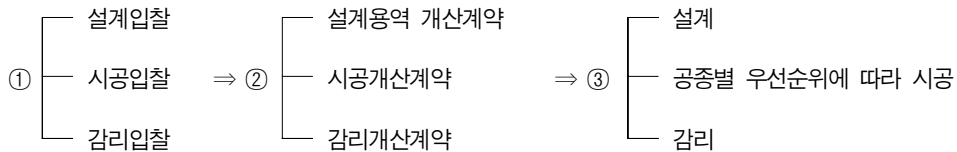
3) 긴급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 정산기준·절차를 입찰공고문에 미리 공개
-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낙찰률을 곱하여 정산을 하고 확정계약으로 전환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확정계약 : ①설계입찰 ⇒ ②설계용역계약 ⇒ ③설계 ⇒ ④시공·감리입찰 ⇒ ⑤시공·감리계약 ⇒ ⑥시공·감리

■ 개산계약



⇒ ④ 설계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정산 후 확정계약으로 변경

▶ 대 상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에 한정(영 제82조)

- 10억원 미만 일반공사(전문·소방·전기공사 등은 6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재해복구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 용역

-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적석쌓기, 제방축조포함)
 ③ 상·하수도 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포함)
 ④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 복구 공사
 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⑥ 제 ①내지 ⑤호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개산예정가격의 작성(영 제8조제3항)

-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

▶ 입찰방법(영 제83조)

-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을 7일 이내 시차(설계→시공)로 각각 입찰에 부쳐야 함

▶ 원가검토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영 제81조)

- 사후정산을 위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절차를 미리 정하고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낙찰자 결정방법(영 제84조)

- 적격심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방법(영 제85조)

- 설계 등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할 수 있음
- 시공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공사를 우선 시공토록 함
- 시공계약 상대방은 시공 전에 투입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당해공사설계자와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고 확정계약으로 전환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에 대한 금액을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계약이행 후 동 품목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는 계약

※ 계약이행절차

- ① 사후 원가검토 계약대상 품목 결정
- ② 구매결의 및 입찰유의서에 동 내용 명시
- ③ 입찰 또는 시담 전에 참가자에게 주지
- ④ 계약서에 사후 정산기준 명시
- ⑤ 계약이행후 사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음
- ⑥ 대가지급 시 일부 유보(10%이내)
- ⑦ 사후원가검토 및 감액금액 결정

- ※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의 차이점 : 개산계약은 개발시제품, 시험·조사·연구용역 등 전체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이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만 사후정산

감사사례	사후원가 정산을 소홀히 하여 물품대금 과다지급
------	---------------------------

원가계산 수입기관이 계약물품의 일부부품에 대하여 수입확정 후 수입면장에 의하여 가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원가계산을 하였음에도 정산자료 확인없이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수입면장에 의하여 재확인 결과 4,119만여원 상당 과다지급 됨
--

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 1)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 2) 단가계약 :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제도(법 제25조, 영 제22조, 제79조)

- 3) 대상공사 : 신호등 수리, 차선도색, 관로복구, 도로·하천 보수·복구 등
- 4)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 절차
 - 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수·수리·복구공사에 대하여 연간 추정물량을 산출(최근 3년간 실적치를 산술평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정가격 산정
 - ② 추정물량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정
 - ③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대금정산 절차·기준을 반드시 명시
 - ※ 가능한 공동도급에 의한 경쟁입찰 실시로 발주자의 위험부담 최소화
 - ④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거리, 장비 보유상황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 ⑤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첨부토록 하여 계약체결
 - ⑥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사후정산 실시

〈단가계약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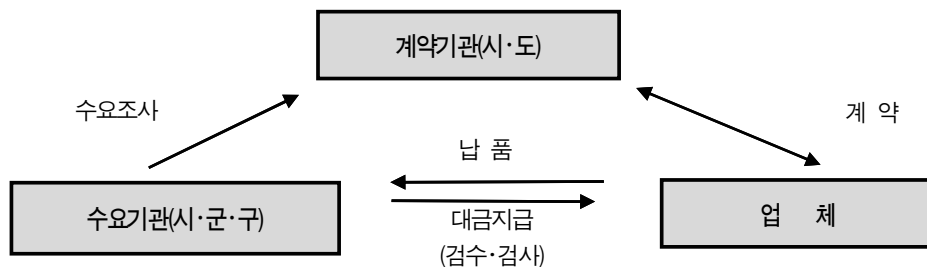
- 계약보증금 : 단가계약에 의하여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 납부해야 함
- 선금지급대상 : 단가계약의 경우 선금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에 대하여 지급함
- 연간단가계약 : 당해년도에 사용할 예정수량에 대하여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일정분 납부 요구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청이 물품별로 단가입찰을 실시하여 해당 연도 단가를 결정하고 지자체는 해당업체에 동일단가로 납품토록 요구

※ 시·도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기능부여(법 제26조, 영 제80조)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도에서 시군구에 대한 수요조사 후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입찰후 계약체결
- 시·군·구에서는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

〈세부절차〉

- 시·군·구 수요물품 파악(시·도) ⇒ 단가입찰·계약(시·도) ⇒ 물품납품요구(시·군·구) ⇒ 물품납품(사업자) ⇒ 대금 지급(시·군·구)



다. 장기계속계약, 단년도계약, 계속비계약

1) 장기계속계약

-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

2)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3)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및 단년도계약 비교〉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확정	확 정	확 정	확 정
총 예산 확보	미확보 (당해년도분 확보)	확 보	확 보
계 약 체 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 (연부액 부기)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 입찰·계약

※ 장기계속계약의 특징

- (가) 예정가격 :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기준
- (나) 입찰금액, 입찰보증금 :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기준
- (다) 산출명세서 : 입찰금액 또는 낙찰금액 기준
- (라) 계약서작성 :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체결. 이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관으로 정해야 함(총공사 부기금액 - 제1차 계약금액)
- (마) 계약금액 : 매년 계약분만 계약금액이 되고,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은 부기함

(바) 계약보증금과 연대보증인 : 낙찰된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기준

(사) 공정표 작성 : 이행 연도분만 작성

(아) 계약금액 조정 : 총공사비, 총제조금액 기준으로 조정

(자) 선금과 지연배상금 : 계약이행연도 분 기준으로 지급

(차) 하자보수보증금 : 매년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것 - 매년
매년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것 - 전체 이행분 기준

※ 동일회계연도 내에서 차수계약 실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 2)

- 동일회계연도 내에서도 장기계속 공사와 마찬가지로 차수계약이 가능함

(계속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부액 초과시공 허용)

- 계약상대자가 계속비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공분을 앞당겨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초과 시공제도 시행 가능

라.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

1) 단독계약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를 말함

2) 공동도급계약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함

① 분담이행방식 ② 공동이행방식 ③ 주계약자방식의 3가지 형태로 구분

(공동계약의 형태 및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 구성 방식	○ 출자비율로 구성	○ 분담내용으로 구성 (먼허분담 가능)	○ 주계약자 종합조정·관리 ○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으로 구성
② 대표자	○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 이행 및 하자책임	○ 구성원 연대책임 (1차-구성원, 2차-보증기관)	○ 구성원 각자 책임 (1차-구성원, 2차-보증기관)	○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1차-구성원, 2차-보증기관) *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구성원 연대책임
④ 하도급	○ 구성원 전원 동의 시 하도급 가능	○ 각자 책임하에 일부 하도급 가능	○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 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⑤ 실적 인정	○ 금액-출자비율로 산정 ○ 규모-실제 시공부분	○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 주계약자-전체실적 ○ 부계약자-분담시공부분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2010년부터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건설 공사에 대하여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가능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는 제도
 - ※ 다만, 지역안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 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0%이상 되도록 입찰공고해야 함.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9%이내에서 결정하여 입찰공고를 할수 있음
 - ※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 업체와 지역 업체 이외의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는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음

질의회신

- 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공동 계약이 가능한 것임
- ② 용역물품계약의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한 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계약은 적용되지 않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설계용역 등의 기술용역의 경우 지방 업체와 공동도급시 지역 업체 참여가점 부여 (참조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종합계약

- 동일장소에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
- 예) 지상 및 지하의 구조물 및 매설물 공사
- 예산낭비를 막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도입

4)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 임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
- 예) 차량용 및 난방용유류단가계약, 업무용전산장비 유지보수, 청사경비용역계약 등 성질상 중단이 곤란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

5)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

-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부칠 수 있는 경쟁방법으로서 유사물품별로 별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2단계 경쟁입찰

- 용역입찰의 경우 1단계로 규격(또는 기술) 입찰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 입찰서를 제출케 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물품입찰에 있어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2개의 봉투에 각각 넣어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규격을 먼저 개봉한 다음 가격개봉)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일부공사,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안보목적 등이 있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하는 제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구분 〉

예 규	적 용 범 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사업 (예: 엔지니어링사업(다만, 건설기술용역은 고난도,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화에 관한 사업,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문화사업,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사업, 학술연구용역, 조형물 설계 제작 또는 설계제작·설치사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호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이나 학술용역을 제외한 물품·용역계약과 행안부 기준에 맞는 공사

☆ 점수 평가결과 70점 이상이 되어야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음

〈협상 절차〉

: 협상기준(지식기반사업은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적용) 및 절차 작성·열람·입찰 공고(입찰공고 시 협상계약이라는 뜻

을 명시해야 함) → 참가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 교부 → 제안서 제출 → 심사위원회명단작성(정수의 3배수) → 입찰참가자가 심사위원 추천 → 심사위원 확정(불참자를 예상 115% 확정) → 우선 협상대상자(적격자) 선정 → 협상기준 및 가격작성(견적가격 평균가, 예산·원가금액 등 참고) → 가격 및 조건협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처리〉

- 심사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전문성이 있는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의 공무원,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하며 용역내용에 따라 수시 달리함, 위원장은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으로 하되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별로 평가한 심사결과는 참가자별로 최고점수자와 최저점수자의 평가결과를 배제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 산술평균(중위평가)
-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협상의 적격자가 됨
-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협상요령〉

- ① 가격협상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 체결
- ② 조건협상 후 가격 협상 : 발주기관이 제출된 제안서의 장점을 종합하여 작성한 최적제안을 제시하여 이에 동의하는 조건 하에 가격 협상을 실시
- ③ 조건 동의 및 가격입찰 : 다수의 적격자에게 최적제안을 제시하고 동의하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 실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객관적지표 (계량화)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신인도 등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주관적 평가	용역 및 물품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등	60	심사위원이 평가
		공사	- 정책 이해도 - 마스터 플랜 반영도 - 지역경관과 조화성 -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등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 아래

※ 세부평가기준을 발주자가 정하여 운영하되 배점을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text{최저입찰가격} / \text{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text{평점} = \text{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text{최저입찰가격} / 80)] + [2 \times (\text{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text{당해입찰가격}) / (\text{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단순노무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경우 최저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하로 계약을 할 수 없음

9)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절차 구체화

- 그동안에 공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사업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으나
- 2009. 12월부터는 아래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가 결정
 - ①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70%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 ② 전시관·박물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단, 전시관 건축공사는 제외)
 - ③ 공사와 조형물 설치 등이 복합되어 있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고 공사업 자격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심의체계 마련

- 발주기관은 협상계약 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 발주기관은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 상기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 공사의 70% 이상이 되어야 함
- 계약심의위원회에는 반드시 관련협회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 제시
-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협상계약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 의무화

나) 단순노무 일반용역 임금보장 근거 등 기타 기준 정비

-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 이상이 되도록 기준 명시
- ‘협상계약심의신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결과 승인사업현황(정보공개)’ 등 표준 양식 마련

1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의 공모에 의한 계약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및 동시행령 제53조, 제54조의 규정에 상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가장 뛰어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공모대상 요건)

-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공모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것

(공모절차)

- ① 공고(사업명, 시행기관, 사업주요내용, 총 예정사업비 및 당해년도사업비, 사업시행시기, 기타 필요사항)
 - ② 건설기술자의 능력, 수행실적, 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발주청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
 -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업자 선정은 설계의 예술성, 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건설 기술 공모에 의하여 당선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자목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11)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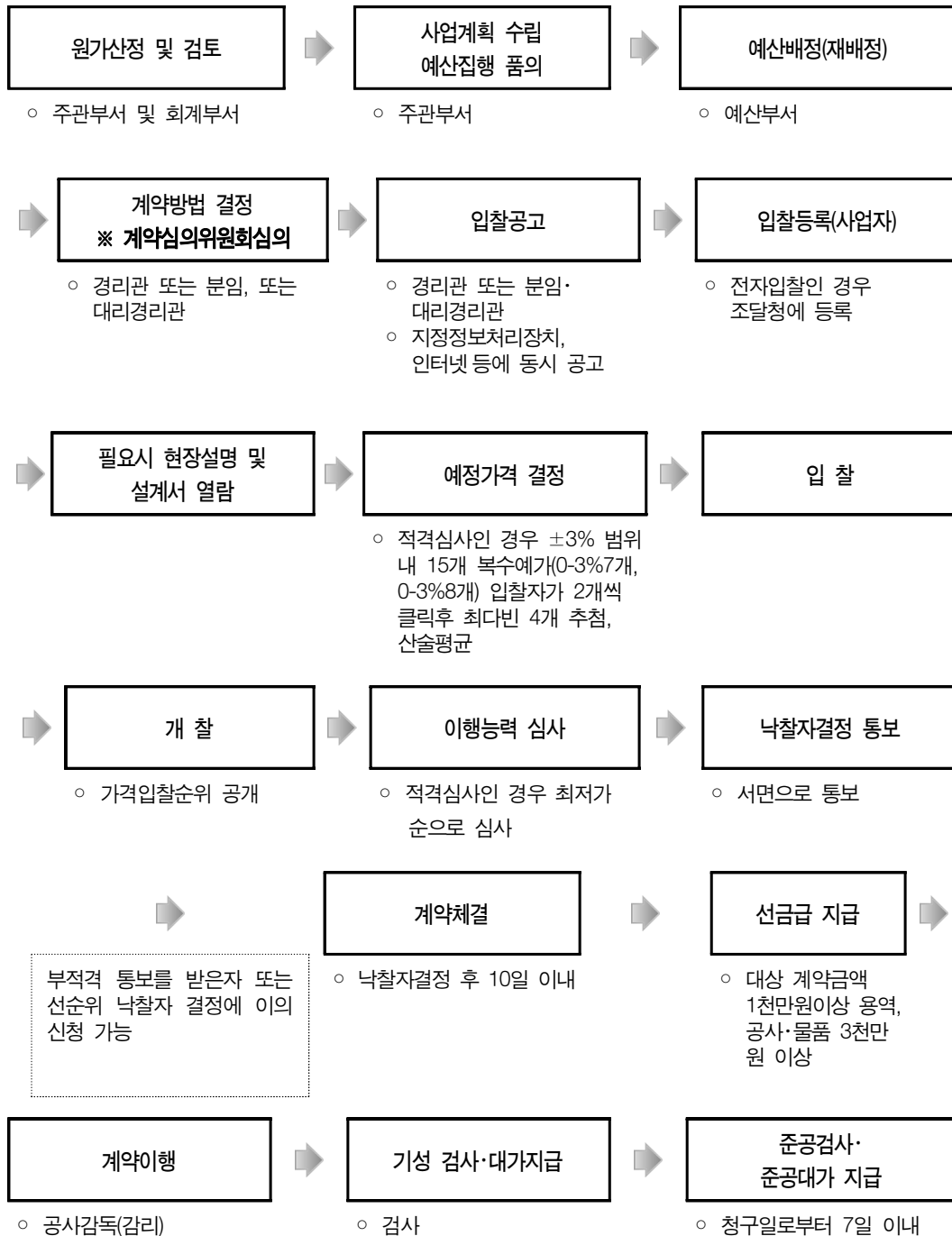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4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설계공모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금액을 확정하고, 업체가 발주기관의 설계지침 등에 따라 공모안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하여 최상의 설계를 제출한 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별도의 수의계약 불요)

제 Ⅲ 장 입찰 및 계약의 절차

1. 업무 흐름도

【계약 의뢰 전】 사업부서	【계약체결】 계약부서	【사업진행, 완료】 사업부서	【대금지급】 사업, 회계부서
1. 예산확보 및 배정 2. 사업계획서작성 - 계약방법, 기간, 과업내용서작성, 원가계산, 예산집행 과목 등 확인 - 수의계약 시 수의 계약 근거 및 업체 선정 이유서 작성, 업체의 참가자격 확인 - 필요시 계약 조건 및 제안서 작성 ※ 회계부서 및 예산 부서 협의 3. 일상감사 실시 (계약원가 심사)	4. 예산과목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5. 사업비 산출근거 및 계약방법 확인 (예정가격작성)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또는 수의계약상대자 결정 ⇒ 7. 계약구비서류 징구 8. 계약체결 및 통보 9. 지출원인행위	10. 감독 및 검사 담당자 임명 11. 사업 착수계 접수 및 과업 내용 지시 12. 선금지급의뢰 ※ 필요시 ⇒ 13. 계약연장요청 ※ 필요시 14. 사업결과확인 15. 검사 및 경비 정산결과 통보	16. 대금지급 - 지출원인행위 - 하자보수보증금 - (세금)계산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공사의 경우 보험료 정산 및 변경원인행위

2.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도(적격심사인 경우)



3. 입찰절차별 세부내용

가. 예산 집행품의

- 예산집행품이란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러한 의사결정행위는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니다.
- 예산집행품의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며, 사업계획수립(세부사업계획 수립)도 넓은 의미에서는 집행품의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집행품의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① 공사집행(수선) ② 물품의 구매·제조·수리 ③ 용역의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의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집행내용이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 ②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인지 여부
- ③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④ 집행예정금액은 법령 또는 기준 내의 단가에 의한 산출인지 여부 등

나.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원가 검토 의뢰
※ 다만, 공사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자체검토 가능
(예: 계약심사 기능이 있는 경우)
- 추정가격이 관할 시도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심사부서에 심사 의뢰 의무화
-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원가계산 및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 ▶ 원가 검토만 위탁 가능한 기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 해당)
 - 국가·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 원가검토를 하고자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

다. 계약방법의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품의요구가 이송되어 오면 아래 사항을 선택하여 결정하거나 분류해야 한다.

- 계약목적물의 분류
 - ▶ ① 공사 ②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③ 용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계약체결방법
 - 공동 도급 계약인지 단독 계약인지 여부
 - 확정계약인지, 개산계약인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인지 여부
 -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여부
 - 종합계약,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인지 여부
 - 장기계속계약인지, 계속비계약인지, 단년도계약인지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대상 여부

- 경쟁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방법을 선택 또는 결정 최저가, 적격심사, 희망수량경쟁입찰, 2단계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모에 의한 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여부를 판단

라. 입찰공고

입찰공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입찰공고의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현장설명회 장소, 일시,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공사입찰의 경우)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포함)
 14.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 등에 관한 사항
 15.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기타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시설공사의 경우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인정 범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도 입찰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에 명시해야 함

2) 입찰공고일

- 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 전(PQ심사 공사입찰의 경우는 30일 전)

※ 현장설명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	10억~50억원 미만 :	"	15일 전
	"	50억원 이상 :	"	33일 전

- 현장설명일이 없는 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 추정가격 10억~50억 미만 : " 15일 전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 " 30일 전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40일 전

- 물품 제조·구매·용역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7일 전

※ 긴급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5일 전까지

3) 입찰공고 방법

경쟁입찰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여야 함.

〈지정정보처리 장치〉

-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www.G2B.go.kr)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단체급식 식재료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4) 입찰공고문 예시

○ ○ ○ ○ ○ 공 고 제 호 ※ 공 고 대 장 의 연 번 호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물품구매·제조) <table border="0"> <tr> <td>○ 공사명</td> <td>○ 개요</td> </tr> <tr> <td>○ 공사현장</td> <td>○ 품명</td> </tr> <tr> <td>○ 공사기간</td> <td>○ 규격</td> </tr> <tr> <td>○ 공사금액</td> <td>○ 수량</td> </tr> <tr> <td>· 추정가격</td> <td>· 관급</td> </tr> <tr> <td></td> <td>· 부가세</td> </tr> </table>			○ 공사명	○ 개요	○ 공사현장	○ 품명	○ 공사기간	○ 규격	○ 공사금액	○ 수량	· 추정가격	· 관급		· 부가세
○ 공사명	○ 개요													
○ 공사현장	○ 품명													
○ 공사기간	○ 규격													
○ 공사금액	○ 수량													
· 추정가격	· 관급													
	· 부가세													
(나) 입찰 및 계약방식														
(다) 현장설명 <table border="0"> <tr> <td>○ 일시</td> </tr> <tr> <td>○ 장소</td> </tr> <tr> <td>○ 자격</td> </tr> </table>			○ 일시	○ 장소	○ 자격									
○ 일시														
○ 장소														
○ 자격														
(라) 입찰참가자격														
(마) 입찰보증금 <table border="0"> <tr> <td>○ 입찰보증금액</td> </tr> <tr> <td>○ 납부기한</td> </tr> <tr> <td>○ 입찰보증금의 귀속</td> </tr> </table>			○ 입찰보증금액	○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의 귀속									
○ 입찰보증금액														
○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의 귀속														
(바) 입찰참가 신청 <table border="0"> <tr> <td>○ 일시</td> </tr> <tr> <td>○ 장소</td> </tr> </table>			○ 일시	○ 장소										
○ 일시														
○ 장소														
(사) 입찰 <table border="0"> <tr> <td>○ 일시</td> </tr> <tr> <td>○ 장소</td> </tr> </table>			○ 일시	○ 장소										
○ 일시														
○ 장소														
(아)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 <table border="0"> <tr> <td>○ 실적 인정규모· 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등</td> </tr> </table>			○ 실적 인정규모· 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등											
○ 실적 인정규모· 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등														
(자) 공동계약이 가능한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제한사항과 공동도급 이행방식, 지역의무 공동도급 참여기준 등														
(차) 기타사항 <table border="0"> <tr> <td>○ 입찰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물품구매·제조) 유의서, 공사(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td> </tr> <tr> <td>○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시 00과(청,소) ☎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d> </tr> </table>			○ 입찰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물품구매·제조) 유의서, 공사(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시 00과(청,소) ☎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물품구매·제조) 유의서, 공사(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시 00과(청,소) ☎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 ○ ○ ○ ○ 경 리 관														

마. 공사의 현장 설명

1) 현장설명 의무적 참가 및 입찰 무효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 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
 - ※ 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 중 1인(대표자의 위임)만 참가해도 충족

2) 현장설명 참가자격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바. 입찰 참가자격

1) 경쟁입찰 참가자격

-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 경미한 공사의 입찰(시공)참가자격
 - 일반건설공사는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1천만원 미만은 사업자등록 증만으로 입찰(시공) 참가자격이 있음
- 보안측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적합판정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자

2) 입찰참가 배제

-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불참자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내용에 미달되는 경우
-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면허 등이 취소된 자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 전자입찰인 경우 전자입찰 system에 의하여 납부하나 각서만 징구하고 납부면제 처리

4)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5) 대리인의 입찰참가(전자입찰의 경우는 인증받은자만 입찰 가능)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또는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인정

6)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 보증금 납부서(전자입찰인 경우 면제확약서로 대체),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전자입찰은 제외) 등이 포함.

7) 신청서류 확인조사

- 계약담당공무원은 접수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조사를 할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
 - ※ 자격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입찰

1) 입찰의 개념

-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

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
- ※ 대부분 제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G2B를 통한 전자입찰

2) 공사의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구 분	내 역 입 찰	총 액 입 찰
대 상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 내역입찰대상 이외의 공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입 찰 시 제출서류	- 입찰서 - 산출내역서	- 입찰서
기 타	- 산출내역서에 관련된 입찰무효 사유가 있음 -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됨	-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 시까지 제출 - 경쟁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시 물량내역서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배부 하여야 함(설계서에 포함)

3)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가) 재입찰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재공고 입찰

- ①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②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공고 입찰 시 최초 입찰시 참가하지 않았어도 추가 참여 가능

-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종전 서류로 대체 가능, 기한을 제외하고는 예정가격, 참가자격, 기타의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새로운 입찰 :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재공고 입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조건 변경이 가능

4) 입찰무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미달자 포함)
- 입찰서가 지정시간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한 경우)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입찰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불참자가 한 입찰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다른 입찰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총액이 다른 입찰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액과 다른 입찰
 - 산출내역서에 주요물량에 대한 산출내역의 누락 또는 변경금액이 예정가격의 5% 이상인 경우
 -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의 정정 날인이 누락된 경우
- 품질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시 품질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 담합자, 타인의 입찰 참가 방해자, 공무집행방해자가 한 입찰
 - 내역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주요물량 누락 또는 변경한 내역서를 첨부한 입찰
 -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한 내역서를 첨부한 입찰 등

제 IV 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

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법 제32조)

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사항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심의범위

-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학술연구용역을 특정인에게 수의계약하는 경우, 공사의 협상계약 적용여부 등)

■ 심의대상 금액

- 시·도 :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20억이상 물품·용역)
- 시·군·구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10억원이상 물품·용역)
- ※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 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금액 제한없이 심의대상임
-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부정당업자로 제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제6호, 제11호 부터 제15호는 심의없이 제재 가능

나.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당연직으로 됨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위촉대상 위원이 됨

- | | |
|-----------------------------|--------------------------|
| • 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 | • 변호사로서 관련분야 경험·지식이 있는 자 |
|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
| • 관련협회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 •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

-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 구성·심의 가능
-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 V 장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1. 일반경쟁계약

가. 의 의

일반경쟁계약이라 함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시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제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낙찰자라고 한다),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나.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일반경쟁입찰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하나, 부실업자가 참가하여 입찰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최소한 제한

1)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법정자격 요건을 갖출 것

나)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건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것

2. 제한경쟁계약

가. 의 의

제한경쟁계약이란, 일정한 지역,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경쟁과 지명경쟁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며, 실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편임

나. 제한의 유형 및 형태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①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 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	〈별표 1〉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용역	추정가격 30억원(3억원) 미만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② 기술의 보유상황 으로 제한	공 사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당해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추정가격 50억미만 공사는 0.7배 이내) - 가능한 규모 또는 물량으로 제한
	공 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별표 1〉의 30개 공사 참조
③ 기술의 보유상황 으로 제한	공 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	〈별표 1〉 참조
	공 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	
④ 지역제한	공 사	-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억원 미만 -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혁신도시건설관련공사 : 전문10억미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④ 지역제한	물품·용역	· 시·도(울산제외)에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3.8억 원 미만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 안전진단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⑤ 설비로 제한	물 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⑥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공 사	· 시·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경쟁기준을 정하고 등록한 그 사업자로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물품의 제조 및 구매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능력 요구	
⑧ 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한
⑨ 재무상태	공사·용역 및 물품·기타	·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의 상태가 있는 자의 배제	
⑩ 인증제품의 납품 능력	물품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자가 제조한 물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	납품능력은 제품생산자 또는 제품공급 계약서 제출자 등으로 제한

※ ④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제한의 기본원칙

- ①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 ② 각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기본원칙임.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도급한도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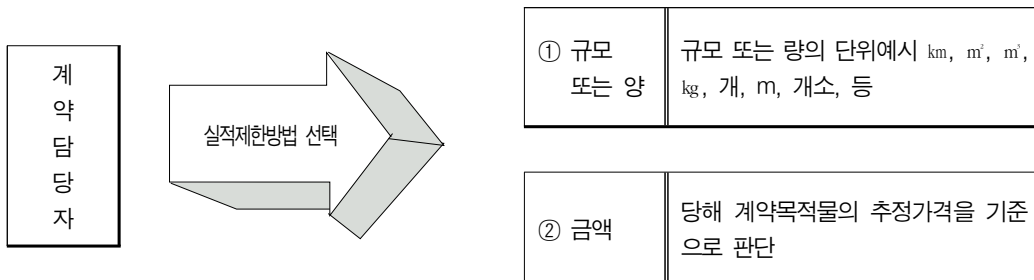
〈예외〉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제한 경쟁입찰은 ④의 지역제한과 ①의 실적제한 또는 ④의 지역제한과 ②의 기술의 보유상황, ④지역제한과 ⑧중소기업자로 중복하여 제한 할수 있음

라.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 ①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한다.
- ② 지역제한이외의 제한기준일 : 입찰 등록 마감일

마. 제한요령

1) 실적제한



- ① 시설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량)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법령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0.7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 ④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⑤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 및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I 에 의한다.
- ⑥ 용역·물품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금액)를 정한다.

2) 운용요령

- 공사의 실적제한은 당해공사 규모의 1/3 기준으로 제한하는 원칙 제시
 - ※ 다만, 특성상 필요시에는 가감조정 가능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에 의한 제한경쟁요령 제시
 - 신기술포함 공사설계 전에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협의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등 대책 강구

바.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①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공사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기타 당해공사의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 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 ① 발주(사업)부서에서는 공사시공에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 후 설계를 해야 한다.
 - ③ 발주(사업)부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전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별첨양식1의 예시를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신기술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자와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간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

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⑤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하도급으로 기술개발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술 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서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의 범위 및 하도급대가 지급률을 정하여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를 되도록 한다.

사.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계약담당자는 부도상태, 파산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아. 물품의 납품능력에 의한 제한

- 1)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규격서(시방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일부 포함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사전 협의 후 규격서(시방서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발주(사업)부서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별첨양식2의 예시를 참조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계약담당자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검토하거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필요한 물품과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 5) 계약담당자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자.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

- ①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
 - 가. 입찰 참가요건을 대표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당해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수(예시 :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 다.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하고, 자재납품업체까지도 당해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 ② 실적제한 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례
- ③ 당해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 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 ④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예시)• 하수관거공사 발주 시 택지조성공사 및 경지정리공사와 관련된 하수관거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발주 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조성공사 실적을 제외하는 사례
- ⑤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실적만 인정하고 다른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발주공사, 민자 또는 민간발주공사, 해외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⑥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⑦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⑧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⑨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 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 ⑩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 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⑪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용역이 당해용역의 주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감리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3. 지명경쟁계약

가. 의 의

- 1) 지명경쟁계약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임
- 2) 이 방법은 절차가 간소하고 능력있는 자 만을 참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인을 정실 지명하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음

나. 지명경쟁계약의 대상

-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2) 추정가격이 3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나 용역계약
-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
- 4) 예정임차료의 연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의 임차
-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에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의한 규격표시 인증제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품질경영 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 7)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9) 보수 복구 및 수리 등의 공사를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0)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다. 지명기준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지명하여야 함.

1) 공사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지명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 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자를 지명할 수 있음

2) 물품 제조·구매 기타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판매망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
- 유류단가 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

라. 지명 및 통지절차

- 1)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 함
- 2) 지명경쟁참가 적격자에게는 통지를 하고 입찰참가승낙서를 받아 참가여부를 확인
- 3) 지명기준을 명백히 하고 대상자로부터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수하여 비치하여야 함

감사지적 사례

- 일반경쟁계약으로 할 것을 부당 지명경쟁계약
홍보용 영화와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면서 해당업자가 78명이나 됨에도 10인 이내로 인정하여 지명경
쟁계약

마. 지명경쟁계약 체결 시 보고서식(당해 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

- 1) 계약의 목적
- 2) 품명, 규격, 수량,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 적용사유
- 4) 지명대상자의 주소, 성명, 업태현황
- 5) 기타 참고사항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요구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1 〉

①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② 활주로공사 ③ 지하철공사 ④ 저수·유조 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⑤ 댐 축조공사 ⑥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 송·배수관공사 ⑧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 매립지 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⑩ 독크 축조공사 ⑪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⑫ 항만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⑬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⑭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⑮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⑯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⑰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⑱ 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 설치공사 ⑲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⑳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㉑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㉒ 문화재 보수공사 ㉓ 차선도색공사 ㉔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㉕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㉖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㉗ 심정공사 ㉘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㉙ 하천환경정비사업 ㉚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특수한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호 관련)

- ① 스포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 ② 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한 설비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 제3호·제4호 관련)

- ①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③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의 제조

4. 수의계약

가. 의 의

수의계약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함. 이 방법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용됨

이 방법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의 생략으로 행정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음

나.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 및 제한

- 1)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요건은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함

다만,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만

자격요건이 있으면 계약가능

- 2)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

다.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 ·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	·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 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4절 참조)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 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 기타	•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 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가, 나, 다, 마)				
	천재 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 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바~하, 6호~8호)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 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 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 항 제3호)				

라.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

① 금액기준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

가) 대 상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 기타	•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지 않는 경우(제4 절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제4절”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시 물량내역서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가) 소액이거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3) 계약담당자는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내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시·도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바) 공사현장이 도서지역(제주도와 교량 또는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지역(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한정한다) 단, 해당 도서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도서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이하 “안내공고일”이라 한다)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 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에서 해당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5)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나) 규격

다) 재질 또는 품질

라)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마)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아)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6) “3)”과 “4)”의 각 호는 “5)”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7)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및 예정가격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한다.

8) 수의계약 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결격사유

-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 또는 기술용역 이행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종합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마)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수의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 사)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아)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차)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업종별로 결격여부 심사시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관급공사(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감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BOT공사 등

9)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0)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 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 ·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	지정정보처리 장치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나) 수의계약 요령

-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2) 아래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 다) 견적서 제출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당해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 라)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마)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3) 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 서식을 준용하여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 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중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하수도접합, 조경, 토공, 준설 및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 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 대상
2)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예정금액의 2분의 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 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 특허공법 등에 의한 공사,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전력 기술공사 등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계약담당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부분이 공사전체(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또는 신기술 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경리관 등)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 배제대상

- 1)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3)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4)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 평가	점 수		
	시 공 능 력 액 (8)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3배 이상 2배 이상 1.5배 이상 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여 유 율 (8)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1건 이하 2건 3건 4건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 영 상 태 (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150% 이상 120% 이상 100% 이상 70% 이상 70% 미만	AA- 이상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 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하자	㉔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㉔+㉕)/2) × 70%=점수			
		㉕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혼잡	㉔시간적 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㉔+㉕)/2) × 70%=점수			
		㉕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③마감	㉔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예정금액)×100= %			㉔×70%=점수			
㉕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포함)인공사계약금액/금차부대시설공사 예정금액] ×100= %			㉕×70%=점수				
④특허 공법 등	㉔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금액/ 금차예정금액)×100= %			㉔×70%=점수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
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평가결과 반영)

-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90점 이상인 경우 가능
- ※ 소수점이 있는 경우 전체 항목점수 합산 후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①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또는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함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 4)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5)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6)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7)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8)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9)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10)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11)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 13)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1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④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7)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18)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 19)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20)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21)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2)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단, 2015.12.31.까지 체결하는 수의 계약에만 적용한다.
 -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25)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2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27)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8)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 29)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 30)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 3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단, 지역제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19)·22)·23)·24)·2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세부평가 방법

-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가-8)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와 계약한다.
-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 3)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제외대상은 2인 이상 견적 제출대상의 결격사유와 같다.

마.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 1)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 이 경우에도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며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아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 ㉡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 활동을 제외한다)
-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1인 견적제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 ㉧ 지정정보처리 장치의 오류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바. 수의계약 내용의 공개

- 1) 대상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용어정의

- 가.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나.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전문기관의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한다.
- 마.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이란 경쟁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득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한다.
- 바.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 공고를 말함
- 사. 인접시·군 : 공사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은 제외한다)
- 아. 인접시·도 : 공사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지역(단, 해상인접은 제외한다)
- 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
- 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

제 VI 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

가. 의 의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 P.Q심사, 적격심사, 수의계약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전에 예산상의 금액 등과 지방계약법시행령 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나.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 (1)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2)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추정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

구 분	입찰방법 등 구분	관 련 규 정
1. 국제입찰 대상	○ 광역자치단체 - 공사 : 284억원 이상 - 물품·용역 : 3.8억원 이상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입찰대상기관에서 제외됨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010.12.30 관보)
2. 공사의 현장설명	○ 300억원 이상인 현장설명의 경우 참가가 의무이며,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3일 전에 실시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시행령 § 14⑤
3. 내역입찰, 총액입찰	○ 100억원 이상 공사는 내역입찰 실시	- 지방계약법시행령 § 14⑥
4. 수의계약 대상	○ 공사 : 2억원(전문공사 1억 원 전가등 공사 8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 5천만원 이하	- 지방계약법시행령 § 26① 제5호
5.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 2.5억원미만 물품(중가지정제품 제외) 300억원 이상공사중 터키 및 대인입찰 제외 공사 ○ 적격심사 대상 - 공사 : 300억원 미만 - 용역 : 모든 경쟁입찰 - 물품 : 2.5억원 이상	- 지방계약법시행령 § 42

질의회신

〈질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바,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2. 예정가격

가. 의 의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계약담당자가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나.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1)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 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 2)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3)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 4)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5)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

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6)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3호에 의한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다.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 1)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할 원재료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마. 예정가격 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예정가격의 비치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1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 1)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임차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

- 다)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라) 시행령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마)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음
- 2)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 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나)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다)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라)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마)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바)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아.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감사지적 사례

○○에서 의약품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면서, 2인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견적가격을 직접조사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도 1개회사(○○실업주식회사)에게만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견적을 요구받은 업체가 자사의 견적서 외에 (주) ○○약품의 견적서 용지를 인쇄하여 그 용지에 자사의 견적보다 높은 가격을 임의로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위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로부터 6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계 5,235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부당하게 구입함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가. 기초금액 작성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초금액의 확정

- 1)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 조정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 2)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가.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내에서 7개, $0\% \sim -3\%$ 범위 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나.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 1)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 2)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3)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다.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5. 감정가격·견적가격·거래실레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가.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 2)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 5백만원 이하 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나.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 1)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 2) 적정한 거래실레가격이 없고, 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거래실레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1) 거래실레가격의 개념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레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가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2) 거래실레가격의 결정

거래실레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 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나)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 또는 물가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한다.

— 〈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 〉 —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직접재료비에 계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가. 원가계산의 개념

1) 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
되, 용역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의
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 가격
- 노무비=노무량×노무비 단가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 가격

나. 제조원가 계산

1) 제조원가 :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
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 간 작	직 접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 간	직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전 수 온 감 수 특 기 연 시 지 보 복 보 외 산 소 여 세 폐 도 지 기	력 도 반 가 리 허 술 구 험 급 험 리 후 관 주 업 모 금 기 서 급 타	비 광 비 상 수 권 료 개 검 임 료 후 비 가 안 품 교 과 물 인 수 법	열 비 각 선 사 발 사 차 생 비 공 전 비 통 공 과 리 비 통 신 비 과 리 비 채 수 정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3) 제조원가의 구성

가) 재료비

(1) 직접재료비

- ①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②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등

(2) 간접재료비

- ①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②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
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③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나) 노무비

(1)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
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 퇴
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① 기본급, ② 제수당, ③ 상여금, ④ 퇴직급여충당금

(2) 간접노무비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

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경비

(1)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2) 경비의 세비목

① 전력비, 수도광열비, ② 운반비, ③ 감가상각비, ④ 수리수선비, ⑤ 특허권사용료, ⑥ 기술료, ⑦ 연구개발비, ⑧ 시험검사비, ⑨ 지급임차료, ⑩ 보험료, ⑪ 복리후생비, ⑫ 보관비, ⑬ 외주가공비, 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⑮ 소모품비, ⑯ 여비·교통비·통신비, ⑰ 세금 및 공과금, ⑱ 폐기물처리비, ⑲ 도서인쇄비, ⑳ 지급수수료, ㉑ 기타 법정경비

4)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 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장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의 계상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아래와 같고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업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5)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다. 공사원가 계산

- 1) 공사원가 :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작성방법 :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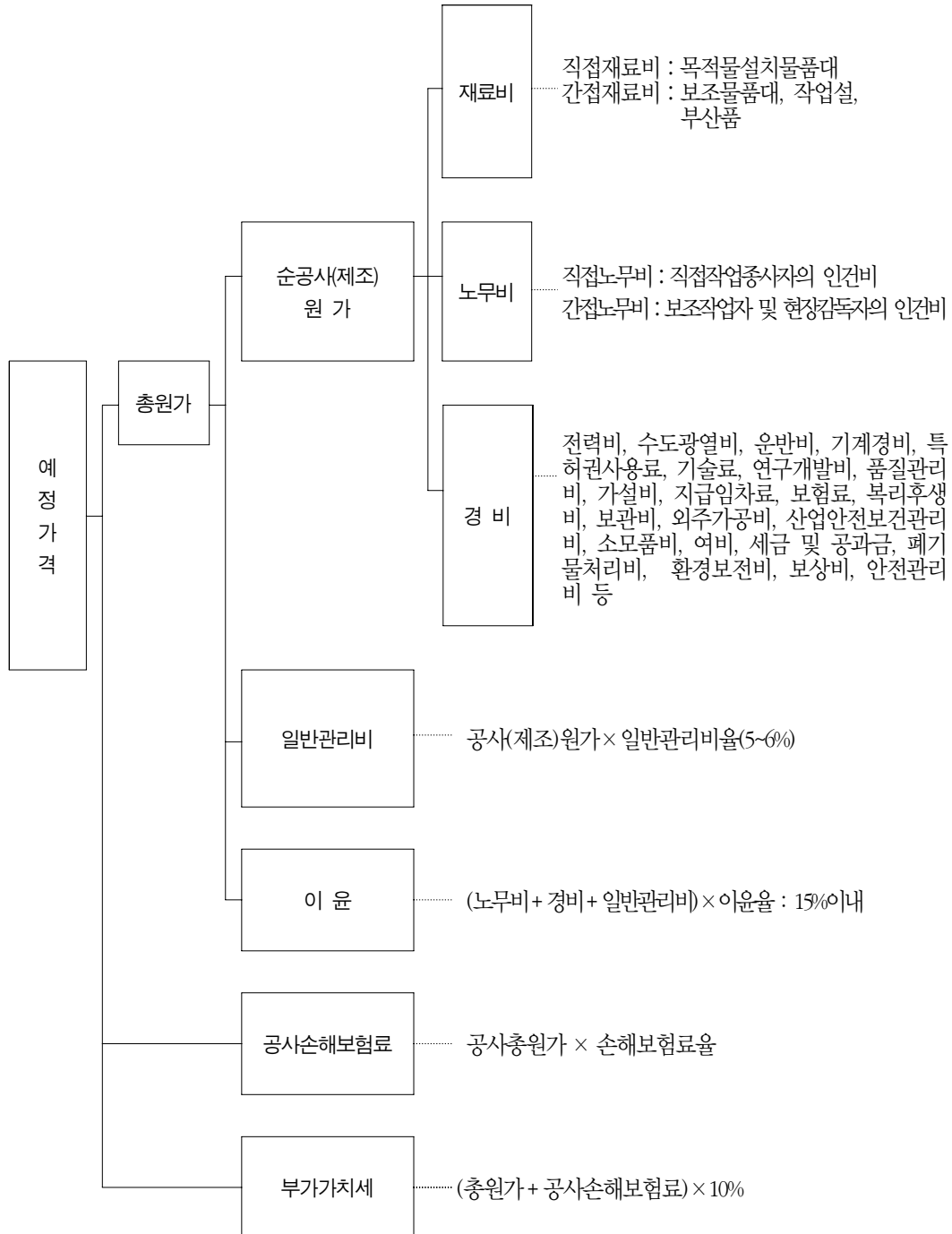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부 산 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관 리 비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3) 공사원가의 구성체계



가) 재료비

(1)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을 말한다.

- ①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②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등

(2)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을 말한다.

- ①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②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
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
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③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
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나) 노무비

(1) 제조원가의 노무비 내용을 준용한다.

(2) 공사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① 직접계상 방법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공 식〉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② 비율분석 방법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공 식〉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14.5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 사 규 모 별	50억 원 미만	14	
	50~300억 원 미만	15	
	300억 원 이상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14.5%) / 3 = 15.5%

다) 경비

(1)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 ① 전력비, 수도광열비, ② 운반비, ③ 기계경비, ④ 특허권사용료, ⑤ 기술료, ⑥ 연구개발비, ⑦ 품질관리비, ⑧ 가설비, ⑨ 지급임차료, ⑩ 보험료, ⑪ 복리후생비, ⑫ 보관비, ⑬ 외주가공비, 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⑮ 소모품비, ⑯ 여비·교통비·통신비, ⑰ 세금 및 공과금, ⑱ 폐기물처리비, ⑲ 도서인쇄비, ⑳ 지급수수료, ㉑ 환경보전비, ㉒ 보상비, ㉓ 안전관리비, 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㉕ 기타 법정경비

4) 일반관리비의 산정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내용과 같고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300억원 미만	5.5	5억 원~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5)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6)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공 식〉

$$\text{공사손해보험율} = \text{공사총원가} \times \text{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라. 학술용역 원가계산

1) 학술연구용역의 종류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용어의 정의

가)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라)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학술용어의 원가구성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가) 원가작성 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나) 인건비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경 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라) 일반관리비의 계상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마) 이윤

- ①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②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설계감리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국토해양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기술자 노임단가(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2)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0)
- 고용보험료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0)
- 폐기물처리비
 - 1)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2)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8)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0)
- 환경보전비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6(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2절 5-다-(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4)
- 안전관리비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4)
- 공사손해보험료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4.(손해보험)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9.

제Ⅶ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제도

가. 적격심사제도 의의

1) 도입배경

최저가낙찰제와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적절한 공사원가의 보장으로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95. 7.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함.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기술용역·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3) 적격심사 개념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등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4) 적용대상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

-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입찰 및 저가심사
- ※ 일괄·대안입찰, 건설기술공모 대상공사는 적격심사 제외

나.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낙찰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낙찰자가 된다.

- 제1요건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여야 한다.

- 제2요건 :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적격통과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92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95점

나) 입찰가격과 수행능력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낙찰자결정제도 변천과정

연도	개정일자	주요 개정 내용		
1951	'51.09.24.법	재정법 제정 ⇨ 최저가 낙찰제		
1960	'60.07. 법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0%)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90%)		
1961	'61.12.19.법	예산회계법 제정		
1962	'61.12.30.영	최저가 낙찰제 ⇨ 건설경기 호황		
1972	'71.12.31.영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0%) ⇨ 1차 석유파동, 적정원가 보장		
1975	'75.12.31.영	계약규정을 '장'으로 분리		
1976	'75.12.08.영	최저가 낙찰제 ⇨ 중동 건설특수		
1981	'81.02.28.영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5%) ⇨ 2차 석유파동		
1983	'83.03.28.영	최저가 낙찰제+저가심의[덤핑부실방지]	⇨ 30억 ⇨	제한적 평균가낙찰제[중소기업지원]
1984	'84.03.31.영	20억원 미만 부찰제		
1985	'85.04.01.영	10억원 미만 부찰제		
1992	'92.07. 영	사전심사제도(P.Q) 도입 ⇨ 신행주대교 붕괴		
1993	'93.02.22.영	최저가 낙찰제 객관적 기준 결여	⇨ 20억 ⇨	제한최저가낙찰제[85%, 중소기업보호]
	'93.09.23.영	기준 100억원으로 상향 ⇨ 덤핑방지, 최저가 축소 조정		
1994	'94.04.15.영	정부조달협정 체결 ⇨ 모로코 마라케시 협정, '97.발효		

1995	'95.01.05.법	국가계약법 제정		⇒WTO체제 대응
	'94.10. 성수대교, '95.6. 삼풍백화점 붕괴			⇒ 선진국 적격심사, 일(최저가+저가심사)
	'95.07.06.영	적격심사낙찰제	⇐100억⇐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88%)
1997	'96.12.31.영	기준 58.3억원으로 하향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90%)
1999	'98.02.02.영	기준 30억원으로 하향		⇒ 9.9. 모든 공사로 확대
2001	'01.01.01.영	최저가 낙찰제P.Q 1천억이상		⇒ '03. 500억원 이상 확대
2005	'05.08.04.법	지방계약법 제정		
2006	'05.12.30.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정	⇒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06.05.01.영	최저가 낙찰제	⇒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3) 낙찰자결정제도 금액기준

가) 공사

구분	일 반 공 사		재 해 복 구 공 사		주계약자
300억	최저가낙찰제+저가심사				
284억	적격심사낙찰제	P,Q심사 (발주자선택)			
	국제입찰 (15개시·도)				
200억	지역의무공동도급				
100억		지역제한	적격심사 낙찰제		적격심사 낙찰제
70억		실적제한			
30억					
7억					
5억		지역제한			
	지역제한				
	실적제한	실적제한			
3억					
2억		[종합]		[종합]	[종합·전문]
1억	[전기·통신]	[전문]	[전기·통신]	[전문]	
	[소방·기타]		[소방·기타]		
8천만	제한최저가 낙찰제		제한최저가 낙찰제		
2천만	수의계약		수의계약		

나) 용역

구분	기 술 용 역		일 반 용 역		비 고
5.0억 3.8억 2.5억 1.5억 1.0억 5천만 2천만	[설계·감리]	[안전진단점검]	[15개 시·도]	[시·군·구]	
	[시·도]국제입찰	[시·도]국제입찰	[시·도]국제입찰	지역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역제한		
	지역제한				
	지역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제한최저가낙찰제	제한최저가낙찰제	제한최저가낙찰제	제한최저가낙찰제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다) 물품제조·구매

구분	일반물품	조달물품	중소기업제품	비 고
5.0억	적격심사낙찰제	(MAS 2단계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 (고시품목)	협상에 의한 계약
	[시·군·구]지역제한			2단계입찰
3.8억	[시·도]국제입찰			희망수량경쟁입찰
2.5억	[시·도]지역제한			유사물품복수경쟁
1.0억	최저가낙찰제	자 체 발 주	(조합 추천)	영25조1항 1인수의
5천만	제한최저가낙찰제	제3자단가계약	5인이상 전자견적	G2B 곤란 2인수의
2천만	1인 수의견적	제3자단가계약	2인 수의견적	1인 수의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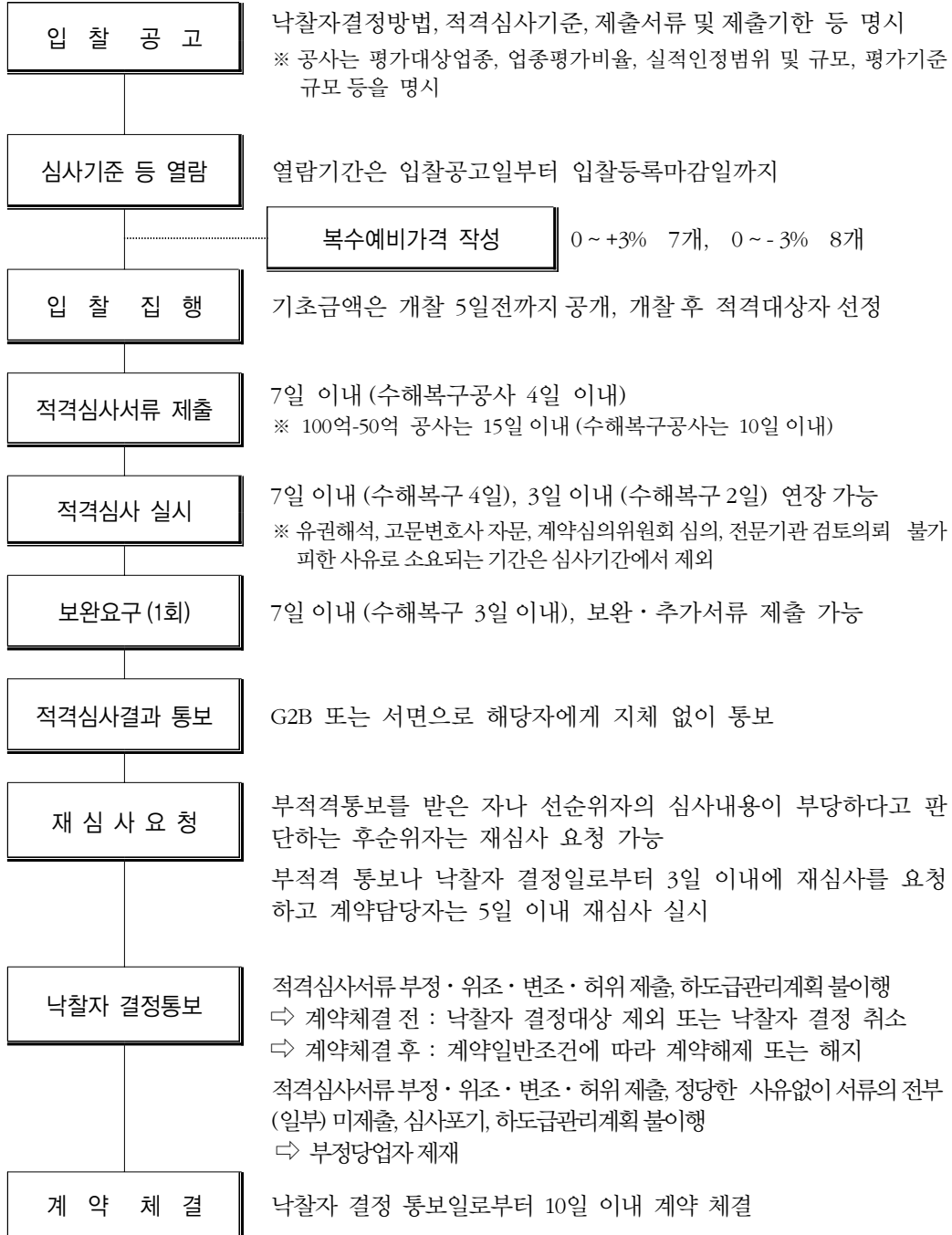
다. 적격심사요령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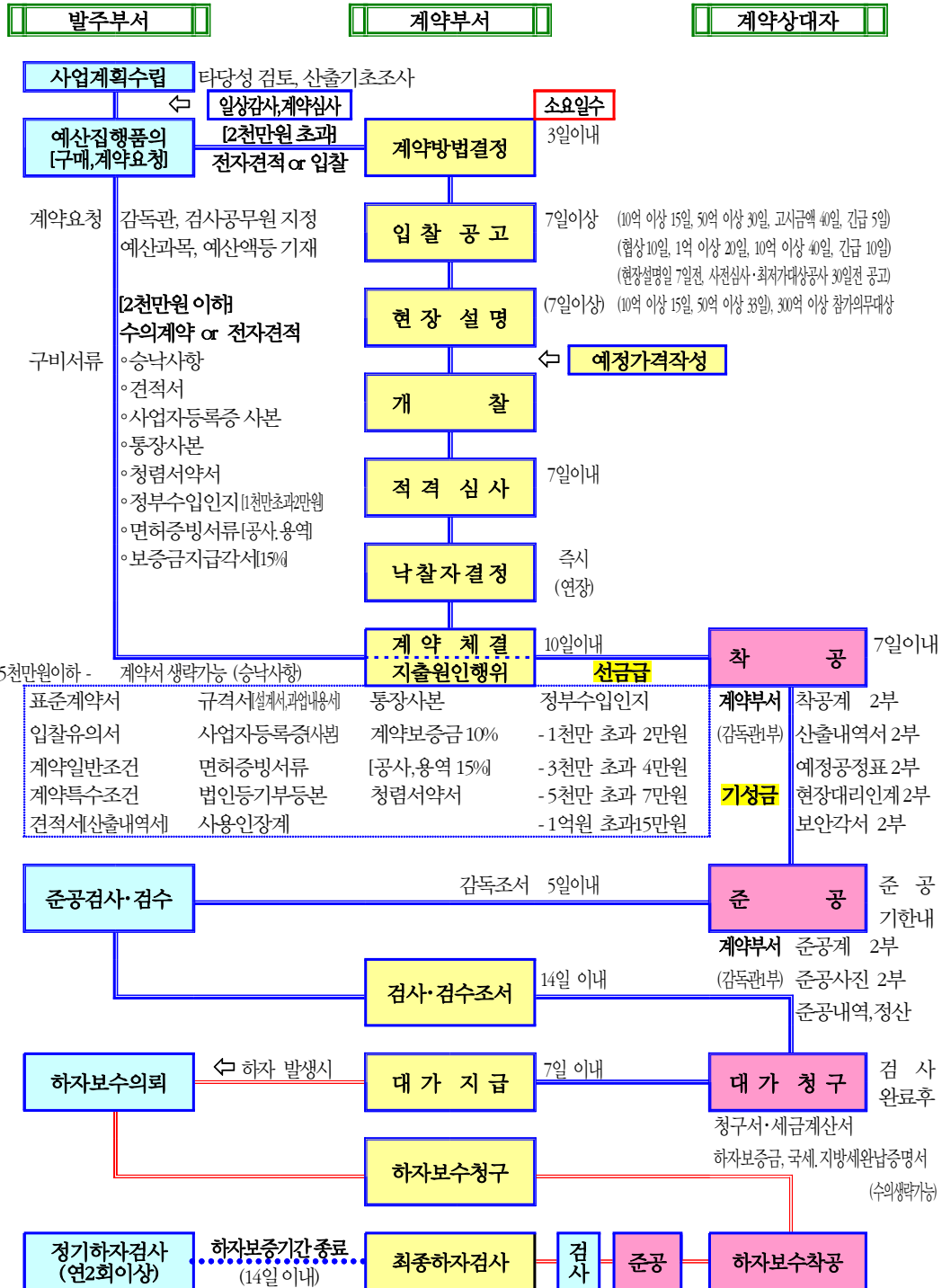
1) 적격심사 요령

가) 입찰공고에 실적인정범위, 실적인정규모, 평가기준규모, 평가대상업종, 업종평가비율, 서류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 나) 개찰 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 입찰가격 이외에 만점을 받더라도 낙찰이 불가능한 선순위업체는 자동탈락 통지한다.
-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다.
- 라)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마) 낙찰자 결정 결과는 G2B·서면으로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 위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사) 부적격 통보에 이의가 있는 자나 선순 위자 심사내용에 이의가 있는 후순위 자는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적격심사 절차





질의회신

〈질의〉 ○ ○○도에서 발주한 00시설공사의 적격 심사 시 1순위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낙찰 받아 계약 체결한 경우**에 1순위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업체로 적격 심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4”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 질의와 같이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적격 심사 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해당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후 발주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02. 11. 26. 입찰공고하고 동년 12. 3. 입찰을 실시한 시설공사에 있어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명의변경(11.21.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입찰 유·무효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등록마감일 당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입찰을 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무효인 입찰에 해당됨**.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낙찰 하한율을 잘못 적용하여 개찰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은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입찰 진행절차는?

〈답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각 평가기준별 가격평점산식에 의거 낙찰 하한율이 결정되며 낙찰 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통보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질의사항과 같이 **낙찰자 결정 이전에 가격평점산식(낙찰 하한율)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격평점산식(낙찰 하한율)을 재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입찰 공고 시 유의사항

1)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제한 금지

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민간실적, 해외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사례,

나) 1개의 면허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면허로 제한하는 경우 등

2) 입찰 공고 시 법령, 규칙, 예규 등 준수

법령, 규칙, 예규 등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자기 모순되는 입찰공고 금지

공고내용과 현장설명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고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 공고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평가기준규모 등을 명시

5)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공사 - 평가대상업종, 업종평가비율 등을 명시

마.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pm 3\%$ (국가 $\pm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0 $\sim$ +3%는 7개, 0 $\sim$ -3%는 8개)을 작성한다.

'93. 5월	5개중 2개 추천 산술평균금액	⇒	2-5개중 1개 추천
'95. 7월	복수예비가격 10개중 3개 추천한 산술평균금액		
'98. 2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 추천한 산술평균금액		

2) 입찰참가자가 4개의 예비가격을 추천한 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3)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 무자격자가 클릭한 복수예비가격이 선택되어 예정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예정가격은 유효하다.

4) 기초금액은 입찰집행 5일전까지 G2B,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예정가격 결정 흐름도 〉

- ①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견적가격 등으로 결정한다.



- 기초금액 작성
- ② ▶ 법령·회계예규 등에 규정된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계상된 사항을 가·감 조정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전문기관에 원가검토 가능)
- ▶ 조정 시 예정가격조서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③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G2B,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 기초금액의 $\pm 3\%$ (국가 $\pm 2\%$)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간의 폭을 최대한 확대하여 복수에
④ 비가격 15개를 작성한다.
⇒ 0% ~ +3%에서 7개 작성, 0% ~ -3%에서 8개 작성



-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씩 추첨하여 다 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를 산술평
⑤ 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입찰집행 후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바.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일 반 공 사							재해복구공사				주계약자방식			
총 합 공 사				-10억	-3억	-2억	2억미만		-10억	-3억	3억미만				
전 문 기 타	300억 ~	100억 ~	50억 ~		-1억		1억미만	70억 ~		-1억	1억미만	100억 ~	50억 ~	30억 ~	10억 ~
전 기 통 신 소 방	100억	50억	30억	-3억	-1.5억	1.5억미만		50억	-3억	-1.5억	1.5억미만	50억	30억	10억	2억
시 공 경 험	14	15	15	15	10	5	4.8	15	15	10	5	15	15	15	10
기 술 능 력	15														
경 영 상 태	15	15	15	15	10	5	5	15	12	8 (7.5)	7.5	15	15	15	10
시공여유율										- (0.5)	0.5				
접 근 성					+0.5	+0.5	0.2			- (+0.5)	+0.5				
신 인 도	±1.2	±1.2						±1.2				±1.2			
수 행 능 력 결 격 여 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하도급계획 적 정 성	12	10						10							
자 재 인 력 조달가격 적 정 성	14	10						7				10			
시 공 평 가												10			
영 업 활 동 기 간	(-5)	(-5)	(-5)					3	3	2	2				
실제영업활 동 여 부								-10	-10	-10	-10				
입 찰 가 격	30	50	70	80	90			50	70	80	85	50	70	70	80
적 격 통 과 점 수	92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낙찰하한율 (%)	79,995	85,495	86,745		87,745			85,495	86,745	87,745		85,495	86,745		87,745

※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 및 저가심사, 70억원 미만 특별재난선포지역의 재난복구공사는 해당지역(시·도) 영업활동 유무 및 영업기간 평가

※ 5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접근성 평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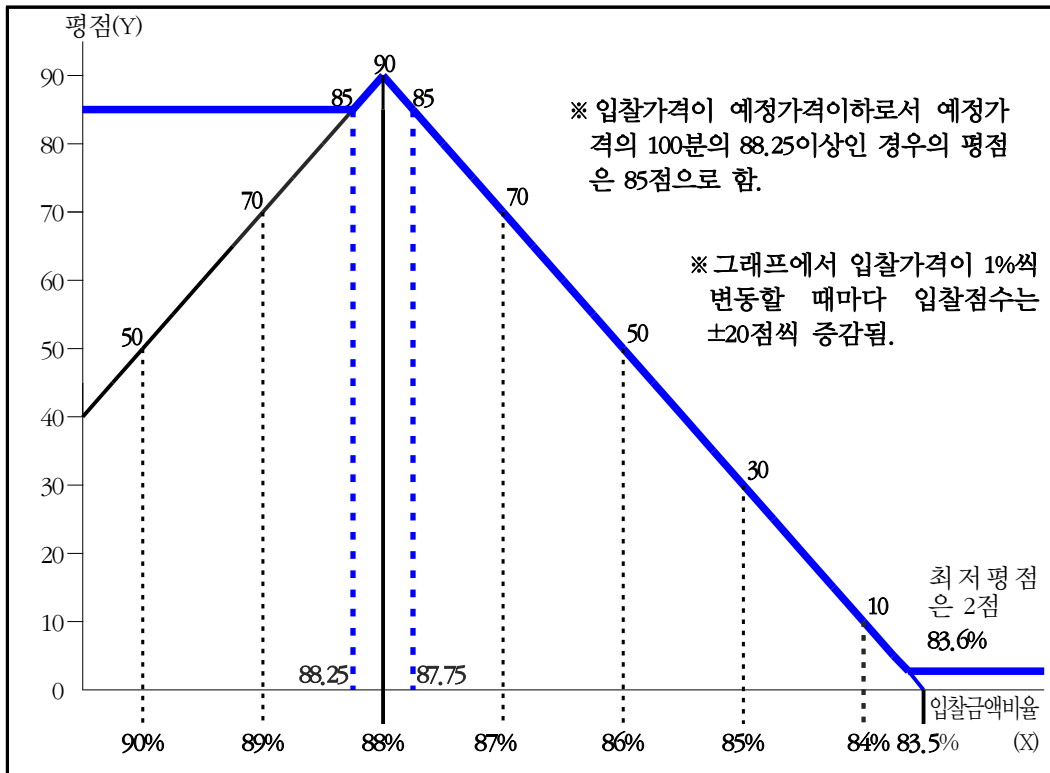
※ 5억원(3억원)미만 공사는 접근성 가점 부여(2억원 미만은 배점 평가), 시공여유율 평가

2. 입찰가격 평가방법

가. 공사규모별 입찰가격 평점산식

공사규모	평 점 산 식	비 고
100억이상	$30 - 1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1%당 1점 감점
100 ~ 50억	$50 - 2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1%당 2점 감점
50 ~ 10억	$70 - 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1%당 4점 감점
10 ~ 3억	$80 - 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1%당 20점 감점
3억미만	$90 - 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1%당 20점 감점

나. 추정가격 3억원 미만 입찰가격 평점산식그래프



3. 시공실적 평가방법

가. 공사규모별 평가방법

구 분	동일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
300억 미만 100억 이상 (14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평가 ■ 110%이상 (14,0) ■ 20%이상 (10,4) ■ 80%이상 (12,8) ■ 20%미만 (9,2) ■ 50%이상 (11,6)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업종별 추정가격×1.8) ■ 업종별점수= 실적계수×14×업종평가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100억 미만 50억 이상 (15점)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4.3점) ■ 100%이상 (14,3) ■ 20%이상 (10,0) ■ 70%이상 (12,9) ■ 20%미만 (8,6) ■ 40%이상 (11,4)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업종별 추정가격×1.7) ■ 업종별점수= 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재해복구] 70억 미만 50억 이상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0.7점)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업종별 추정가격×1.7)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실적계수 상한은 1 ※ 주계약자관리방식(공동계약)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 평가
50억 미만 30억 이상 (15점)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3.5점) ■ 100%이상 (13,5) ■ 20%이상 (9,5) ■ 70%이상 (12,2) ■ 20%미만 (8,1) ■ 40%이상 (10,8)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실적 = 해당업종 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1.5점)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업종별 추정가격×1.7)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일반공사 (15점) ■ 170%이상 (15,0) ■ 100%이상 (11,0) ■ 150%이상 (13,0) ■ 100%미만 (9,0)
	※ 주계약자관리방식: 1.5배 실적		◎ 전기·통신·소방·전문·설비·기타 (15점) ■ 80%이상 (15,0) ■ 60%이상 (11,0) ■ 70%이상 (13,0) ■ 60%미만 (9,0)

구 분	동일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																				
30억 미만 10억 이상 (15점) [전문기타] 3억 이상 [재해복구] 50억 미만 10억 이상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3.5점) ■ 100%이상 (13.5) ■ 20%이상 (9.5) ■ 70%이상 (12.2) ■ 20%미만 (8.1) ■ 40%이상 (10.8)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실적 = 당해업종 등급점수× 업종 평가비율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1.5점)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업종 별 추정가격×1.5)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 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일반공사 (15점) ■ 150%이상 (15.0) ■ 130%이상 (11.0) ■ 140%이상 (13.0) ■ 130%미만 (9.0) ● 전기.통신.소방.전문.설비.기타 (15점) ■ 80%이상 (15.0) ■ 60%이상 (11.0) ■ 70%이상 (13.0) ■ 60%미만 (9.0)																				
10억 미만 3억 이상 (10점) [전기.통신] 1.5억이상 [전문.기타] 1억이상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9.0점) ■ 100%이상 (9.0) ■ 20%이상 (6.3) ■ 70%이상 (8.1) ■ 20%미만 (5.4) ■ 40%이상 (7.2)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실적 = 당해업종 등급점수× 업종 평가비율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1.0점)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업종 별 추정가격×0.7)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업종평가 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table><tr><th>구 분</th><th>A등급</th><th>B등급</th><th>C등급</th><th>D등급</th></tr><tr><td rowspan="2">평가 비율</td><td>실적인정기간 4년이상</td><td>70%이상</td><td>60%이상</td><td>50%이상</td><td>50%미만</td></tr><tr><td>실적인정기간 4년미만</td><td>60%이상</td><td>50%이상</td><td>40%이상</td><td>40%미만</td></tr><tr><td>점 수</td><td>10.0</td><td>9.0</td><td>7.0</td><td>6.0</td></tr></table>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3억 미만 2억 이상 (5점) [전기.통신] 1.5억 미만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5.0점) ■ 100%이상 (5.0) ■ 20%이상 (3.7) ■ 70%이상 (4.6) ■ 20%미만 (3.2) ■ 40%이상 (4.1)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실적 = 당해업종 등급점수× 업종 평가비율																				
		<table><tr><th>구 분</th><th>A등급</th><th>B등급</th><th>C등급</th><th>D등급</th></tr><tr><td rowspan="2">평가 비율</td><td>실적인정기간 4년이상</td><td>60%이상</td><td>50%이상</td><td>40%이상</td><td>40%미만</td></tr><tr><td>실적인정기간 4년미만</td><td>50%이상</td><td>40%이상</td><td>30%이상</td><td>30%미만</td></tr><tr><td>점 수</td><td>5.0</td><td>4.0</td><td>3.0</td><td>2.0</td></tr></table>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2억 미만(4.8점) [전문.기타]1억 미만		● 점수= 2억원 이상 시공경험 평가점수 × 4.8/5																				

※ 종합공사 30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시공능력평가액이 입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공비율을 다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 지역 업체는 3배까지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나.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실적평가방법

1)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 물량)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방법은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실적인정규모 이상 준공실적을 합산한 실적

(최근 10년 이내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일종류 실적 ÷ 평가기준규모) × 100%
⇒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평가점수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참여 지분율(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다.

라) 공동수급체 실적 = (최근 10년간 각 구성원 동일 실적 × 각 구성원 시공비율)

※ 다만,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한다.

질의회신

〈질의〉 최근 개정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일정금액 이상인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의 2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당해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등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2가지 시공경험평가방법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시공실적 제한은 금액이 아닌 규모로 제한하였을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실적제한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제한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는 규모 또는 양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규모 또는 양으로 정하기 곤란한 입찰은 금액으로 제한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

2) 실적인정범위

가) 실적인정범위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로서 그 범위는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다)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동일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마) 동일구조물(체)란 상호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1건의 구조물을 말한다.

질의회신

〈질의〉 ○ △△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농업용수개발사업 저수지 신설 단일건 제당고 H=24m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으며, 적격 심사 시 평가기준규모도 농업용수개발사업 저수지 신설 단일건 제당고 H=24m를 100%로 적용한다고 공고 하였던 바,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적을 【저수지(식수전용댐) 신설공사 제당고 H=32.4m, L=120m】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발주처에서는 저수된 물의 용도(농업용수/식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1>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물량)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적이란 명칭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용도 또는 같은 종류의 실적을** 의미하는 것임.

3) 실적증명

가)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실적증명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서면조사나 현장 실사한다.

나) 현재 적용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발급된 증명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질의회신

〈질의〉 공동도급계약의 실적인정 방법에서 과거에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실제 시공한 내용대로(A사 : 도로 10km, B사 : 교량1km)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가 A사가 교량 부분의 실적이 필요하여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와는 달리 시공비율대로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 I-3-나-②-⑥)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구성원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부분(예:구간·공종)별로 나누어 시공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날인하고 발주기관에서 증명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실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실적증명서가 발급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같은 실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실적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2개의 실적 중 하나는 실제 시공내용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된 증명서에 해당될 것임.

4) 실적인정방법

유 의 사 항

- **평가기준 규모** 및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평가기준 규모**는 당해 발주공사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란 ?

- (1)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을 말한다.
- (2) 당해공사와 동일한 실적을 구분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당해 공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실적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명칭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용도(종류)의 실적을 의미함. 시민회관을 발주하는데 구민회관이나 군민회관은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용도의 실적범위에 해당한다.

질의회신

- 〈질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하수관거, 우·오수관거 또는 차집관로공사(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연계된 복합공정의 경우 차집관로만 인정하고 구획정리,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공사와 연계된 하수 및 우·오수관거는 제외)로서 관경 $\phi 250\text{mm}$ 이상 연장 20km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상기와 같은 제한은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명칭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이 경우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가 현재 발주하는 하수관거와 실질적으로 같은 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 확인)에 따라 실적인정 유·무를 판단해야 함.
- 예)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와 연계된 하수관거가 현재 발주하는 하수관거와 동일하다면 실적인정이 가능함

나) 인정실적과 인정되지 않은 실적이 혼재된 경우 심사방법

동일 종류의 실적이 1건의 실적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실적인정방법은 1건의 실적에 인정되는 실적규모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로실적의 경우 연장 5km를 폭 8m 이상으로 실적인정범위를 정한 경우 총 5km 이상 폭 8m 이상은 실질적으로 인정범위에 해당되나 중간에 폭 8m가 안된 부분이 혼재하여 있다면 중간부분에 인정규모에 미달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인정부분을 합산한 연장규모가 인정규모 이상이라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질의회신

- 〈질의〉 ○ 댐 조성에 의한 수원지 및 취정수 시설물에 대한 실적제한 입찰시 실적인정규모가 제당길이 100m 이상, 제당높이 20m 이상인 단일 시공실적일 것
 - 갑설 : 제당길이 100m 이상, 높이 20m 이상인 것만 유효한 단일실적임
 - 을설 : 제당길이 100m 이상, 높이 일부만 20m 이상인 것은 실적불인정
- 〈답변〉 ○ 귀 질의는 발주자가 요구한 제당길이 100m 이상, 제당높이 20m 이상은 동시에 충족해야 할 것이며, 제당 높이에 관한 사항은 설계서(도면 등 포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
 ※ 발주자가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1배 이내여야 함.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는 0.7배 이내)
- 〈질의〉 ○ 온실 신축공사에 따른 『온실 신축공사(기초금액 145,000천원)』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단일공사 유리온실 180㎡ 이상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공사입니다.
 ○ 1순위업체가 제출한 실적(○ ○ 신축 공사 중 철물공사) 중에 일부분이 유리온실 설치(200㎡)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유리온실 부분을 단일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 제5조 제2호에 “단일공사”란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구조물로서 전체 공사내용 중 인정되는 실적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하여 **단일공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임.**

다) 공동도급계약으로 시공한 실적의 인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실적에 공사참여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예외)

- (1) 각 구성원의 실적 인정시 과거에 공동이행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을 받은 공사로서 출자비율의 범위 내에서 실제 시공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의하여 날인하고 발주자가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실제 시공한 부분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실적증명서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발급되어야 한다)

예 시

실제 시공한 부분의 실적인정

- 교량과 도로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한 경우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A는 교량, B는 도로를 시공하였다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적인정 가능
- 이 경우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날인하고 발주기관에서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 주차장, 기계실 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으로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 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예 시

기본요소 미만의 의미?

- 교량공사(L=100m, 경간 50m)를 공동이행방식에 의거 A사(60%)와 B사(40%)가 시공한 경우
 - A사의 실적은 지분율이 60%이므로 L=60m, 경간 50m이며
 - B사의 실적은 지분율이 40%이므로 L=40m, 경간 50m이므로
 - B사의 경우 시공규모가 L=40m로서 기본요소(경간 50m)미만이므로 실적 불인정
- ※ **경간**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를 말함.

- (3)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실적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이 경우 규모에 의한 시공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규모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비율만큼 물량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예 시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의 평가

○ 00시에서 입찰공고시 실적인정규모 $L=10\text{km}$, $B=20\text{m}$ 이상 도로공사실적으로 제한하여 적격심사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 A사와 B사가 60% : 40%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L=12\text{km}$, $B=20\text{m}$ 의 도로공사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50% : 50%로 입찰 참가한 경우
 - 과거 A사의 실적은 $L=7.2\text{km}$, $B=20\text{m}$ 이고, 실적 평가시 다시 50%를 곱하여 $L=3.6\text{km}$, $B=20\text{m}$ 가 됨.
 - 과거 B사의 실적은 $L=4.8\text{km}$, $B=20\text{m}$ 이고, 실적 평가시 다시 50%를 곱하면 $L=2.4\text{km}$, $B=20\text{m}$ 가 됨.

(6) 주계약자 관리방식 실적인정

- (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 하여 시공한 경우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나)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다)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자신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 계약형태를 말한다.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대상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제외대상 :
 - ① 일반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 발주하는 경우
 - ②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

라) 하도급 부분에 대한 실적인정

- (1)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 (2) 철강재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97.7.10. 이전에 철강재 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액을 당해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며 규모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규모에 곱하여 산정한다.
- (3)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업자에게 전체실적을 인정한다.
- (4)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수급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질의회신

- 〈질의〉 종합건설업자가 과거에 도급받은 상수도시설공사 중 일부분(제당 시공부분)을 종합건설업자에게 100% 하도급을 주었고 제당 높이로 시공실적을 제한한 입찰공사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한 내용의 실적인정방법은 ?
- 〈답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I-3-나-③-㉠에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때에는 신규 발주되는 입찰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인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수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한다.

질의회신

-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도교 가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간장 30m 및 3m 이상의 스틸박스 교량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했는데,
- 적격심사 해당업체에서 「도로 확·포장공사」의 3차분에 포함된 스틸박스 교량공사 실적을 제출했는데 동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 2차, 3차분까지는 준공이 되었고 현재 4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차분 및 3차분 공사의 공정을 보면 대교 공정이 있는 바, 동 공사는 연장이 300m로서 하부공(교대2기, 교각5기)은 기 완료되었고, 상부공은 강교제작, 강교 거치만 완료된 상태로서 슬러브, 난간 등은 현재 4차분 공사에서 시공 중에 있음. 이 업체에서 제출한 교량실적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의 실적 인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 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

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최종 연차공사가 준공된 경우 연차별 단위구조물(체) 전체를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질의회신

- 〈질의〉 ○ ○○도 영어문화원에서 발주한 영어마을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단일공사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했는데, 당사가 보유한 실적은 종합 강의동 및 지하주차장, 호텔관광대학 신축공사로서 동 공사는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구조물이며 연차별로 계약 준공한 경우인데 이를 합산하여 단일실적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공사를 준공한 경우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회신

- 〈질의〉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있어 동일인이 연차적으로 발주한 동일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준공한 실적을 1건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동일구조물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한 경우 최종 연차계약이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경우 공사 전체 구조물을 1건의 실적으로 보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동 예규 별첨양식2, 주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아) 면허보유 유·무에 따른 실적인정

- (1) 공동도급 또는 단독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한다.
- (2)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질의회신

- 〈질의〉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낙찰예정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완료하였으나, 낙찰예정업체에서 제출한 『00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의 실적은 2000. 3. 20.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25%)으로 참여하여 준공한 실적과 관련하여
- 낙찰예정업체는 계약당시(2000. 3. 20)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없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하고 시공에 참여한 후 2001. 3. 1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를 준공하였는 바, 동 실적을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 참고 : 시공실적 가운데 산업환경설비공사 업종(1,960백만원)의 공정은 2차분 이후에 시공한 실적임(2001. 4. 20 ~ 2003. 4. 19)
-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도급 또는 단독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하며,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사항과 같이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해당면허(등록) 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라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과 관련된 제반서류(공정표 등)를 검토하여 발주처에서 판단·처리할 사항임.

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 (1)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 평가한다.
 -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2)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1)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부분은 당초 시공비율로 실적을 산정하되, 변경된 날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공동도급 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하며,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2)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 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카)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평가 자료는 평가기준일인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10년 이내 최종 준공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 평가한다.

※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하여 날짜를 계산한다.

질의회신

〈질의〉 ○ 최초 1992년도에 △△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년차별로 계약하여 준공하는 계속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도로가 △△시 군도에서 ○○도 지방도로 승격되어 1995년에 △△시에서 ○○도 종합건설사업소로 공사가 이관되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한 도로공사입니다. 이 경우 단일도로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공 중 도로관리기관의 변경으로 발주처가 변경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1건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시설공사적격심사 실적 심사 시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평가할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 용도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총별 세부용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1>의 규정에 의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최근 10년간 실적은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범위)을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용도 입찰공고의 실적인정범위,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내용이 동일한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의 평가방법 (업종별평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실적평가방법)

가)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증명하는 최근 3년간의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협회에 1회계연도 단위로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하되 신고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 협회에서 발급받는 시공실적의 인정기간, 실적인정 금액단위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2) 종합공사 10억원 미만 실적의 합산평가 (최근 3년 이상 실적평가방법)

협회에서 확정된 업종별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의 기간 중 준공이 완료된 실적과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반기의 경우에는 4년 이상(최대 4년 6개월)실적으로 평가
- 하반기의 경우에는 4년 미만(최대 4년)실적으로 평가

3)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은 실적의 평가방법

가) 협회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동 평가방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 문화재공사)

나) 협회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협회에 시공실적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업체의 시공실적을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시공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질의회신

〈질의〉 ○ 적격심사 중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 금액으로 평가할 경우 연차별 준공실적으로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 중인 경우 차수별 준공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II-3호의 규정에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간의 기간 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여러개의 업종이 복합되는 공사의 평가방법

가)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동일법령내 해당하는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전기공사와 건축·조경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건축·조경공사가 주공사에 해당하면 전기업종은 제외하고 건축·조경공사만 3년간 실적 평가

- 건축, 조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 } 서로 다른 법령에 해당됨

나) 동일법령 내 복합 업종인 경우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되 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비율을 공고에 명시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업종과 구성원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예) A업체 토목 30%, B업체 조경 30%, C업체 소방 30%로서 소방공사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A업체 50%, B업체 50%가 됨.

라) 평가대상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가방법

각 업종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한다.

(A업종 평가점수 × 평가비율) + (B업종 평가점수 × 평가비율)

※ 단위업종 평가점수 = 해당업종/평가기준금액×해당업종 평가비율

※ 주업종만 평가하는 경우 = 해당업종실적/평가기준금액×해당업종 평가비율

※ 평가기준금액 = 추정가격 × R (1.8 ~ 0.7)

5)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사의 평가방법

가)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인정기준은 “세부기준”〈별표 1〉Ⅱ를 준용한다.

- 나) 당해 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 다)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는 시·도에서 업체 분포현황 등을 감안하여 5점의 범위 내에서 상호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를 5점으로 배점 조정하는 경우 :
경영상태 15점→20점, 시공경험 15점→10점 등
- 라) “시공평가 결과”(「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는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하 “동일 실적”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경우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 실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 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 마)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기 본 원 칙 〉

- ◇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적격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한다.
- ◇ 기타 낙찰자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재심사,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0절 그밖에 사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세부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 점수산정 방법

- ◇ 점 수 = 업종별 점수의 합
- ◇ 업종별점수 = 실적계수 × 배점한도 × 업종평가비율
- ◇ 실적 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 (업종별추정가격×차등계수)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 ※ 업종평가비율은 당해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예 시 1

토목+조경공사의 3년간 실적평가(실적계수에 의한 평가)

추정가격이 50억원인 일반 공사이고 A사가 50%, B사가 50%인 공동이행방식으로 업종 평가비율이 토목 40%, 조경 60%인 경우

- A사 3년실적(토목 60억원, 조경 40억원), B사 3년실적(토목 40억원, 조경 40억원)

▶ 토목업종(40%) 평가

$$(A사\ 60억원 \times 0.5) + (B사\ 40억원 \times 0.5) = 50억원(토목실적)$$

$$\Rightarrow 50억원 \div \{50억원(추정가격) \times 40\%(토목비율) \times 1.7(차등계수)\} = 1.47058$$

$$\Rightarrow \text{실적계수는 1을 초과하면 1로 인정 } (1.47 \Rightarrow 1.0)$$

$$\therefore 1(\text{실적계수}) \times 15(\text{배점한도}) \times 40\%(업종평가비율) = 6\text{점}$$

▶ 조경업종(60%) 평가

$$(A사\ 40억원 \times 0.5) + (B사\ 40억원 \times 0.5) = 40억원(조경실적)$$

$$\Rightarrow 40억원 \div \{50억원(추정가격) \times 60\%(조경비율) \times 1.7(차등계수)\} = 0.7843$$

$$\Rightarrow \text{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 0.78$$

$$\therefore 0.78(\text{실적계수}) \times 15(\text{배점한도}) \times 60\%(업종평가비율) = 7.02\text{점}$$

$$\text{실적점수} = 6 + 7.02 = 13.02\text{점}$$

예 시 2

토목 + 조경공사의 3년실적 (실적계수에 의한 평가)

추정가격이 50억원인 일반 공사이고 A사 60%, B사 40%인 공동이행방식으로 업종평가 비율이 토목 82%, 조경 18%인 경우

- A사 3년간 실적(토목 60억, 조경 40억), B사 3년간 실적(토목 40억, 조경 40억원인 경우)

(1) 토목·조경을 모두 평가하는 경우

▶ 토목업종(82%) 평가

- (A사 60억원×0.6) + (B사 40억원×0.4) = 52억원(토목실적)

⇒ 52억원 ÷ {50억원(추정가격)×82%(토목비율)×1.7(차등계수)} = 0.746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75

∴ 0.75(실적계수)×15(배점한도)×82%(업종평가비율) = 9.225점

▶ 조경업종(18%) 평가

- (A사 40억원×0.6) + (B사 40억원×0.4) = 40억원(조경실적)

⇒ 40억원 ÷ {50억원×18%(조경비율)×1.7(차등계수)} = 2.6143점

⇒ 실적계수는 1을 초과하면 1로 인정(2.614 ⇒ 1.0)

∴ 1(실적계수)×15(배점한도)×18%(업종평가비율) = 2.7점

실적점수 = 9.23 + 2.7 = 11.93점

(2) 주업종(토목 82%)만 평가하는 경우

▶ 시공비율을 주업종만으로 환산하여 산정 - (업종평가비율) 토목 100%

▶ 평가

(A사 토목실적 60억원×0.6) + (B사 토목실적 40억원×0.4) = 52억원

= 52억원 ÷ 추정가격(50억원)×82%(토목비율)×1.7(차등계수) = 0.7460(실적계수)

= 0.75(실적계수)×15(배점한도)×100%(업종평가비율) = **11.25점**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점수산정 방법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 = 업종등급점수 × 업종평가비율

※ 업종평가비율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예 시 3

단독입찰로서 토목+조경공사의 3년간 실적평가(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초금액 33억원(조경 22억원, 토목 11억원)으로서 추정가격 30억원(조경 20억원, 토목 10억원)인 일반 공사의 경우 실적평가

- 3년실적 : 조경 80억원, 토목 10억원

▶ 평가대상 업종별로 업종평가비율 산출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

- 조경 : 20억/30억 = 66.67%(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토목 : 10억/30억 = 33.33%

▶ 업종별 평가

- 조경 : 30억원(추정가격) × 66.67%(업종별 평가비율) = 2,000,100,000원

· 80억원(조경실적) ÷ 2,000,100,000원 × 100% = 399.98%

· 399.98% = 15점 (170% 이상은 A등급으로서 15점)

∴ 15점 × 66.67% = 10.0005점

- 토목 : 30억원(추정가격) × 33.33%(업종별 평가비율) = 999,900,000원

· 10억원(조경실적) ÷ 999,900,000원 × 100% = 100.01%

· 100.01% = 11점(100% 이상은 C등급으로서 11점)

∴ 11점 × 33.33% = 3.6663점 = 3.6663점

실적점수 = 10 + 3.67 = 13.67점

예 시 4

분담이행방식으로서 토목+조경공사의 3년간 실적평가(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초금액 33억원(조경 22억원, 토목 11억원)으로서 추정가격 30억원(A사 조경 20억원, B사 토목 10억원)인 일반 공사(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실적평가

- 3년 실적 : A사 조경 80억원, B사 토목 10억원

▶ 평가대상 업종별로 업종평가비율 산출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

- A사 조경 : $20\text{억}/30\text{억} = 66.67\%$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B사 토목 : $10\text{억}/30\text{억} = 33.33\%$

※ 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평가

- 조경 : $30\text{억원(추정가격)} \times 66.67\%(\text{업종별 평가비율}) = 2,000,100,000\text{원}$

· $80\text{억원(조경실적)} \div 2,000,100,000\text{원} \times 100\% = 399.98\%$

· $399.98\% = 15\text{점}$ (170% 이상은 A등급으로서 15점)

∴ $15\text{점} \times 66.67\% = 10.0005\text{점}$

- 토목 : $30\text{억원(추정가격)} \times 33.33\%(\text{업종별 평가비율}) = 999,900,000\text{원}$

· $10\text{억원(조경실적)} \div 999,900,000\text{원} \times 100\% = 100.01\%$

· $100.01\% = 11\text{점}$ (100% 이상은 C등급으로서 11점)

∴ $11\text{점} \times 33.33\% = 3.6663\text{점}$

실적점수 = $10 + 3.67 = 13.67\text{점}$

라. 지역가산 평가방법

- 1) 지역제한 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를 제외한 공사 중에서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참여할 경우에는 가산 평가한다.

①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 현장 소재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 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②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지역 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지역 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 15%이상 20%미만	2%	㉠ 7.5%이상 12.5%미만	2%
㉡ 20%이상 25%미만	4%	㉡ 12.5%이상 17.5%미만	4%
㉢ 25%이상 30%미만	6%	㉢ 17.5%이상 25%미만	6%
㉣ 30%이상 35%미만	8%	㉣ 25%이상	8%
㉤ 35%이상 40%미만	10%		
㉥ 40%이상 45%미만	12%		
㉦ 45%이상 50%미만	14%		
㉧ 50%이상	16%		

※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4.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공사규모별 심사항목 및 배점

공사규모 심사항목	총 합 공 사 전 문 기 타	300억 ~ 100억	100억 ~ 50억	50억 ~ 30억	-10억 -3억	-3억 -1억	-2억 1.5억미만	2억미만 1억미만
	전 기 통 신 소 방							
부 채 비 율	부 채 자 기 자 본	8	7	7	8	5	5	5
유 동 비 율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8	7	7	7	5	5	5
차입금의존도	차 입 금 총 자 산	4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 업 이 익 이 자 비 용	4						
매 출 액 순 이 익 율	순 이 익 매 출 액	3						
총자산순익율	순 이 익 총 자 산	1						
총자산대비영업 현금흐름비율	현 금 흐 름 총 자 산	2						
자 산 회 전 율	매 출 액 (기초+기말)/2	3	5					
영 업 기 간		2	2	1				
평 점		15/35	15/21	15	15	10	5/10	5/10

※ 재해복구공사 : 50-10억 → 12/15점, 10-5억(3억) → 8/10점, 5억(3억)미만 → 7.5/10

나. 공통사항

- 1)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재무30%+신용70%)”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평가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와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100억원 미만 공사의 업종은 2011. 7. 1.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2)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평가방법을 미리 선택하여 제출한다.
-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하는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공사규모 \ 심사항목	종합공사	300억 - 100억	100억 - 50억	50억 - (30억)	(30억) - 10억			10억미만
	전문기타						-3억	3억미만
부 채 비 율	50%미만	8.0	7.0	7.0	8.0	100%미만	8.0	5.0
	75%미만	7.2	6.3	6.3	7.2	130%미만	7.2	4.5
	100%미만	6.4	5.6	5.6	6.4	160%미만	6.4	4.0
	125%미만	5.6	4.9	4.9	5.6	190%미만	5.6	3.5
	125%이상	4.8	4.2	4.2	4.8	190%이상	4.8	3.0
유 동 비 율	150%이상	8.0	7.0	7.0	7.0	100%이상	7.0	5.0
	120%이상	7.2	6.3	6.3	6.3	90%이상	6.3	4.5
	100%이상	6.4	5.6	5.6	5.6	80%이상	5.6	4.0
	70%이상	5.6	4.9	4.9	4.9	70%이상	4.9	3.5
	70%미만	4.8	4.2	4.2	4.2	70%미만	4.2	3.0
차 의 전 노 금	50%미만	4.0						
	75%미만	3.6						
	100%미만	3.2						
	125%미만	2.8						
	125%이상	2.4						
영 업 이 의 자 대 비 배 율	150%이상	4.0						
	100%이상	3.6						
	50%이상	3.2						
	10%이상	2.8						
	10%미만	2.4						
매 순 이 익 율	100%이상	3.0						
	75%이상	2.7						
	50%이상	2.4						
	10%이상	2.1						
	10%미만	1.8						
총 순 자 의 산 율	150%이상	1.0						
	100%이상	0.9						
	50%이상	0.8						
	10%이상	0.7						
	10%미만	0.6						
총 대 영 업 현 비 호 영 업 현 비 율	150%이상	2.0						
	120%이상	1.8						
	100%이상	1.6						
	70%이상	1.4						
	70%미만	1.2						
자 회 전 산 율	150%이상	3.0	5.0					
	100%이상	2.7	4.5					
	50%이상	2.4	4.0					
	10%이상	2.1	3.5					
	10%미만	1.8	3.0					
영 업 기 간	10년 이상	2.0						
	5년 이상	1.8	2.0					
	3년 이상	1.6	1.9	1.0				
	3년 미만	1.4	1.8	0.9				
평 점		15/35	15/21	15	15		15	10

다.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년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한다. 일반건설업의 경우 법인의 회계연도말 기준 재무제표를 4월15일까지 관련협회에 제출하여 평균비율 작성 후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감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한다.
- 4)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 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合)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 5)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다만,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하며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 6)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않는다. 다만, 합병 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A사·B사(정기결산서가 있는 업체), C사(신설법인) : A, B, C사가 합병하는 경우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 A사, B사의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C사 제외)

-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 8)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 9)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아’목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 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한다.

10) 평가 산식

산 식 도 해			
$\frac{\text{당해업체의 해당항목비율}}{\text{업종전체의 심사항목평균비율}} \times 100(\%) =$	M%	=	M(%)에 해당되는 등급별 해당평점을 부여

경영상태평가 시 유의할 사항

- ① 평가결과 부(-)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②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③ 업종평균비율이 부(-)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 ④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평가한다.
※ 총자산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 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1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모든 공사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모든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경영상태 보완이 불가능

예 시

추정가격이 60억원인 일반 공사에서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이 A업체 60%, B업체 40% 인 경우

- A업체 자기자본 100,000원, 부채 80,000원
 - B업체 자기자본 60,000원, 부채 120,000원이고
 - 업종평균부채비율은 300%로 가정할 경우
 - ▲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최근년도 부채비율 배점한도 (7점)
 -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경영상태 평가점수 (15/21점)
- ⇒ 부채비율 7점, 유동비율 7점, 자산회전율 5점, 영업기간 2점

-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

를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 A업체의 부채비율 $\Rightarrow 80,000/100,000 \times 100(\%) = 80\%$

- B업체의 부채비율 $\Rightarrow 120,000/60,000 \times 100(\%) = 200\%$

▶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로 평가하므로

- A업체는 $80/300 \times 100(\%) = 26.66\%$

B업체는 $200/300 \times 100(\%) = 66.66\%$ 이므로

- A업체는 7점(A등급, 50%미만)

B업체는 6.3점(B등급, 75%미만)이므로

▶ 공동수급체 부채비율 평가점수 $= (7 \times 0.6) + (6.3 \times 0.4)$
 $= 4.2 + 2.52$
 $= 6.72\text{점}$

라. 비재무항목의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 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의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나)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 평가

가) 신용평가방법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공사·용역·물품 공통 적용)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산림조합, 국·공립대학 등

신용평가등급						
① 회사체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100억 이 상	5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AA+,AA0,AA-	A1	①의 AA+,AA0,A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A0	A20	①의 A0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B0	A30	①의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BB0	B+	①의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	B0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20.0	14.0	9.0
B+,B0,B-	B-	①의 B+,B0,B-에 준하는 등급	34.0	19.0	13.0	8.0
CCC+이하	C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16.0	10.0	6.0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협회가 없거나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100억원 미만 공사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2011. 7. 1. 입찰공고분부터 종합평가방법(재무평가 30% + 신용평가 70%)으로 평가함.

3)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 당해공사 공종과 무관하게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면허)중 가장 오래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을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 평가한다.

○ 공사의 경영상태평가 기준연도에 대하여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함.

○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종합건설회사가 전기관련 공사입찰의 적격심사대상 순위가 된 경우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적용 기준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경영상태 평가시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공사가 전기설비공사인 경우 업종평균부채비율은 전기 분야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기타 심사항목 평가방법

가. 접근성 평가 (5<3>억원 미만 공사)

- 1) 추정가격 2억원(전문·설비는 1억원)미만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 또는 인접한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에 0.2점을 부여한다. (시·도 발주공사 포함)
- 2)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
 - 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시·군 및 인접 시·군에 관련등록 소지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 해당 발주 시·군에 새로 설립된 업체는 0.5점(2억원 미만은 0.2점)을 가산 부여한다.
 - 다) 공사현장이 자치구, 광역시내 군인 경우 입찰참가자 모두 0.2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평가 (50억원 이상 공사)

- 1) 기본원칙
 - 가) 신인도는 평가항목 배점한도 이외에 해당업체의 가·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행능력 배점한도(만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고, 감점인 경우는 감점된 만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2) 신인도 평가 종류 및 평가방법
 - 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 (1) 최근 1년간 협력관계 평가결과 : +3.0(평점 90점이상)~+0.5(평점 60~70점)

일반·전문건설업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에 대하여 평가해서 시공능력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 시행규칙 제40조)

-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
 - (가) △3(벌금이상, 영업정지, 면허취소) ~ △0.5(3천만원 미만 과징금)
 - (나) 과태료 등 경미한 행정제재는 제외
-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 과징금 이상 처분 : △1(2회 이상)~△0.5(1회)
 감점처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는 감점대상이 아님.
-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 △3(과징금 3회이상) ~ △1(과징금 부과처분)
- (5) 최근 1년간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 건당 0.2 감점 (△2 ~ △0.2)
- (6)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 가중평균보다 낮은 업체
 - +2.0(평균환산재해율 0.4배이하) ~ +0.5(평균환산재해율 1배이하)

나) 심사항목 적용기준

- (1)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 (3호) 환경관련법령 위반만 적용
- (2) 전문공사 : (2호) 건산법 위반, (3호) 환경관련법령 위반만 적용

신인도 평가시 유의할 사항

- ①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 ②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刑)이 확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 이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형(刑)이 최종 확정된 날을 기준시점으로 적용한다.
- ③ 1개 업체가 동일항목 내에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 ④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보아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 (100억원 이상 공사)

1) 평가항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 고
기술자보유상황	경력(3,60이상,10점),일반(15인 이상,14점)	24	선택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신기술개발(2건,0.5점), 신기술활용(60억이상,1.5점)	2	미적용
시 공 평 가 결 과	시공평가점수(90점이상,3점)	3	선택
시공경험축적정도	시공경험축적(2년이내 시공실적,2점)	2	미적용
기술개발투자비율	해당업체투자비율/업체평균비율(150%이상,4점)	4	적용

2) 평가방법

가) 기술자 보유상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PQ공종 이외의 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가 미흡하여 동 데이터가 축적될 때까지는 사실상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임.

나)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한국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 시공평가 결과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실적제한 이외의 경우 만점으로 평가)

□ 시공평가제도에 대하여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45조
- 주요내용
 - 발주청은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감리원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시공평가를 해야 함.
 - ※ 단순 반복적인 건설공사 제외
 - 평가분야 (시공평가표 참조) : ① 품질관리 ② 공정관리 ③ 하도급관리 ④ 기술개발 ⑤ 안전관리 ⑥ 환경관리 ⑦ 현장관리 ⑧ 부실벌점
 -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전문가가 평가 (전문가 4인 이상 포함)

라) 시공경험 축적정도 평가를 위한 동일실적 준공기간 경과 정도는 적격 심사시 발주처에 제출된 실적 중 가장 최근연도 준공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모두 만점으로 평가한다.

마)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은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1)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로 산정(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 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바)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방법

- (1) 기술자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2)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한다.
-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 (4)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산출 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 (5)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

3) 적용시기

“기술개발 투자비율”은 평가하고 “기술자보유상황”, “시공평가결과”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선택 평가하며, 나머지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방법·시기를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라.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0억원 이상 공사)

1) 평가기준

가) 입찰금액과 하도급할 대상금액의 비율 평가

입찰가격(관급자재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 비율이 40% 이상이면 만점을 준다.

나) 입찰금액과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의 비율 평가

하도급할 해당공사 금액과 하도급업체와 체결할 금액의 비율이 82% 이상 100% 미만이면 만점을 준다.

2) 평가항목

심사항목	등 급 별 평 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등	12	10	전문·전기·정보통신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 평가
① 하도급비율	A : 40%이상	5	4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 (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 액으로 평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B : 30%이상	4	3	

심사항목	등 급 별 평 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 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77%미만	3	2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 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추정 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써 부대입찰 서류상의 금액임
	B : 78%이상 80%미만	4	3	
	C : 80%이상 82%미만	5	4	
	D : 82%이상	6	5	
③최근 1년간 하도 급대금 직불실적	A : 10%이상	1.0	1.0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6-1>에 의함
	B : 10%미만	0.5	0.5	
계		12	10	

가) 심사항목 표①,②에 대한 평가방법

- (1) 당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당업자 재제,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2)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계약할 계획이 제출된 경우, 당해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나) 심사항목 표③에 대한 평가방법

- (1) 2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직불실적의 비율로 평가한다.
- (2) 20억원 이상 관급공사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시 가점사항 신설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시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대비 20%이상으로 제출한 때에는 0.5점을 가산부여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에도 배점한도는 초과할 수 없다)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평가의 경우 신인도 등으로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직불실적이 10%미만인 업체의 경우 0.5점이 감점되어 사실상 낙찰자가 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직불계획을 제출·이행토록 하여 해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불을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함.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관급공사

- (1)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1년) 신규 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 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이 당해 기간내에 포함되어 있고, 동 기간내에 하도급계약도 있는 경우여야 하며, 장기계속공사의 총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당해기간중 원도급계약을 했으나 동 원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는 평가대상 관급공사에서 제외한다.

나) 평가방법

(1) 단독입찰인 경우

$$P = \frac{\text{적용직불건수의 합}}{M} \times 100(\%)$$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M

- 적용직불건수의 합 = $\sum_{n=1} Dn/Sn$

- S_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건수
- D_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2)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한다.

소수점 처리방법

- 최종 평가비율(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다) 실적인정범위

- (1)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1건의 공사 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직불합의한 건수의 구성 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한다.

원도급자 A가 하도급자 B, C, D에게 하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B사에게만 직불합의를 한 경우 $1\text{건} \div 3 = 0.33333\text{건}$ 이 된다.

- (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 체결 후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 한 경우여야 한다.
-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성대가중 하도급부분의 전부를 직불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각각 모두 직불실적 1건으로 인정한다

라) 평가자료 확인방법

- (1)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직불건수, 총하도급 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중도에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직불실적에서 제외한다.

- (2)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기간 및 내용이 틀린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건수 및 하도급계약건수 〉

- 업체별로 20억원이상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 내역을 제출받는다.
- 발주자는 국토연구원등의 전산망(Kiscon)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

- 입찰참가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 (3)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금 직불 합의후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마)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 인정

최근 1년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 중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대가지급 횟수가 더 많은 경우로서 전문협회장 등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한 경우에는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최근 1년 동안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 처리한다.

사) 협회 신고 및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아)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의 경우 〈별표 1〉 I-3-나-⑧합병 등에 따른 실

적인정 방법을 준용한다.

합병 등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 (1)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작성·제출한다.
- (2) 다만,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3)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서 직불한 경우로 직불합의서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직불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구성원의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하도급대금 직불을 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4)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 도중에 하도급자 부도로 퇴출된 경우 기시행된 직불에 대하여는 1건 실적으로 인정하고, 새로이 하도급자를 선정·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별건의 하도급건수 및 직불건수로 산정한다.
- (5) 직불합의 후 이행 도중에 원도급자 부도로 연대 보증인이 보증시공하고 연대 보증인이 직불을 계속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당초 계약자의 직불합의서와 보증시공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례] 입찰업체의 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구 분	관급공사(M)	하도급계약건수(S)	직불건수(D)	비고(D/S)
A업체	a	5	0	0
	b	10	1	0.1
	c	7	1	0.14285
	d	20	1	0.05
	e	12	1	0.08333
	합계 : 5	-	-	0.37618
B업체	f		2	0.16666
	g		4	0.26666
	h		1	0.14285
	합계 : 3	-	-	0.57617

▲ 단독입찰의 경우

- A업체 : 7.52 → **0.5점** - B업체 : 19.21 → **1점**

▲ 공동수급체 입찰의 경우

① A(80%), B(20%)인 경우

→ $0.37618 \times 0.8 + 0.57617 \times 0.2 / 5 \times 0.8 + 3 \times 0.2 \times 100 \rightarrow 9.05\% \rightarrow \mathbf{0.5점}$

② A(20%), B(80%)인 경우

→ $0.37618 \times 0.28 + 0.57617 \times 0.8 / 5 \times 0.2 + 3 \times 0.8 \times 100 \rightarrow 15.77\% \rightarrow \mathbf{1.0점}$

마.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50억원 이상 공사)

1) 평가 산식

평점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0.8~1.0)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공사유형에 따라 A~E등급으로 구분

2) 노무비 평가

가) 노무비 적용기준을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입찰금액

다) 배점 및 평가기준

기준율 대비		100%이상	90%이상	90%미만
노무비율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8	7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을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한다.

나) 배점 및 평가기준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 대비	100%이상	80%이상	80%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1	2	1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준율 대비	100%이상	85%이상	85%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0.5	1	0.5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다.

주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한다.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댐축조공사 ③ 발전소 건설공사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 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 해 등급의 차 하 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난이도 계 수는 기초 금액을 기 준 으 로 산정함. ▶ A~D등급 에 해당 하는 공 사가 복 합된 공 사는 주 공종(금액 이 큰 공 종)을 기 준 으 로 함
B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 공사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 정수장공사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 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 항만·간척공사(준설,매립공사 제외)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 고속도로공사	0.95		
E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한다.

바. 시공여유율 평가 (5<3>억원 미만 재난복구공사)

- 1)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 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종별로 평가한다.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나)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1건 : 0.4점

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2건 : 0.2점

라)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사. 기술자보유상황 평가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적용)

-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2011.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2)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보완시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 3)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를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술자 등록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 토건 : 11인 (토목기술자 5인, 건축기술자 5인 이상 포함)
- 토목 : 6인 (토목기술자)
- 건축 : 5인 (건축기술자)
- 산업환경설비 : 12인 (산업환경설비관련 기술자 6인 포함)
- 조경 : 6인 (조경기술자 4인, 토목·건축기술자 각 1인 이상)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토목·건축 겸업조항 삭제

□ **평가대상업체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록을 중복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당해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동 업체가 토목기술자 6인, 건축기술자가 5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적격업체가 됨.

□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시 유의사항**

- ① 기술인협회의 전산망은 등록기준에 충족하나, 실체는 등록기준에 부족하다고 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 기술인협회의 전산오류로 인한 경우
⇒ 기술인협회에 재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 기술인협회 전산조회 결과 등록기준에 부족하나 해당업체가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 불인정한다.
- ②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기술자 보유수를 확인하여 구성원 각자가 등록기준상 기술자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업체만 미달해도 △10점 감점을 적용한다.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된 내용에 대한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 ③ 건설업체가 복수의 건설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유기술자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등록업종만 적용한다.
- ④ 기술자가 복수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격을 우선 적용한다.
- ⑤ 당해공사 수행에 복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
⇒ 해당 복수 공종의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 : 토목+조경)

아. 기 타 <특별재난선포지역 지역제한공사의 영업기간·위장전입여부 평가>

1) 영업활동기간 평가

가) 재난발생일 전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경우 : 2점 (10억 이상은 3점)

나)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 이전 업체의 경우

(1)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상 : 2점(10억 이상은 3점)

(2)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미만 : 1점(10억 이상은 2점)

※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

2) 위장전입여부 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이전여부, 영업활동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장업체로 판명되면 10점 감점 처리한다.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1. 입찰절차 및 적격심사 방법

□ 추정가격 2.5억 원 미만인 용역

→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당해용역의 수행능력(경영상태)을 평가한다.

□ 추정가격 2.5억원 이상인 용역(정밀안전진단용역은 1억 원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를 적격심사 점수로 환산한 후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와 감안하여 일정점수 이상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2. 세부심사방법

□ 수행능력 결격사유

○ 적격심사대상자 중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함

□ 경영상태 평가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

○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

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 평가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평가방법

- 적격 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선순위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라면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PQ심사 없는 기술용역 분야별 세부평가방법

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 ② 경영상태평가, 기술능력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나. 특별 신인도 이행실적 평가 방법

- 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

- ②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
- ③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별도 제시

• 입찰공고시 인정범위 및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현재 발주 하고자 하는 용역과 과업내용이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완료된 과거의 용역실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임.

- ④ 특별 신인도 가산점은 당해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다. 경영상태 평가방법

- ①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평가요소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자본비율 000.00% - 유동비율 000.00%』

- ② 기준비율적용 업종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업종 적용
-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국토부 고시)
- ③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④ 2011.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함.

□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참여비율 30%(20%)이상	20%(10%)이상
3점	1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공고일(PQ대상 이외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기준 당해 시·도지역 내에 사전심사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를 소지한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당해 시·도와 접한 시도를 말함)의 해당 자격 소지자를 당해 시·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로 보아 점수 적용
- 건설기술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용역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 1점을 적용한다.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됨.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있어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발주자가 선택적용하고 미적용시 수행능력점수 70점으로 평가하며 적용여부는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의 비율 산정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이 경우 발주대상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 산정
- ⇒ 입찰공고 시 과업내용별 분담비율을 제시하여 점수 예측이 가능토록 함.

□ 기술인력 평가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 (10)처리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령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 단, 기술 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 여부를 평가

□ 추정가격 2.5억 원 미만 기술용역의 특별재난 선포지역영업 활동평가

- 해당시도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상 : 2 점
- 해당시도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미만 : 1 점

【건설 기술용역이외의 용역】

→ 시·도지사는 시·군·구 필요한 용역 수요조사, 시·도표준안 작성,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시행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1. 입찰절차 및 적격심사 방법

□ 추정가격 2.5억 원 미만인 물품

→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대상인 경우 적격심사 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인 물품

→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후 낙찰자 결정

•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①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때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

②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③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

가. 내자물자

-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1억원 미만인 경우

-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행정용품(저장품) 및 단가 계약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함이 효율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나. 외자물자

- 구매예정금액이 미화 10만불 미만

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2. 세부 심사방법

□ 납품실적 평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 (규모·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frac{\text{이행실적}}{\text{평가기준규모}}$)				
	(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 (실적금액)				
	($\frac{\text{이행실적}}{\text{추정가격}}$)				
(2) 계약 목적물과 유사물품	(가)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 (규모·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frac{\text{이행실적}}{\text{평가기준규모}}$)				
	(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 (실적금액)				
	($\frac{\text{이행실적}}{\text{추정가격}}$)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입찰 대상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
- ②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③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붙임서식 3)로 제출해야 함. 단,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

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④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⑤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실적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 시 명시된 금액이상으로 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 :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 계약 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가)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 (규모·양)	2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20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16	
	(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 (실적금액)			12	
	(— 이행실적 —) 추정가격			8	
(2) 계약 목적물과 유사물품	(가)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 (규모·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8	
	(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 (실적금액)			6	
	(— 이행실적 —) 추정가격			4	

-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0억 이상 납품실적 ①, ③, ④, ⑤ 동일하게 적용

□ 기술능력평가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에 한하여 평가,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 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입찰 에 한한다.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1.5	
			C. 기능사 1인당	1.0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2) 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 심사항목의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10억 이상	2억 이상	2억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A°	A2°	①의 A° 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19.7	10.0
BBB°	A3°	①의 BBB° 에 준하는 등급	29.5	19.5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19.3	10.0
BB+, BB°	B+	①의 BB+, BB° 에 준하는 등급	29.0	19.0	9.5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18.5	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18.0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15.0	5.0
없음	없음	없음	0.0	0.0	0.0

- 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
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
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신인도 평가

- 신인도 평가는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 기술개발 노력	기술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1.0 1.0 0.5
(3)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자원절약	1.0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4) 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	0.5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5) 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0.5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0.5
			D. 장애인고용 우수 기업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 하는 경우 F. 지역 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 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 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이행 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 품질 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계약질서 준수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부적당 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 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자	-1.0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1),(2),(3),(4)”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 나) “(1)” 의 “C”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 다) “(2)” 의 “B” :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라) “(2)” 의 “B”, “C” :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및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은 제외한다.
- 마) “(5)” 의 “A”, “C”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평가는 주무부처(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 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바) “(5)” 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 사) “(5)”의 “E”, “F” : 소기업(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 업체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 아) “(5)”의 “G”, “H”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품질보증” “A”, “B”, “C”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 “의” 불공정하도급 “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5)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 ~ -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등 기준일

-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평가에 따른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 업종평균율의 적용
 -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중분류업종(종합)의 자료를 적용하며 이를 입찰공고 시 명시
 - 업종은 심사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이 속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업종을 적용함. 이 경우, 심사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
- ※ 업종평균비율과 당해업체 경영 상태는 회계년도를 달리하는 시기 존재

□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 이행실적 중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bullet \text{ 납품실적} = (\text{A업체 실적} \times \text{지분율}) + (\text{B 업체 실적} \times \text{지분율}) / \text{추정가격}$$

- 기술능력과 재무 상태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
- 신인도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bullet \text{ 신인도} = (\text{A업체 신인도점수} \times \text{지분율}) + (\text{B 업체 신인도점수} \times \text{지분율})$$

□ 결격사유의 심사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
 -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음.

제 VIII 장 계약체결이행 및 대가지급

1. 계약의 체결

-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자치단체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 낙찰금액을 부기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 1억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 과업이행요청서가 있는 경우 과업이행요청서

-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자치단체조례)
-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다. 계약보증금

- 1) 금 액 : 계약금액의 10%이상(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15%이상)
 - 공사의 경우 계약 이행보증서(40%) 제출 가능
 -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도 공사의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 최저가 공사 입찰 또는 대형공사 입찰인 경우 반드시 계약이행 보증서 제출해야 함.
- 2) 납부수단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 3)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50%이상 출연법인,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계약체결
 -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계약 및 일반적 관습상 보증금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물품구입이 곤란한 경우
-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동 가치 상당액 이상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가능

4) 계약보증금의 귀속

가) 자치단체귀속 사유

-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이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하며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 (2)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제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나) 자치단체 귀속 절차

-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징수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또는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어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납부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납부조치
 - 동 지급각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

다) 자치단체 귀속의 예외

- 당해 계약의 연대 보증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였거나

(예 : 보증시공 등),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건설공제조합 등)
이 책임시공을 하는 경우

Tip

일부 불이행 시 자치단체 귀속

일부품목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당해물품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결국 본래의 계약이 이행된 것이 아님, 따라서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함.

라) 계약보증금 귀속 시 기성부분 미지급금액과 상계가능 여부

-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할 계약보증금 중에서 동 미지급금액을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귀속사유 발생 시 상계가 가능함

5) 계약보증금의 반환

- 가)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 나) 전체공사 등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해당 보증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수는 없음.
- 다)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증금과 이자 지급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고
정기예금 예탁	만 6개월 이 상	•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 당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최고의 이자율	
별단예금 예탁	만 6개월 미 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 이자 지급 시에는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등을 반드시 징수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비교〉

보 증 방 법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시	
	1 차 적	2 차 적
① 계약보증금납부 입보 * 계약보증금 : 공사는 계약금액의 15%, 물품 및 용역은 계약금액 10%	• 보증시공불이행시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② 계약금액의 40%상당 이행보증서 제출	•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 책임시공 불이행시 보증서상 의 금액을 지자체에 귀속

질의회신

〈질의〉 계약이행 중에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의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으로 납부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변경하는 것은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가능하다고 봄.

감사사례 1 계약보증금 부당 수납 및 부당 면제

- ①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방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수납
- ② 계약 불이행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약정함이 없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히 계약보증금을 면제

감사사례 2

○○공사가 1996. 6. 22. 김 모와 단독택지 1필지에 대한 매도계약(금액 1억 700만원)을 체결하고, 3일 후에 위 김 모의 요청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하면서 확정된 계약을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 제48조 제6항의 규정 및 매매계약서 제14조 제5항의 약정에 따라 수납한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계약체결 후 2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보증금(1,070만원)을 환불하였기 때문에 동액 상당 금액이 수입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

라. 공사이행 보증제도

-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Performance Bond)를 발급한 기관이 업체를 선정하여 책임 시공하거나

보증금(계약금액의 40%)을 지자체에 납부

※ 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 시에는 계약금액의 50%

- 용역의 경우에도 이행보증제도를 준용할 수 있음.

3.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가. 착공 및 착수

1) 공사의 착공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2) 공사공정예정표
-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5) 착공 전 현장사진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 신고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 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 사

1) 공사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준공(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성검사

1)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3회마다 2회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에 의한 약식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사의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사급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

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선금지급

1) 선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노임이나 자재구입비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

가) 적용범위

(1) 대상 :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 ①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③ 선금지급일기준 선금을 지급 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나) 지급범위

(1)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을 이하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가능

선금의무지급률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원~20억원	10억원 ~ 3억원	
계약금액의 50%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 (2)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다) 선금지급의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차수계약으로 이행된 연도의 기성금의 공제

지난년도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별로 이행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 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 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 복구공사, 조기집행, 환율, 물가변동 급등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가능

마)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보아 선금을 지급한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채권의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증서제출의 면제(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기관)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 ③ 지방공기업
- ④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정보화조합,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등
- 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중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 ⑥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⑧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⑪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지급각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 (1)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수학여행, 국내외연수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②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Tip

선금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지급 조건에 발주자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사용하는지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Tip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연대 보증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가 아닌 자에게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나) 반환청구 및 재지급

-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③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 (3) 선금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 선금지급조건

-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 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2)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동도급시 선금지급방법 비교선금의 정산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
신청자	대표자	좌 동	좌동
신청 방법	- 신청서상에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날인하여 구분 신청	- 신청서상에 분담내용 에 따라 구성원별로 날인하여 구분 신청	구성원별로 날인하여 구분 신청
지급계좌	- 구성원별 계좌	- 구성원별 계좌	대표자
채권확보	- 원칙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납부 - 대표자 또는 구성원 중 1인이 일괄납부 가능	-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	구성원별로 분할 납부
선금반환	- 반환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의 선금에 대하여만 반환청구	좌 동	좌 동

마) 선금의 정산

- (1)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상당액}}{\text{계약금액}}$$

〈예 : 공동이행시 정산방법〉

- 계약금액 : 10억원
- 구성원별 출자비율 : A사 60%(6억원), B사 40%(4억원)
- 선금지급(5억원) : A사 3억원, B사 2억원
- 기성신청금액(2억원) : A사 1.2억원, B사 0.8억원
- 선금정산금액(1억원 이상)
 - A사(0.6억원) = 3억원 × 1.2억원 / 6억원
 - B사(0.4억원) = 2억원 × 0.8억원 / 4억원

〈예 : 분담이행시 정산방법〉

- 계약금액 : 30억원
- 구성원별 공사금액
 - A사 토목공사(20억원), B사 오수공사(10억원)
- 선금지급(9억원) : A사 6억원, B사 3억원
- 기성신청금액(10억원) : A사 5억원, B사 5억원
- 선금정산금액(3억원 이상)
 - A사(1.5억원) = 6억원 × 5억원 / 20억원
 - B사(1.5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바) 선금 및 대가지급의 종류·근거규정 및 절차

종류	내용 및 근거규정	절 차
선금	○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되 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한 경우 신청금액 대로 지급 ○ 한계 : 자금사정 허용한도 내 지급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96조,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 계약체결후 선금지급 신청 → 보증서 징구하고 선금지급 → 선금 사용후 사용실적 증명서 제출 → 기성대가지급 시 정산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상당액}}{\text{계약금액}}$
기성 대가	○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검사 완료후 지급 ○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 근거 : 지방계약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7조,	○ 기성부분이행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 기성대가지급신청 → 7일 이내에 지급
준공 대가	○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대가지급 ○ 근거 : 기성대가지급 규정과 동일	○ 계약이행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완료 → 준공대가 지급 신청 → 7일 이내에 지급

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

약을 정할 수 있다.

-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기성대가의 지급

- 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 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공사이행의 주민참여감독제도 도입

○ 대상공사(영 제60조)

- | | |
|---|---------------|
| ①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 ② 배수로 설치공사 |
| ③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④ 보안등 공사 |
| ⑤ 보도블록 설치공사 |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 ⑦ 마을회관 공사 | ⑧ 공중화장실 공사 |
| ⑨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 |
| ⑩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자격요건(영 제57조)

- | |
|--|
| ① 발주공사 관련 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 ②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종사자 또는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
| ③ 대학교수,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
| ④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
| ⑤ 감독대상공사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 감독범위(영 제61조)

-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단체에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의 시정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

※ 계약담당자는 건의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감독자 실비지급(영 제59조)

-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표준조례안 참고)

○ 감독조서(영 제62조) :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 감독자의 해촉(영 제58조)

- 감독 관련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공사감독일지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하자보수보증제도

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 1)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납부
 -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
- 2)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 준공 검사 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준용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 1) 지방계약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국가기관등 입찰보증금납부면제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

나)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

3)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조치

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

2)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정함.

※ 개별법령에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담보기간 설정
예) 문화재공사(문화재보호법), 소방공사(소방법)

라.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1)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중에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자치단체에 귀속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보증기관 입회가능

- 2)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 3)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또는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Tip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자체에 납입
 ⇒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세입세출현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토록 보증기관에 통보

Tip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절차

하자보수를 위한 지출원인행위(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 → 지출

마.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계약보증금의 반환 참조

- 1)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함.
- 2)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

질의회신

〈질의〉 대가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바. 하자검사

- 1)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 2) 하자검사 조서 작성

※ 3천만원 이하 공사는 동 조서작성 생략 가능

사. 하자보수의 이행

- 1) 계약상대방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2)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3)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 착공

감사사례

○○시 북구에서 구의회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4층-7층, 1,542㎡)을 수의계약(계약금액 : 9억 6,000만원)으로 임차하면서 그 건물은 감정평가액을 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후 순위 전세권등기만으로는 채권확보를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주)한국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9억원, 감정평가액 32억원)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도 인근 부동산업소의 추정시가(50억원)만을 믿고 후순위 전세권등기만 하고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건물주의 부도에 따른 경매처분결과 위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자치단체에 동액의 손해를 끼쳤음.

질의회신

- 〈질의〉 연대보증회사의 하자보수책임여부 및 소요비용부담 여부
-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시 입보된 시공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보수를 위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시공연대보증인간에 민사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5. 계약의 이행 지체 및 해지·해제

1) 사 유

가)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

(1)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물품구매계약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1)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①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거나 ②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2) 지연배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지연배상금은 병과하지 않음.

나)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

※ 이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질의회신

〈질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요건산정 시 공사기간의 의미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위의 규정중 공사기간은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아닌 총 공사의 이행을 위한 공사기간을 의미함.

회계통첩 노사분규에 따른 지연배상금 처리기준

- 노사분규로 인한 계약이행지체는 지연배상금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 계약상대자의 관련업체 노사분규로 인하여 원자재, 부품 등 조달이 불가능하여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보아 그 해당일수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부품의 대체사용이나 공급업체의 대체가 사실상 가능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음.

질의회신

〈질의〉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될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감리용역 계약에 있어 지연배상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자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감리계약의 이행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6. 부정당업자 제재

1) 의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2) 제재사유

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재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

※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

4) 제재효력

가)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쌍벌주의

나)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

다) 효력의 승계 : 동질성 기준(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확인)

감사사례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등 계약업무 부당처리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갑” 회사에 총액 13억 7,700만원에 도급한 교차증축 등 공사의 제2차분 공사를 “을” 회사가 보증 시공하였으므로 제3차분은 당초의 낙찰률 80.5%를 적용한 금액으로 “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을” 회사도 참가시킨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동 회사와 계약함으로써 위 낙찰률 적용금액보다 1억 9,532만원 상당 공사비 과다 부담

질의회신

〈질의 1〉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답변〉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면허에도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임.

〈질의 2〉 법인 합병 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임.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학습정리

- 계약보증금은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금)을 징구하거나 해야 하며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 계약보증서 10%나 계약이행 보증서 40%중 계약상대자가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최저가 입찰대상 공사나 턴키대안 입찰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서 40%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한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된 후 100분의2이상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계약 목적물에 따라 준공 대가지급전에 하자보증서를 징구한다.
- 지연배상금은 계약만료일 이전에 준공검사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검사 중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 보완 지시일 부터 최종준공일까지를 일수로 지체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계약 만료일 이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익일부터 최종 검사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함.
- 부적당 업자의 제재는 1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재 시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용어사전

● 계약문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문서는 공사·물품 및 용역계약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① 공사 :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② 물품 :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효과를 가짐.
- ③ 기술용역 :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 효과를 가짐.

● 유가증권

지방계약법령상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 ① 국채증권 ② 지방채증권 ③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④ 사채권(社債券) 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출자증권 ⑥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관련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행안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제 IX 장 계약금액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의 의

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 시켜 줌으로서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이다.

나. 성 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 사항인 바, 계약 상대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할 경우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 조정요건

1) 기간 요건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 경과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일)

가) 90일 기간의 기산일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 계약 체결일을 불 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째 되는 날
- 직전 조정기준일 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 조정기준일은 불 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째 되는 날

나)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계약의 기산일

기간 요건 기산일은 1차 계약체결일(시행령 제73조)

다) 미 이행기간의 포함여부

공사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체결 후 절대기간 90일이 경과되면
기간요건 충족

2) 등락 요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

○ 조정 방법의 선택·명시

가)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에 의한 등락률 산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 방법은 이행 도중 변경 할 수 없음.

3) 조정 청구의 요건 여부

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 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3-다항목)

나) 공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조정 내역서에 대한 작성 책임

→ 증액 시에는 계약 상대방, 감액 시에는 발주자.

4) 90일 이내 계약금액의 조정

-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요건 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

〈계약금액 조정의 전제조건〉

- 공사·용역·물품제조는 조정률이 3% 이상, 물품구매는 조정률이 6% 이상인 경우
- 계약서상 당초 계약이행기간이 12개월(365일)이내인 경우

- ① 관련협회 등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의 평균등락율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 ②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발표(1년 상· 하반기 발표)한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등락율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 ③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락율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 공사, 용역, 물품·제조 : 5% 이상 증가
 - 물품구매 : 10% 이상 증가
- ④ 예정공정표상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변동된 경우
- ⑤ 기타 객관적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결정한 경우

5) 단품슬라이딩

-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액(필요한 분량 전체에 대한 가격 변동액)이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일 때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시행령 제73조 제6항)
-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총액E/S 등락요건 : 3%)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특정규격 자재란?
 -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

-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
-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산정방법 적용(시행규칙 제72조)

6) 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변동

-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성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시행령 제73조 제7항)
- 원화로 산출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실제 수입품목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 가능
- 조정방법이 품목조정률인 경우 해당(지수조정률의 경우 수입 물가지수 등에 반영됨)

라. 조정금액 산출 기준

1) 조정 기준일

- 가) 조정 기준일이란 물가변동 사유인 기간요건과 등락요건(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로부터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되는 날
- 나)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대상으로 산정

2) 물가변동 적용대가(시행규칙 제72조 제5항)

- 가)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공사공정 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 한다.

3)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방법

- 가) 조정기준일 현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적용하여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산정. [단, 조정기준일 이전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사유(설계변경, 공기연장 등)가 발생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이후 수정공정표가 승인된 경우에는 수정공정표 적용]
- 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공사공정예정표 대비)에는 미이행 부분도 포함(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4) 조정금액의 공제

가) 기성 공제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조정신청 이전에 수령한 경우
- 기성대가수령액 × 조정률 = 공제금액
-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전환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나)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 (지방재정법 제73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5.)

-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증액 예상 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 지급 단,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

다) 선금 부분의 공제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선금 공제 대상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

년도 계약 체결 분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비공사의 경우 선금의 신청 기준이 되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 대상이 되며(단, 감액조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조정기준일 후에 수령한 선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선금수령일 기준)
- $\text{물가변동적용대가} \times \text{선금률} \times \text{조정률} = \text{공제금액}$

5) 조정 방법

가)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

(1) 의 의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금액을 구성하는 각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하여 입찰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등락률을 그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한 후, 그 등락폭을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나눈 비율

(2) 입찰당시가격(기준시점 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적용되는 거래실례가격, 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작성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으로 산정

(3) 계약단가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로, 입찰 시 또는 착공 신고 시 제출하는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 단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등락폭 산출 시 이를 기준으로 함.

(4) 물가변동당시가격(비교시점 가격)

- 입찰 당시의 가격 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물가변동 시점에서의 당해 비목의 가격을 산정
- 물가변동 당시 게재된 가격의 삭제 및 전적 업체의 폐업 등으로 계

약 체결 당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조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예: 가격정보 대신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폐업된 업체 대신 다른 견적 업체의 견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파악하여 등락률을 산정할 수 있음.

(5) 등락률 산정

어느 품목의 가격이 계약 체결시 보다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

$$\text{등락률} = \frac{(\text{물가변동당시가격} - \text{입찰당시가격})}{\text{입찰당시가격}} \times 100$$

(6) 등락폭 산정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전 이행되어야 할 금액은 제외)을 구성하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등락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물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의한 계약 단가의 증감액

$$\text{등락폭} = \text{계약단가} \times \text{등락률}$$

※ 등락폭 산정의 예외(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3항)

구분	입찰시 가격 (P)	계약단가 (Po)	물가변동시 가격 (P1)	등락률 (%)	등락폭	비고
P(Po < P1)	100	110	120	20	10	P1-Po
P(Po > P1)	100	150	120	20	0	-

(7) 승률 비용의 등락폭 산정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률 비용의 등락폭은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

※ 예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요율은 적용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 시 이를 반영

구분	입찰 시 산재보험율 (P)	적용요율 (Po)	물가변동 시 산재보험율 (P1)	등락률 (%)	당초계약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한 적용률(%) (적용요율×등락율)	E/S발생분에 대한 적용률(%) (적용요율+당초계약분에 대한 적용요율)	비고
입찰 시 고시율보다 계약률이 낮은 경우	3.2%	3.0%	4.0%	25%	0.75%	3.75%	
입찰 시 고시율보다 계약률이 높은 경우	3.2%	3.6%	4.0%	25%	0.4%	4.0%	P1-Po

(8) 품목조정률 산정

품목조정률 =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등락폭의 합계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100

2) 지수 조정률에 의한 방법

가) 의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 「비목군」을 분류하여,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계약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 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정

나) 비목군의 정의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구분한 묶음을 비목군이라하며, A: 노무비, B: 기계경비(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 기계경비), C: 광산품, D: 공산품, E: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농림·수산물, G: 실적공사비(G¹: 토목부문, G²: 건축부문, G³: 기계설비부문, G⁴: 전기부문), H: 산재보험료,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고용보험료, K: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국민건강보험료, M: 국민연금보험료, N: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기타 비목군으로 분류 한다.

다) 비목군 분류·편성

- 비목군은 계약 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 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내역서 작성을 위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같은 기초 자료도 원칙적으로 비목군 분류 시(계약내역서를 작성 할 때의 기초자료 등을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조서)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류한다.

라) 계수의 산정

- A, B, C, D, E, F, G, H, Z 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 금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각 비목군의 가중치를 말하며, a, b, c, d, e, f, g, h, z 등으로 표시한다.
- 산출내역서상 금액 및 순공사 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이다.

- 조정기준일의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변경되면 계수 또한 변경된다.

마) 지수의 산정·적용

-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시점 및 비교 시점의 지수 표시와 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준시점(입찰시점)의 지수표시 : $A_0 \cdot B_0 \cdot C_0 \cdot D_0 \cdot E_0 \cdot F_0 \cdot G_0 \cdot H_0, \dots, Z_0$
 - 비교시점(물가변동시점)의 지수표시 : $A_1 \cdot B_1 \cdot C_1 \cdot D_1 \cdot E_1 \cdot F_1 \cdot G_1 \cdot H_1, \dots, Z_1$
-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매월 말일인 경우에는 당해월지수를,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적용)
- 지수조정률(K)의 소수점에 대한 처리는, 각 비목 군별 계수와 지수 변동률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를 모두 합산한 후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여 산출(계수와 지수변동율을 곱한 수치는 각각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로 절사하는 것은 아님.)

a. A : 노무비

-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한 것
- 노무비 지수의 적용 시기는 대한건설협회 등이 시중 노임을 조사·공표한 날 또는 발표기관이 적용시기를 정하였을 때는 그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함.

b. B : 기계경비

-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표준품셈상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지수화한 것
- 외화로 표시된 외국산 기계 가격의 경우에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연도 중에 환율이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
 ※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c. C~F : 재료비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
 가지수표상 당해 비목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

(C:광산품, D:공산품, E: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농림수산물)

d. G : 실적공사비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지수화한 것

e. H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지수변동률 산정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

$$H = \frac{A_1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요율}}{A_0 \times \text{입찰 시 산재보험요율}} \times 100$$

※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법정요율은 산재보험료의 등락률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별도의 비목
 으로 구분하여 산정

f.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수 변동률 산정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

$$I = \frac{\text{조정기준일 당시(직접노무비 계수+재료비 계수+실적공사비 계수)}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text{입찰시(직접노무비 계수+재료비 계수+실적공사비 계수)} \times \text{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times 100$$

※ 변동전 재료비 계수 = c + d + e + f

※ 변동후 재료비 계수 = 변동전 계수 x 지수변동률

g. Z : 기타 비목군

○ 기타 비목군의 범위

순공사비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비목군 분류시, 기타경비 등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은 기타 비목군으로 편성한다.

○ 산정 공식

노무비와 재료비의 해당 비목 지수를 해당 비목의 계수(가중치)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Z = \frac{Z_1 = (aA_1 + cC_1 + dD_1 + eE_1 + fF_1 + \dots) \div \text{비목군수}}{Z_0 = (aA_0 + cC_0 + dD_0 + eE_0 + fF_0 + \dots) \div \text{비목군수}}$$

바) 조정금액의 산정

계약 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 적용 대가)에 지수조정률(K)을 곱하여 산정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 의 의

-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임.
- 계약금액 조정사유
 - 설계의 변경으로 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신기술·공법 또는 신기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사유

구 분	조 정 방 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1, 2, 3, 4 및 7	○ 설계서와 현장상태(지질, 용수 등)가 상이한 경우 ○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경우 ○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절차〉 업체의 서면통보 → 계약담당공무원 검토 → 설계변경 조치 (도면변경, 내역산출 등) → 시공 ○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5, 6	○ 계약담당자는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규모 증감 등) 〈절차〉 계약담당자 서면통보 → 계약상대자와 협의 → 설계변경 조치 → 시공

다. 계약금액 조정방법(영 제7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1)

구 분	조 정 방 법
업체요구시 (업체귀책)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원칙 : 계약단가에 의함 예외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정부요구시	○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함 ○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 ○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두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토크공사, 대안입찰공사(대안부분) : 영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계약물량증가 : 협의결정(설계변경당시단가 ~ 계약단가범위), 협의 안 되면 두 단가의 100분의 50
- 신규비목 : 설계변경당시 단가

라. 조정기한

조정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가. 의 의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임.

나.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다. 조정방법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

※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라. 계약금액 조정신청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마. 조정기한 (규칙 제74조)

조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질의회신

-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됨.
-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6항(현행 제7절-1-바)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증감되는 물량 및 단가 등은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임.
-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작성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당시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각각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 실례가격, 시중 노임 등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함.

용어정의

● 물가변동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계 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한 조정률 산정시 각 비목군의 산출내역서상 예정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 내역서 상 예정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개산급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 후 조정된 계약금액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개산급이라고 함.

● 신규비목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을 의미함.

제 X 장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및 국제입찰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가. 의 의

-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동 공사를 말함.
- 대형공사 유형
 -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 대안입찰에 의한 계약
 - 특정 공사의 계약(300억 원 미만 신규복합공종 공사 중 대안 또는 일괄입찰 공사)

〈대형공사 설계비보상〉

- 대상공사 :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사
- 보상비 수령자 : 탈락된 우수설계자(5인 이내)
- 보상비 지급기준 :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총공사비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대상공사의 공고

-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매년 1월 15일까지
↓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월말까지
↓
- 공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홈페이지 및 정보처리장치(인터넷, 일간신문공고 병행가능)에 공고

다. 예정가격의 결정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음.

질의회신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의 입찰방법심의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에서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해야 하는 것임.

라. 입찰 및 낙찰자 선정

1) 개념

- 일괄입찰(턴키) 공사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기
본계획 및 지침만 제시하면,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
는 입찰방식
- 대안입찰공사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대안 제출이 허용된 입
찰방식

2) 대상공사

-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대형공사)
-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 중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특정 공사)

《 대형·일반공사의 차이점 》

분야별	일반공사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설계 주체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	입찰자가 설계서 작성 제출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 제시(원안)
예정가격 작성여부	작성	작성하지 않음	원안, 대안공종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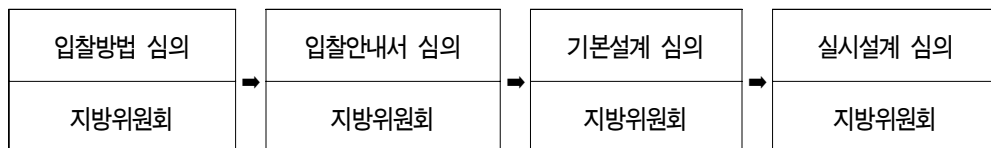
분야별	일반공사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낙찰자결정 방 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 통과자	적격심사 결과 최고 득점자	좌 등
계약금액 조정 여 부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설계변경 시에도 계약금액 조정 불가	좌 등

《 일괄·대안입찰의 장·단점 》

장 점	단 점
○ 일괄 책임(설계·시공) ○ 공기 단축 및 품질 향상 ○ 공사비 절감(신기술, 신공법) ○ 발주자 행정부담 감소	○ 과도한 입찰 준비 비용 소요 ○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 ○ 총 공사 금액의 사전파악 곤란 ○ 발주자의 점검과 조정기능 결여

3) 대형공사 심의기관 및 심의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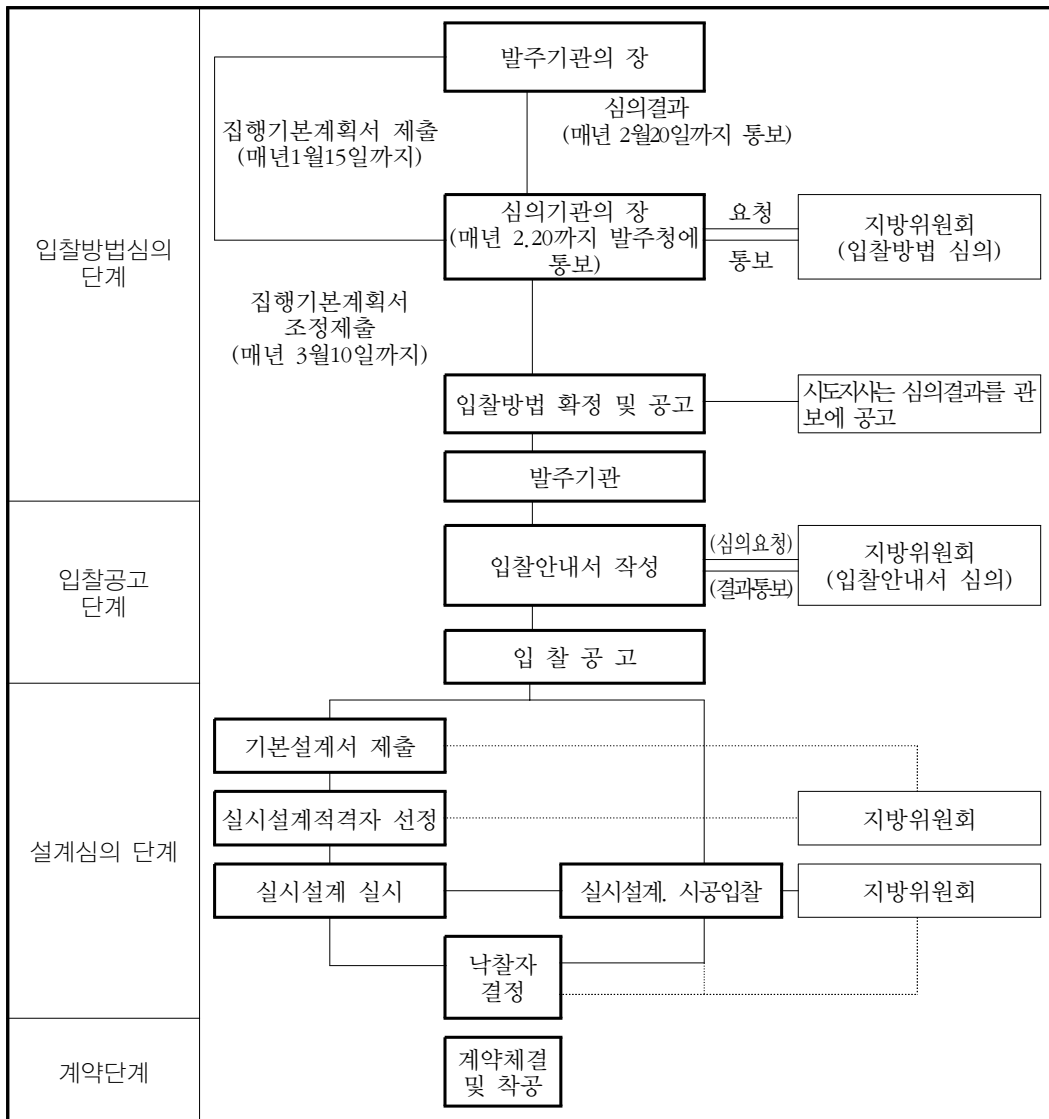
- 심의기관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시·도에서 120명(서울 250명) 이내로 구성
- 심의 기준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건설교통부 제정) 적용
- 심의종류



- 입찰방법 심의
 -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 집행기본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 입찰안내서 심의

- 입찰 및 설계·공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 심의
 - 기본·실시설계심의
 - 설계의 기술적 타당성,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

4) 대형공사의 수행절차



입찰방법 심의	- 지방위원회 심의 - 심의 요청 및 심의 절차 진행
입찰안내서 작성	-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용역자 선정 - 입찰안내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 분야별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심의	- 입찰안내서 심의 요청 - 입찰안내서 심의 진행 - 지적사항 보완 및 검사 - 심의수당 지급
공사입찰 공고	- 현장설명서 작성 및 현장설명 - 공사 입찰 공고
기본설계 도서 작성	-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 질의응답
기본설계 심의요청	- 기본설계도서 납품 - 기본설계 심의 요청서 작성 - 사업개요 설명자료 작성 - 설계검토서 작성 및 감점사항 정리
기본설계 심의	- 기본설계 심의 요청서 작성 -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 선정 - 설계심의토론회 운영 시나리오 작성 - 소위원회 개최(운영 방안 마련 및 공통질문사항 도출) - 공동질문사항 도출 및 업체 통보(답변서 작성 요구) - 설계심의토론회 개최 및 운영 - 지적사항 취합 정리 및 배포 - 심의수당 지급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가격개찰 및 기술평가 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지적사항 보완 및 실시설계 진행
실시설계진행	- 실시설계 진행사항 관리 -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감리용역 계약준비(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비 산출) - 감리용역 계약
실시설계 심의요청	- 실시설계 납품 및 심의요청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마련 - 자문위원회 진행 및 지적사항 작성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 조치이행계획서 징구 - 낙찰자 결정에 따른 계약요청 - 설계보상비 지급 안내 및 지급 - 공사계약 및 감리자 선정
공사 착공	-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 이관

2. 국제입찰

가. 국제입찰 대상기관 및 금액 : 광역 자치단체만 적용대상

(단위 : 만SDR)

구 분	개 방 기 관	개 방 범 위
국가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4개 안보관련기관 제외)	• 건 설 : 500(95억원)이상 • 물품·용역 : 13(2.5억원)이상
지 자 체	• 6개 광역시와 9개도	• 건 설 : 1,500(284억원)이상 • 물품·용역 : 20(3.8억원)이상

※ SDR :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1) 대상국가(정부조달협정국)

구 분	협 정 국
유 럽	EU 25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EC).
미 주	미국, 캐나다, 아루바
아시아	한국, 일본,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2) 임의국제입찰계약 대상

개방대상은 아니지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국제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준용함.

-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내생산 곤란 등 국제입찰에 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국제입찰 제외대상

-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예시 · 재판매용 : 가스공사의 LNG구매

· 생산용 :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구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제조 및 구매
- 관련법령에 의한 농수축산물의 구매
- 국방·공공질서 등의 목적을 위한 조달
- 장애인·자선단체·제소자 등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조달
- 관련법에 의한 인공위성 제조·구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나. 국제입찰공고

1) 공고기간

- 원 칙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 전에 공고
 - 예 외
 - 긴급 및 재공고 : 10일
 -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의 공고 및 반복계약의 경우 후속 공고 : 24일
 - 지명경쟁의 경우 특례 : 유자격자명부(시공능력 공시명부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 입찰시 --- 최소 65일
- ※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일반공고일로부터 별도로 25일 이상 부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65일 이상이 소요

2) 공고내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외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당해 조달과 관련한 후속조달에 관한 사항 및 후속 입찰공고에 대하여는 그 공고의 예정시기
 - 입찰방법 및 협상의 포함여부

- 조달형태(구매·임차 및 할부구매 등)
- 서류제출을 위한 주소와 그 마감일 및 사용언어
- 협정대상여부
- WTO 공용어로 요약공고
 - 국제입찰공고에는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하나로 다음사항을 공고문 하단에 첨부하여야 함
 - 계약의 목적물
 -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 발주기관의 명칭 및 주소

질의회신

- 〈질의〉 국제입찰대상금액 및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도 국제입찰대상금액에 해당되면 국제 입찰에 의하여야 하는지?
- 〈답변〉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는 추정가격 229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38억원 이상은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음
- 다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대상에서 제외됨

다. 국제입찰의 원칙

- 국제입찰의 원칙
 -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 특정 회원국이나 공급자에 대해 여타 회원국의 물품이나 공급자와 차별을 두지 않으며, 특정 공급자에 대해 특별우대 조치를 해서는 안됨.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외국물품이나 공급자에 대하여 국내물품 또는 공급자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
 - 그 밖에

- 협정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발주하거나,
 - 국산화 비율 지정 등의 제한조치를 금지
- 낙찰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 낙찰자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당해 입찰, 낙찰자, 발주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
 - 입찰참가자의 요구 시 원칙적으로 낙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
 - ※ 예외 :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계약에 관한 기록의무(특례규정 제24조, 협정문 제19조)
 -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 등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
 - 보존문서 내역
 - 경쟁입찰 : 입찰자 및 개찰참여자 성명, 낙찰자 성명, 낙찰금액, 낙찰사유 등
 - 수의계약 : 계약의 목적 및 금액, 적용법령조문 및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주소 등
- 계약실적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라. 수의계약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 특정조달계약에서의 수의계약 사유
 -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의 경우
 -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물품 및 용역조달 시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하거나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제상 관례의 적용
- 국제거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써 통화, 보조금 형태 및 납부시기, 대금지급, 검사방법 및 물가변동조정 등에 대하여 국제상 관례를 적용할 수 있음.

용어정의

● 국제입찰

국제입찰이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

● 일괄입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지침 등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함.

● 대안입찰

-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의 제출이 허용된 입찰을 말함.
- 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기본 및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설계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협정은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서명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 국가간 무역협정(PTA)중의 하나임.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를 한 국가들에 대하여만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하여는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고시금액

WTO 협정시 정한 우리나라의 개방대상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매 2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

※ 2010. 12. 30. 고시 : 공사는 추정가격 284억원 이상, 물품·용역 : 추정가격 3.8억원 이상

관련규정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특례규칙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부 록

1. 계약업무관련 법원의 명령

채권압류의 유형

1. 가압류 결정(假押留 決定)

가. 의 의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
- 결정 : 변론을 거치지 않는 명령 ⇒ 당사자에게 송달로 효력발생
- 판결 : 변론을 거쳐서 하는 명령 ⇒ 선고에 의해 효력발생

나. 관련규정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 없이 한다(민사소송법 제560조).
-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은 당해공사의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 임금채권은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질의회신

- 법원의 전부명령이 세무서의 채권압류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전부명령 해당부분의 채권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은 압류할 수 없음.
- 원계약자의 압류처분효력은 원계약자가 시공한 부분까지만 미친다고 보아야 함(따라서 선금은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2. 압류명령(押留命令)

-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서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채권의 압류효력을 발생하는 것(민집223)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로써 개시되며(민집227·233·251) 이 명령에 위반하는 처분, 즉 채무자의 채권양도나 제3채무자의 변제는 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함.
-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민집225)에 의하여 행해지며 압류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미리 제3채무자 및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음(민집226).

※ 민집 = 민사집행법

3. 추심명령(推尋命令)**가. 의 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하는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

나. 관련규정(민사소송법)

-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 절차 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법 제563조 제2항).
 - ※ 채권자 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압류액을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차액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565조 제1항).
-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압류 제한한 추심명령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법 제565조 제2항).
-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 제3채무자가 추심 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訴)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82조 제1항).

4. 전부명령(轉付命令)

가. 의 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변제에 대신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

나. 관련규정(민사소송법)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법 제564조).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무자가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법 제

563조 제5항).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법 제563조 제7항).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법 제580조 제2항).

질의회신

-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당해공사대금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징구하고 압류채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전부명령 집행과 관련 없음(세금계산서를 징구할 필요가 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대위 납부할 의무는 없음.

5.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

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최우선적으로 송달됐을 경우 :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채권액 내에서 단독으로 지급 가능

Tip

관련조항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민집 제229조 제3항).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집 제231조)

나.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압류가 경합될 경우의 처리 : 공탁

Tip

관련조항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집 제229조 제5항)
-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집 제248조 제1항)

6. 국세와 근로복지공단 압류의 우선순위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가)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가)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가)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나.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먼저 송달됐을 경우

- 1) 공단압류금액에는 가산금,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음.
-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체납처분비, 가산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므로 체납처분비와 가산금은 공단에 지급하고
- 3) 남은 금액으로 국세압류금액 지급
- 4)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단에 지급 가능

Tip

근로복지공단에 압류금액 중 체납처분비와 가산금내역 송부 요청

다. 국세 압류가 먼저 송달됐을 경우

-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가 우선되므로 세무서 우선 지급
- 2)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단 지급 가능

7. 국세압류와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우선순위

가. 추심명령과의 관계

세무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한다(제35조 (국세의 우선) 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나. 전부명령과의 관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동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간 압류경합

가. 관련법령

1) 국민연금법

제79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9. 판례경향

○ 부산지법 2003.1.9. 선고 2002가소900026 판결

- 국민연금보험법 제79조 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전 법률) **징수절차에 관하여만**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위 체납처분절차에서 그 **채권의 수액에 비례하여** 평

등하게 배분받아야 할 것이다.

10. 공탁처리절차

가. 의 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기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

나. 관련규정

-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 채무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 2) 금권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민사소송법 581조 제1항).
- 3)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
- 4)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581조 제3항).

다. 공탁의 종류

- 1) 변제공탁 : 공탁함으로써 채무이행에 가름하는 공탁
 - ※ 토지보상금 등
- 2) 집행공탁 : 압류채권자가 다수이고 제3채무자의 채무액보다 압류채권액이 많을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토록 하는 공탁
 - ※ 부도로 압류채도 시 활용

- 3) 보증공탁 : 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압류자(채권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공탁(일명 가압류보증공탁)
- 4)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공탁
- 5) 몰취공탁 : 자기의 주장이 허위일 때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

라. 공탁절차(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 1) 공탁서 2통 작성 제출(규칙 제19조) : 공탁자 → 법원 공탁공무원
- 2) 공탁서 수리 및 공탁금납입서 교부(규칙 제25조) : 법원 공탁공무원 → 공탁자
- 3) 공탁금 납입(규칙 제25조) : 공탁자 → 공탁물보관자(은행)
- 4) 공탁금 납입통지(규칙 제26조) : 공탁물보관자 → 법원 공탁공무원
- 5) 공탁신고(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 제140조) : 공탁자 → 법원(민사부)

마. 공탁금의 배당(민사소송법)

- 1) 배당요구(법 제580조) : 채권자 → 법원
- 2)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법 제586조) : 법원 → 각 채권자(7일 내)
- 3) 공탁금배당표 작성(법 제587조) : 법원
- 4) 배당표의 열람(법 제588조) : 채권자 및 채무자(3일 간)
- 5) 배당실시(법 제589조)

11. 전부명령, 공탁 등과 부가가치세

가.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22601-564, '85.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 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338 판결)

공사수급자가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공사수급자가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공사수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그 자체의 존속**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세액 상당 금액의 양도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12. 하도급대금직불 사유와 압류 등의 우선순위

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자가 발주청에 직접지급 요구서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1) 압류 또는 전부명령 등이 직접 지급 요구서보다 먼저 도달했을 경우 압류 등이 우선
- 2) 직접지급 요구서가 먼저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지급이 우선**

Tip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다 하여 항상 직접 지급이 우선하는 것이 아님.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

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3. 개별법령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

가.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시행령 제88조

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법 제88조)

나)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령 제84조)

2) 정보통신공사법령, 전기공사법령에 동일하게 명시

나. 국토부 유권해석

1) 공탁할 수 있는 노임의 범위와 지급방법(건경58070-1467, '01.12.4)

⇒ 건산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은 압류대상이 아님으로 동 **금액을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당해 노임의 **지급방법**은 관련법령의 직불조항 등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주자인 공사발주기관이 **노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압류금지대상 노무비에 제잡비가 포함되는지 (건경58070-283, '99.2.11)

⇒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산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

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3) 공사대금 압류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건경58070-1167, '99.7.5)

⇒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노임압류 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항변 등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14. 채권양도의 제한

채권양도라 함은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특히 채권양도라 함.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다만, 선금지급액을 정산하지 않고는 양도할 수 없음.(선금지급요령 제4조 제2항)

나.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 가능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계약특수조건에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및 조건을 명시
예) 지역개발공채 우선매입 조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15.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자

가. 관계법령

1) 국세징수법(제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지방세법(제38조)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부명령 등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자

1)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

-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 제출
-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
-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 증명서 제출
- ※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급사업자는 건산법상 하수급자를 의미함

다.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16. 시공도중 건설업체의 부도 시 처리 예시

사례

- 공 사 명 : ○ ○ ○ 공사 ○ 계 약 자 : A
- 계약기간 : '95. 5. 1~'96. 6.30(사고이월) ○ 공동도급자 : B
- 계약금액 : 1,000백만원 ○ 연대보증인 : C
- 선금지급 : 300만원(30%) ○ 부도일자 : '95. 12. 1
- 1차 기성금 지급 : 350백만원(기성율 50%)
- ※ 선금정산 : $300\text{백만원} \times \frac{500\text{백만원}}{1,000\text{백만원}} = 150\text{백만원}$
- 채권가압류('95.12.10까지) : 10건 5,000백만원
- 전부명령('95.12.11) : 1건 100백만원
- 추심명령('95.12.12) : 1건 100백만원

가. 조치할 사항

- (1) 계약자 및 공동도급자에게 계속 시공여부 의견제출 요구
 - ※ 포기 시 연대 보증인에게 보증시공요청과 동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대상임을 강조
- (2) 계속시공 포기 또는 사실상 공사 중단 시
 - ① 공사중지명령 및 기성검사원 제출지시(계약자 및 공동도급자)
 - ② 기성부분 검사실시 : 채권압류의 효력한계 구분. 보증시공대상의 명확한 구분
 - ※ 기성검사원 미제출시 직권검사
 - ③ 기성검사결과 지급잔액의 공탁조치

$$\text{※ 기성율 70\% 경우 : } \frac{700\text{백만원}}{\text{기성금}} - \frac{650\text{백만원}}{\text{기지금액}} = \frac{50\text{백만원}}{\text{공탁금액}}$$

④ 연대 보증인에게 보증시공 요청

※ 불응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대상임을 강조

⑤ 부정당업자 제재(계약자 및 공동도급자) : 청문 후 제재처분(행정절차법)

(3)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불응시

①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귀속조치 ② 잔여공사 재설계 발주

③ 연대보증인의 부정당업자 제재 : 청문 후 제재처분(행정절차법)

2. 계약 Case by Case

1 건설업의 영업범위

사 례

- ▶ ○○군에서 공사예정금액 30억원으로 공종별로는 상하수도설비공사(25%), 토공사(30%), 포장공사(6%), 철근콘크리트공사(19%), 보링그라우팅공사(4%), 비계구조물해체공사(6%), 기타부대공사(10%)인 공사를 입찰공고하려고 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지?

검 토

- ▶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 특히 우수펌프장 건설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대표자 변경등록관련 입찰무효 여부

사 례

- ▶ ○○○○년 7월 10일 00도로포장공사 입찰공고를 하여, 7월 25일 개찰을 하고 1순위인 A사의 적격심사를 하던 중 A사는 7월 23일에 입찰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갑에서 을로 7월 22일자로 변경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 ▶ 그리하여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7월 22일자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7월 23일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무효통보 하였더니,
A사는 등기소에 법인 대표자 변경신청을 7월 22일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7월 24일 발급되었고 대표자 변경일이 7월 22일로 소급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이 타당할까요?

검 토

- ▶ 입찰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되나
- ▶ 입찰참가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당시 법인 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전 명의로 투찰하였다면 입찰무효는 아님.

3 지역제한 대상으로 시·도를 임의적으로 선택제한 가능여부

사 례

- ▶ ○○시 준설토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현재 ○○시에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전국으로 공고를 내보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때,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인근지역으로 묶어도 되는지?

검 토

- ▶ 지역제한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납품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 ▶ 2개 시·도 또는 당해 시·도와 특정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제한은 할 수 없으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함.

4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여부

사 례

1.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된 건에 대하여 공고회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의 여부
2.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최초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각각 ‘유찰’된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 당초 입찰 시에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검 토

- ▶ [사례 1]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따라서, 입찰상황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계약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고내용을 검토하여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입찰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사례2] 협상계약의 목적은 다수의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결과 우수한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재공고 입찰후 수의계약하는 경우에 반드시 입찰시 제시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입찰방법 중 하나이므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으나, 공고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내용에 유찰원인이 있는지 검토하여 재공고입찰을 할 것인지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고를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며, 협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 등을 변경하여 경쟁입찰 등 다른 계약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5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사 례

- ◇ 이미 총액입찰방법으로 계약집행된 공사의 도급금액을 당초(발주전) ○ ○ 공사 설계예산 내역서상 일위대가표 계산착오로 인하여 설계금액 일부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검 토

-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판례-’09.11.28. 90다카3659》

- √ 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원가계산 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환수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 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을 잘못하여 개찰한 경우

사 례

- ▶ 도로환경관리센터 리모델링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시 $\pm 3\%$ 범위(+7개, -8개,)내에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을 집행한다고 공고하였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pm 2\%$ 범위(+8개, -7개)에서 복수예정

가격을 작성하여 개찰하였을 경우 계약이행여부와 재공고 입찰의 조치를 거쳐야 한다면, 현재 공단이 1순위업체에 적격심사자료를 문서로 요구한 상태에서도 입찰 무효가 가능한지?

검 토

- ▶ 사례와 같이 입찰공고문에는 복수예비가격이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 범위내에서 작성토록 공고하였으나 $\pm 2\%$ 상당금액 범위로 작성된 경우도 인정된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개찰한 경우와 서로 다른 개찰결과가 발생되므로 낙찰자가 사실상 뒤바뀌는 중대한 하자일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대다수 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시입찰이 타당함.

7 수의계약 가능여부

사 례

- ▶ 우리市에서 00호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긴급히 발주하려고 하는데, 원가 계산해보니 11억이나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합니다.
- 그런데 마침 우리市에서 도시기본계획관련 3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A업체에게 문의하여 보았더니,
- A업체는 예산의 절반인 6억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A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검 토

- ▶ 법령에 근거없는 수의계약은 불가함.

8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탈퇴시 계약보증금 귀속여부

사 례

- ▶ 3개사(A건설: 50%, B건설: 35%, C건설: 15%)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한 공사에 대하여 C건설사의 공사포기로 출자비율을 2개사(A건설: 58.8%, B건설: 41.2%)변경하고 ○○도 건설본부(발주자)에서는 출자비율 변경승인을 해 주었으며,
- ▶ ○○도 건설본부로부터 C건설의 공사포기로 인한 계약보증금을 보증기관에 청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하는지?

검 토

-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는 것이며,
-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 계약이행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상호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일부 구성원이 공사포기를 하여도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을 하므로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하지 아니하며 공사포기를 한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 될 것임.

9 3자 합의(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압류 등의 우선순위

사 례

- ▶ ○○시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2008. 6. 27일자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직불합의를 하였습니다.
- ▶ 그런데 2008. 8. 26일자로 발주자에게 채권가압류가 송달되었고, 2008. 10. 1일자로 공사가 준공된 후, 2008. 10. 9일자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신청하였는데 지급이 가능한지?

검 토

-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07.10.20. 법개정 시행으로 '07.10.20.이후의 합의건만 해당)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내용상 2008.6.27.자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에 직불에 합의한 경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3자 합의가 가압류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라면 가압류 이전까지의 기성분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가압류 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10 대법원 판례

▶ 공사대금 압류 시 노임지급은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무는 어디까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금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금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금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금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11 공고문의 계약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사 례

- ▶ 공고문의 입찰 및 계약방법은 “총액, 최저가 입찰, 지역제한 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입찰”, 낙찰자결정방법은 “낙찰자결정은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로 공고하고, 다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낙찰자 선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로 하여 낙찰율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다수 업체가 참여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업체로 표시됨 [일정순위까지는 수행능력평가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고, 10위업체부터 적격심사 대상이 됨]

검 토

- ▶ 발주자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입찰공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다시 입찰하는 방안 검토 필요

12 계약상대자의 폐업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 례

- ▶ 물품 납품 후에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이후 폐업된 상태로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폐업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 ▶ 가능하다면 계약체결 당시의 대표자 또는 폐업 당시의 대표자 중 누구를 제재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연대보증사가 하자보증 의무를 미 이행할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인지 여부

검 토

-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폐업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게 해당될 것이므로 폐업한 법인 및 대표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하며,
- ▶ 물품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

13 계약상대자의 부도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

사 례

- ▶ 물품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에 부도가 발생한 건으로 부도가 난 상태에서는 계약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이미 계약된 사항을 업체가 이행한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또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때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 계약업체에서 물품 납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

검 토

- ▶ 부도 등의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당초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4 대가지급 시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사 례

- ▶ 채권양도양수 또는 법원의 전부명령 등에 따라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양도양수자, 채권자 또는 계약상대자 중 누가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구성원, 하도급자 또는 계약상대자 중 누가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검 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회 계 실 무

2012년 2월 일 인쇄

2012년 2월 일 발행

편 집 : 지 방 행 정 연 수 원 기 획 지 원 부

집 필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이 형 석
서 기 관

검 토 : 경 상 남 도 우 명 희

교 정 : 대 구 광 역 시 박 동 헌
강 원 도 김 지 희

인 쇄 : (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TEL : (02) 421-8418

FAX : (02) 422-8419

※ 이 책자의 전문(全文)은 지방행정연수원 홈페이지 (www.logod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문의 : 031-250-5244 지방행정연수원 기획협력과 과 장 서 주 현
서기관 장 문 호
담 당 김 혜 정

〈비매품〉